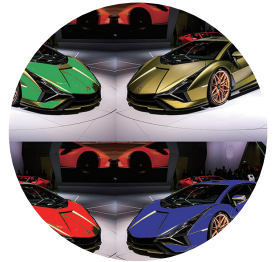




2021 이탈리아 진출 비즈니스 가이드



2021 이탈리아 진출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CONTENTS

I 이탈리아 경제 개요

- 1. 이탈리아 경제의 위상과 특징 12
- 2.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 19

II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 1. 유럽이 제공하는 주요 기금 및 금융 28
- 2. 이탈리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 32
- 3. 지역 투자 36

III 회사설립 또는 기업인수 : 법률적 측면

- 1. 외국인 투자자 42
- 2. 회사법 43
- 3. M&A 거래 52
- 4. 기업 형사책임 55

IV 회계 및 보고

- 1. 법적 근거 및 요건 60
- 2. 필수적인 장부 61
- 3. 회계기록 언어 63
- 4. 회계기록의 해외 보관 64
- 5. 재무제표 65
- 6.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 이탈리아 회계기준(GAAP)과의 차이 ... 67

7. 연말 재무보고 및 세무신고서의 제출 및 납세 기한	71
8. 회계 장부 및 기록의 적절한 작성을 누락한 경우	73

V 법인소득세제

1. 국내세무	76
2. 국제세무	96
3. 조세회피 방지책	108

VI 이전가격

1. 일반원칙	118
2. 문서화 문제	120
3. 처벌.....	122
4. 국제사업 전개 기업에 대한 사전 세무합의	123

VII 개인소득세제

1. 총칙.....	128
2. 과세소득	130
3. 비과세 항목 및 인적공제	134
4. 세율	138
5. 관리 및 신고요건	142
6. 기타 세금	145
7. 국제세무	147

VIII 고용 및 입국관리

- 1. 고용..... 154
- 2. 입국 관리 163

IX 부가가치세 (VAT)

- 1. 과세대상 168
- 2. 세율 169
- 3. 등록..... 170
- 4. 부가세 그룹 173
- 5. 신고서 177
- 6. 부가세 회수(환급/상계공제) 180
- 7.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거래 185
- 8. 인보이스 188
- 9. 소매업자의 일일 영수증 전자보고(scontrini elettronici) 193
- 10. 사업 양도..... 193
- 11. 부가세 선택..... 194
- 12. 본·지점간 거래 194
- 13. 부실 채권..... 195
- 14. 조세회피방지 196
- 15. 처벌..... 197

X 관세 · 간접세 및 수입 부가세

- 1. 유럽 연합법 및 관세 제도 : 유럽연합 관세규정(UCC)..... 202
- 2. 통관 절차 204

3. 경제적 영향을 수반하는 정지조치 및 관세 절차 (EU 관세규정에 의거한 특별 절차).....	205
4. 인정사업자(AEO, operatore economico autorizzato).....	207
5. 구속적 관세분류정보(BTI) 및 구속적 원산지 정보(BOI).....	209
6. 관세 결정 시스템	209
7. 수출자 등록 시스템 (REX system).....	210
8. Dual Use	211
9. 물품세 (le accise)	212
10. 수입 부가세.....	213
11. 이탈리아 세관 당국과의 관계	214
12. Brexit.....	214
13. 수출업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	215
14. 플라스틱세	216
15. 설탕소비세	217

XI 세무분쟁 해결

1. 세무당국과 협의 가능한 공식절차.....	220
2. 조세조사	225

XII 이탈리아 투자 방법

1. 거래 형태	232
2. 이탈리아 내 상장	239

부록 I : 한국과 이탈리아간 경제협력

1. 교역 동향.....	246
2. 투자 동향	249

부록 II : 이탈리아 최대 경제도시 : 밀라노

1. 밀라노의 경제적 위상	254
2. 대표적 국제도시로의 도약	255
3. 전시산업과 문화행사	256

부록 III : 이탈리아 패션산업 동향 및 전망

1.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발전	262
2. 패션업계 인수·합병(M&A) 동향.....	264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션산업	266

부록 IV : 롬바르디아주 투자 동향 및 기회

1. 외국인 투자 동향.....	270
2. 최근 투자동향 : 부동산 분야	272
3. 지역 투자 유치 프로그램	274

2021 이탈리아 진출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발 간 사

주밀라노총영사관은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지인 롬바르디아를 비롯한 북부 8개주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이탈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 노력과 한국-이탈리아간 교류 증대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교역액이 100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이탈리아 경제의 침체 등으로 기업활동 여건이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K-방역 성과로 인한 국제적 위상 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및 그린 뉴딜정책의 추진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진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밀라노총영사관은 우리 기업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경제 법령, 정책 등을 망라하여 <이탈리아 진출 비즈니스 가이드>를 2015년 최초 발간하고 2차례 소폭 개정한데 이어, 금번에는 KPMG의 자료 협조로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가이드북이 이탈리아와 협력의 기회를 새롭게 모색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밀라노총영사 유혜란

PART



이탈리아 경제 개요



1

이탈리아 경제의 위상과 특징

1 세계 9위 경제 대국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제8위(2019년 기준, IMF), 유럽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적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주요 산업은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및 직물, 가죽 및 신발, 식품가공, 세라믹이며, 전체 GDP중 제조업 비중이 23.9%로 독일에 이어 유럽 내 2위 제조업 강국이다.

〈표1. 이탈리아의 최근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추정)
실질성장률	1.3%	1.7%	0.8%	0.3%	-10.6%
재정수지(GDP 대비)	-2.5%	-1.9%	-1.6%	-1.6%	-11%
공공부채(GDP 대비)	132.04%	131.81%	130.28%	134.8%	158%
기준금리	0.00%	0.00%	0.00%	0.00%	0.00%
소비자 물가상승률	0%	1.3%	1.1%	1.3%	-0.1%
수출액(백만달러)	461,777	506,481	543,621	526,687	-
수입액(백만달러)	406,824	452,362	499,702	472,560	-
무역수지(백만달러)	54,954	54,119	43,919	54,127	-
유로달러 평균환율	1.05	1.13	1.17	1.12	-
실업률	11.7%	11.3%	10.9%	10.6%	-
청년실업률	37.8%	34.7%	32.3%	29.2%	-
해외직접투자(억달러)	17,752	4,417	32,692	24,934	-
외국인직접투자(억달러)	33,354	17,077	32,886	26,569	-

(출처: IMF, 이탈리아통계청, 이탈리아중앙은행, 주밀라노총영사관 취합)

〈표2. 2016~2020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

	2016	2017	2018	2019	2020
S&P	BBB	BBB	BBB	BBB	BBB
Moody's	Baa2	Baa2	Baa3	Baa3	Baa3
Fitch	BBB+	BBB+	BBB	BBB-	BBB-

(출처: S&P, Moody's, Fitch, 주밀라노총영사관 취합)

2 세계 9위 교역국

2019년 이탈리아의 교역 규모는 1조 62억 달러 규모로 세계 9위의 교역국(한국 8위)이며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교역국 중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8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인근 유럽국과의 교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등 기술 집약 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 소비재가 주요 수출품이며, 원유 및 원자재, 부품 소재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표3. 2019년 이탈리아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십억달러)

	품목	규모 및 비중
1	기계 및 컴퓨터	101.1 (19%)
2	자동차	41.4 (7.8%)
3	의약품	33.6 (6.3%)
4	전자장치	31.8 (6%)
5	플라스틱 제품	21.3 (4%)
6	철강 제품	18.4 (3.5%)
7	화석연료 등 에너지 제품	17.8 (3.3%)
8	보석 및 귀금속	15.4 (2.9%)
9	가구, 침구, 조명, 간판 등	13.8 (2.6%)
10	의류 및 액세서리 (니트류 제외)	13.8 (2.6%)

(출처: IMF, 주밀라노총영사관 취합)



2019년 이탈리아의 수출은 2018년 대비 2%가 감소한 5,3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은 유럽이 64.8%, 아시아 15.7%, 북미 11.3%, 아프리카 3.6%, 라틴 아메리카(멕시코 제외) 2.1%, 오세아니아 1% 순으로 집계된다. <표3>의 상위 10개 품목이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9%이며, 2019년 가장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는 보석 및 귀금속 (22.7%)과 의약품(21.1%)인 반면, 하락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자동차(-7.7%)였다.

〈표4. 2019년 이탈리아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십억달러)

	품목	규모 및 비중
1	화석연료 등 에너지 제품	58.5 (12.4%)
2	자동차	48.1 (10.2%)
3	기계 및 컴퓨터	46.4 (9.8%)
4	전자장치	36.3 (7.7%)
5	의약품	27.2 (5.7%)
6	플라스틱 제품	20.4 (4.3%)
7	철강	19.5 (4.1%)
8	유기화학 제품	16.1 (3.4%)
9	광학 및 의료기기	13.4 (2.8%)
10	보석 및 귀금속	12.6 (2.7%)

(출처: IMF, 주밀라노총영사관 취합)

2019년 이탈리아의 수입은 전년 대비 5.2%가 감소한 4,73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과 비교하여 수입이 감소한 요인 중 하나는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 하락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의 주요 수입 대상지역의 66.9%는 유럽, 20.7%는 아시아, 5.1%는 아프리카, 4.7%는 북미 등으로 집계된다. <표4>의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며, 2019년 가장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는 보석 및 귀금속(14.6%)이며 이외에는 의약품(2%)과 광학 및 의료기기(0.6%) 분야만이 소폭 상승했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 등 에너지 제품 분야(-13.3%)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3 경제 구조 특징

중소기업 위주 경제

이탈리아 경제는 440만 개의 기업이 다양한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압도적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10명을 넘는 기업은 20만 개, 250명을 넘는 대기업은 3,800개사로 집계된다.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이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탈리아 산업의 결정적인 특징은 소규모 기업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전체 기업의 95%가 9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10명~49명은 4%, 50명 이상은 0.6%(출처: ISTAT, 2018)로 집계된다.

서비스 산업은 이탈리아 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GDP의 약 74%를 차지하는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관광업, 소매업, 금융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공업은 GDP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이 차지(출처: ISTAT, 2019)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주요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 패션, 고급소비재, 생명과학, 우주항공, 화학, 정보통신기술, 물류, 재생가능에너지, 정밀기계 등 분야이다.

남북간 경제격차

이탈리아의 경제 구조는 지역적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다. 북부는 알프스 인근의 수력발전을 통해 1800년대 말부터 섬유, 엔지니어링 등의 제2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반면, 남부는 일광 조건 등 탁월한 기후를 바탕으로 한 농업 및 축산 등의 제1차 산업이 발전하였다. 1861년 통일 당시에는 북부와 남부간 소득 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남부의 더딘 산업화로 인해 그 격차가 가속화되었고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크게 벌어진 바 있다.

북부지역은 자동차, 항공기 등 기계류 및 의료용품 관련 기업들이 대거 위치한 공업지역이라 할 수 있고,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도 밀집해 있어 상호 납품, 거래 등



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남부는 대부분 농업지역으로 일부 섬유, 가구, 식품 관련 산업 단지만 형성되어 있어 남북간 산업 인프라 및 경제적 격차가 심하다. 경제적 낙후 문제가 단순한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교육, 보건 등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 역시 낙후되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어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역은 전체 이탈리아 인구의 36%, 국토의 40%를 차지하지만, GDP는 전체의 23%(시칠리아, 사르데냐 포함)에 불과하다.

이탈리아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 북서부지역의 1인당 GDP는 36,200유로, 북동부지역은 35,100유로인 반면, 중부는 31,600유로, 남부 및 도서지역은 18,700유로로 집계된다.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북부 8개 주(에밀리아 로마냐,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 리구리아,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발레 다오스타, 베네토)의 총생산은 이탈리아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56%를 차지한다.

양호한 교통 인프라



• 공항

이탈리아에는 약 130개의 공항이 있으며 연간 1억 7,500만명의 승객과 110만톤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로마 근교 피우미치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은 이탈리아 최대 국제공항으로 연간 4,1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다.



• 철도

연간 8억명 이상의 승객과 9천만 톤을 상회하는 화물 수송을 철도가 담당하고 있다.

이탈리아 철도의 총연장거리는 16,781km로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이은 유럽 4번째 규모이며 고속철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 항만

이탈리아에는 약 30개의 주요 항구가 연간 5,100만 명의 승객과 4억 9,800만 톤의 화물을 취급한다.

그 외 321개 중·소규모 항구가 7,400km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해 있다.



• 도로

이탈리아 국도도로망은 약 180,000km, 고속도로망은 약 7,000km에 달한다. 고속도로가 특히 발달하여 유럽 고속도로망의 1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



이탈리아에는 산업 시스템 전략의 일환인 141개 산업 클러스터가 소재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에서는 이들 클러스터가 'Made in Italy'의 중추 역할 및 제조업의 근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15년 동안 클러스터는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이는 중앙 및 지방의 제도, 소규모 기업 중심 구조로 인한 기업 간 동종 분야 내 생산 또는 공급 체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호의존과 협력에 기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해왔다. 동 네트워크는 소득의 증가 및 고용의 확대에 큰 공헌을 하여 최고품질의 독창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이탈리아의 주요산업

1 산업별 동향

관광

관광업은 이탈리아 경제의 원동력 중 하나로, 이탈리아 전역에는 약 33,000개의 숙박업소가 있으며 2018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은 약 417억 유로(전년 대비 +6.9%)로 집계된다. 예술, 역사, 문화유산, 국제적으로 호평 받는 와인, 식품, 자연풍경이 더해져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과 투자 기회가 크다고 평가된다.

숙박시설, 인프라, 운송, 접객 시설(레스토랑, 상점, 레저 시설) 등의 서비스 분야도 투자 기회가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2018년 기준, 도시별 숙박건수는 로마 2,900만건(6.8%), 밀라노 1,210만건(2.8%), 베네치아 1,200만 건(2.8%), 피렌체 1,060만 건(2.4%), 리미니 750만건(1.8%)등으로 집계된다,

자동차

2019년 승용차 판매등록대수는 190만대 이상으로, 국내 시장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전체 승용차 매출 중 24%는 FCA가 차지했으며, 가장 많이 팔린 고급차는 Audi(Volkswagen)이다. 2019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Panda(FCA), Ypsilon(Lancia), Duster(Dacia) 등 3개 차종이다.

디젤 연료 차량의 수요가 매우 높아서 2019년 등록된 차량의 39.8%가 디젤차(2018년은 51.2%)이다. 대체연료 차량 수요는 증가 추세로 2019년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석유/LPG 2중 연료(dual fuel) 차량이 135,489대(시장점유율 7.1%), 하이브리드 차량은 116,292대(시장점유율 6.1%, 2018년은 4.5%), 전기자동차는



10,666대(2018년 4,999대)로 집계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의 등록도 증가 추세로 2018년(37,413대) 대비 소폭 상승한 38,622대를 기록했다.

패션·고급소비재

이탈리아에서는 패션·고급소비재 분야의 2019년 매출은 약 900억 유로로,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이자 이탈리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탈리아 브랜드는 패션의 Armani, Gucci, Prada, Dolce&Gabbana, Cavalli, Ferragamo, Ermenegildo Zegna, Bottega Veneta 등이 있으며, 보석 및 시계의 Bulgari, Panerai, 안경에는 Luxottica, Safilo, 요트업계는 Perini, Azimut, Ferretti 등이 있다. 이 외 중소기업 중에서도 Kiton, Canali, Corneliani, Brioni 등의 패션기업과 Minotti, B&B 등 다수의 고급가구 브랜드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 이들 기업의 창조성에 제조기술이 더해져 Made in Italy이라는 상표의 세계적인 이미지 구축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제약

EU 최대 의약품 생산국인 이탈리아 제약시장의 가치는 32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되며 생산된 의약품의 80%를 수출(260억 유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제약회사의 60%는 GlaxoSmithKline, Novartis, Baxter 등 외국계 기업이며, 40%는 Recordati, Zambon, Angelini, Bracco, Sigma-Tau 등 이탈리아 기업이다. 2018년 제약업계 투자총액은 30억 유로, 종사자는 66,500명이며 90%가 대졸자로 집계되었다.

이탈리아 의약품과 백신 품질 향상에 따라 제약 분야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8년 간 평균 수출액은 117%(EU 평균은 81%)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 ICT

수년 간 위축되었던 이탈리아 ICT 시장은 2018년 기준 705억 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2.5% 성장했는데, 이는 전년도 성장세(2.3%)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다. 2018년 분야별 성장율은 클라우드(22%), 사물인터넷(19.2%), 휴대전화 서비스(9.4%) 등 순으로 집계된 반면, 통신 서비스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플러스 성장을 한 다른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광고(7.5%), 소프트웨어 및 ICT 솔루션(6.5%) 등이 있다.

화학제품

이탈리아 화학제품분야 매출은 550억 유로로 유럽 시장 점유율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3위의 화학제품 생산 국가이다.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 특징으로, 특히 정밀화학 및 특수화학 분야에서는 수준 높은 검사품질과 폭 넓은 화학적 전문지식이 강점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견 또는 대기업 중 이탈리아 기업은 Versalis, Gruppo Mapei, Gruppo Radici, Gruppo Bracco 등이 있으며 전체 생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외에도 BASF, Bayer, Air Liquide, Linde 등 다국적 기업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38%를 점유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

종사자만 5만 명(하청업까지 포함할 경우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의 2017년도 매출 총액은 155억 유로, 수출은 80억 유로로 집계된다. 높은 노동생산성 및 자본집약도, 장기 투자 사이클, 대규모 연구개발 지출이 이 분야의 특징이다. 이탈리아 연구개발비 총액의 21.9%를 우주항공 및 방위 분야가 점유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8.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우주항공 및 방위 부문 생산은 세계 10위권이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방위분야 수출액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5위이다.



이탈리아에는 Leonardo, Fincantieri, GE Avio, Iveco, Piaggio Aerospace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 하청의 80%는 피에몬테 주, 롬바르디아주, 라치오주, 캄파니아주, 풀리아주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법령이 잘 수립 된 국가 중 하나로, 2013년에 이미 2020년 에너지 목표인 1억 5,800억 유로를 달성했다. 또,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7.8%(2020년 목표가 17%)는 이미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의 전체 설비 용량은 10.5 GW로 유럽 전체 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유럽 5위 규모이다. 설비 용량이 54.3GW에 달하고 835,500개의 설비가 가동 중인 바, 2018년 기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국내 생산량은 114TWh(39.5%)이다. 수력발전은 여전히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재생가능자원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듯 2020년 이후에도 EU에서는 에너지 수요 충당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7% 이상으로 합의한 바 있다.

2 기업활동시 당면하는 문제점

기업의 다양한 법적 형태

이탈리아 법률에는 기업의 다양한 법적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세제 및 회사법의 대상이 된다. 합명회사 등 동업은 통상적으로 영세한 사업 또는 가족경영 사업의 형태이나 이들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세제에 따른 세금 부과 및 리스크 부담은 주주와 법인

소유자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 바, 기업의 법적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업사와 지주사의 분리

이탈리아 중견기업 경영자는 별도의 사업체나 지주사를 통해 자기 사업자산을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 세제 때문에 취하는 선택이나, 이를 통한 리스크 관리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투자자는 인수 대상에 부동산 또는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 따라 자본요건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주/소유자의 사업 관여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가족회사인 경우가 많고 주주/소유주의 관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자유재량적" 거래는 빈번히 행해지지는 않으며 장래의 실적은 사업상 주요 인물의 지속적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재무제표 감사요건

감사 요구사항은 자본, 자산, 매출, 직원 수에 따라 판단되는 회사의 규모에 따르기 때문에, 많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감사를 받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는 빈번히 개정되는 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잠재적 투자자는 재무, 세무, 법무에 대한 자산실사(Due Diligence Review)를 반드시 입수하여 우발채무를 가리기 위한 세금구조개편(tax structuring) 지원을 이용해야 한다.



언어

재무, 법무, 세무에 관한 정보는 보통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이탈리아 회계기준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근거한다. 잠재적 투자자는 다른 관할 구역 GAAP를 근거로 작성된 보고의 경우, 재무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 관련 사항

이탈리아에는 사내 인턴 제도, 직업 훈련 등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식견이 높고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노동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에 의해 집행되는 단체교섭협약의 대상이 된다. 잠재적인 투자자는 특정한 기업 또는 그룹 재편이 관련 노동조합과의 협약 대상이 됨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PART II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1

유럽이 제공하는 주요 기금 및 금융

1 용커 플랜

2014.11월 EU집행위원회 Jean-Claude Juncker는 유럽의 견고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18년간 3,150억 유로 규모의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조성을 바탕으로 한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 용커플랜¹⁾)을 발표하였다. 후속하는 이른 바 EFSI 2.0은 기금의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인데, 용커플랜의 목표는 아래 3가지이다.

- 투자 추진
- 경쟁력 강화
- EU의 장기적 경제성장 지원

유럽투자계획은 아래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설치
- 실물경제에 투자지원
- 투자환경 개선

2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및 EFSI 2.0)

유럽전략투자기금(EFSI)은 인프라, 에너지, 연구·혁신, 브로드밴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지원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투자는 행(EIB)을 통해 대부분의 용자가 시행된다. EFSI의 규모는 당초 3,150억 유로 이상이었으나, EFSI 2.0체제에서는 5,000억 유로 이상으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였다. EFSI 2.0 규칙²⁾에 포함되는 EFSI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럽위원회의 투자계획은 2014년 11월 유럽위원회장 장 클로드 용커에 의해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2) 2017년 12월,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EFSI 2.0의 규칙에 동의해 2017년 12월 30일에 법제화되었다.

투명성 향상 : 새로운 EFSI 하에서 투자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온라인으로 공표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EU 예산 보증을 받는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하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점수표는 각 EFSI 프로젝트에 대한 서명까지 완료된 이후에 공표한다. EFSI 2.0 규정은, 특정 프로젝트가 왜 EFSI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른 바, '추가성(additionality)'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더 큰 비중 : EFSI의 인프라 및 혁신 프로젝트의 40%는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FSI 2.0은 지속 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양식업 및 기타 바이오 경제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명확하게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포커스 강화 :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EFSI의 성공 사례를 감안하여 확대된 EFSI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장 비율을 26%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새로운 EFSI는 EIB가 각국 은행(National Promotional Banks)이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모아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회원국 차원의 추가 기술 지원 : EU집행위와 EIB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럽 투자 자문 허브(European investment advisory hub)는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EFSI 2.0에서는 허브의 기능은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각국 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화된다.

3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지원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유럽 투자 프로젝트 포털과 유럽 투자자문 허브가 구축되었다. 허브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EIB의 기존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추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포털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각 프로젝트 및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투자 환경 개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 장벽을 없애고 EU 규정을 간소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인프라 사업이 주요 대상이 된다.

윙커 플랜은 EU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단절화를 줄이고 사업·투자 프로젝트에 자본공급을 확대시키는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³⁾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5 이탈리아가 활용한 EU 자금조달 사례 및 실적

EFSI는 최초 2년 반 동안 28개 회원국에 3,712억 유로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 데 이어, 2020년까지 5,00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1,125,000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아서 자금조달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까지 이탈리아 내 윙커플랜 실적

2020년 9월 기준, EFSI의 이탈리아 총 용자액은 129억 유로이며, 향후 794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인프라 및 혁신 프로젝트

- EFSI 지원을 통해 EIB 대출이 승인된 프로젝트는 총 94건
- 총 대출금액 약 79억 유로
- 총 332억 유로의 투자 유발 효과

3) 유럽위원회가 유럽의 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구상된 연합

중소기업

- EFSI에서 지원을 통해 EIF에서 대출을 받은 중개은행 또는 펀드와 승인된 협약은 94건
- 총 대출금액 35억 유로
- 자금조달수단 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00,435개사에 37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EFSI가 이탈리아에 지원한 주요 프로젝트

▶ ASA Livorno

- EFSI가 지원한 용자금액 : 3,000만 유로
- 투자 예정 총액 : 1억 1,500만 유로

EIB는 Azienda Servizi Ambientali SpA에 전체 1억 1,500만 유로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중 3,000만 유로를 대출했다. 프로젝트는 2018~2022년 간 토스카나주의 리보르노, 피사 및 시에나에 소재한 수자원 및 폐수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32개시 주민 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자원의 생산, 수송, 배급, 폐수 저장·처리 체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Piemonte-Savoia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잇는 Piemonte-Savoia 전기 인터커넥터에는 1억3000만 유로의 대출이 지원되고 있다. 이탈리아 Piossasco와 프랑스 Grande Île 사이 고전압 인터커넥터는 양국 간 1,200MW 규모의 송전을 담당할 예정이다. 190km에 이르는 해당 사업은 전송 인프라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최장 직류 케이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Terna사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송전 능력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Newron Pharmaceuticals, Treviso, Italgas smart metering 등 프로젝트에 EFSI의 기금이 투입되었다.



2

이탈리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

1 개발계약 (contratti di sviluppo)

개발계약을 통하면 제조업(농산물 가공·판매 사업 포함), 관광, 환경보전, 연구 개발, 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최저 투자총액은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고 2,000만 유로이나,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의 경우는 750만 유로이다. 동 투자 프로그램은 대출 신청 승인일부터 48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발계약은 이탈리아 및 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령대상은 아래와 같다.

- 신청기업 (계약 관련 기술·재무 규정 준수 의무 및 Invitalia(아래(4) 참조)와 연락)
- 개발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기업
-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참가자

개발계약에 따른 재무상 혜택은 아래와 같다(중복 가능)

- 시설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 비용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 대출 보조
- 금리 보조

보조금의 규모는 프로젝트의 종류(투자 또는 연구·개발·혁신), 사업 개시 장소,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다. 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2 Industry 4.0

'Industry 4.0'은 제4차 산업혁명을 뜻하며 저비용 센서와 무선접속 이용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정보의 폭넓은 이용, 전산화된 기술과 데이터 분석, 신소재, 사물인터넷(IoT)이 특징이다.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Industry 4.0 계획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종류의 선진 기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촉진
- 수직적 또는 분절화된 조치가 아닌 수평적 조치를 전개
- 실현 가능 요소에 집중
- 기술적 도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수단의 변칙 운용 가능
- 책임자, 의사 결정자가 아닌 주요 이해당사자 의견 조정

동 계획에는 이하 4가지의 전략이 있다.

- **혁신적 투자**: Industry 4.0 기술 핵심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R&D 및 혁신 분야의 민간 지출 확대 추진
- **인프라 실현**: 적절한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안전 등의 보호에 대한 보증, IoT, 개방형 표준, 상호 운용기준 확립 협력
- **전문성과 연구**: Ad hoc 방식의 연수 과정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연구 활성화에 주력
- **의식과 거버넌스**: Industry 4.0 계획에 대한 관심 제고, 거버넌스에 관한 공동 민관정책 확립

3 이탈리아 내 연구·혁신 관련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성장을 위한 투자와 사업 목적'으로 이탈리아 내 특정 지역에 EU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과도지역(아브루초주, 몰리제주, 사르데냐주) 및 개발도상지역(바실리카타주, 캄파니아주, 칼라브리아주, 풀리아주, 시칠리아주)에 총 11억 9,000만 유로를 할당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Smart Specialisation Strategy(S3) 및 National Programme for Research Infrastructure(PNIR)의 전략적 틀을 따르는 동시에, 우주항공, 농식품, 해양 기반 성장(해양경제), 친환경 화학, 디자인/창조성 「Made in Italy」(비연구개발), 에너지, 스마트 제조업,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건강, 안전하고 열린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위한 기술, 문화유산을 위한 기술 등 12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은 다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육·훈련에 대한 인프라 정비, 교육·훈련·평생교육에 투자
-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강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투자의 주요 영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연구·혁신 사업투자 추진(자원 전체의 74%)
- 교육·훈련에 대한 인프라 정비, 교육·훈련·평생교육에 투자 (22%)
- 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4%)

4 이탈리아 투자유치·사업개발 공사(Invitalia)

Invitalia(Agenzia nazionale per l'attrazione degli investimenti e lo sviluppo d'impresе S.p.A)는 이탈리아에서 사업 착수 또는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고자 기존 및 신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vitalia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 각각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투자 사전 정보
- 사업 착수 지원
- 애프터 서비스

Invitalia는 지방자치제, 법인 파트너, 국내 및 외국계 은행(UniCredit, BNL, Intesa SanPaolo 등) 등 조직적, 전문적 파트너와 함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Invitalia는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우선순위 부문의 투자 기회를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기업의 개발계약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계획 입안 및 평가, 절차 이행 등도 담당한다.

투자 최저금액

- 산업 : 2,000만 유로 (농업식품은 750만 유로)
- 관광 : 2,000만 유로
- 환경 보호 : 2,000만 유로

인센티브 종류

- 자본투자 및 연구·실험개발에 대한 투자 조성금 및 소프트론



3

지역 투자

EU내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은 많은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투자는 교육, 고용, 에너지, 환경, 단일시장, 연구·혁신 분야에 걸쳐 다수의 EU 정책 목표 달성과 부수적인 시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정책은 특히 EU가 2020년까지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 2020」 달성에 필요한 투자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모든 주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을 발효하였다.

- 중소기업의 자본 지출 및 사업 창출을 위한 조성금과 장려금 성격의 용자
- 서비스 산업, 무역, 관광 지원
- 지역 사업 부문에 대한 지원

동 인센티브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지역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지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묶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탈리아는 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산하 약 50개 운영프로그램을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이탈리아에 할당되는 결속정책 자금은 모두 322억 유로이다.

- 개발도상지역(캄파니아주, 풀리아주, 바실리카타주, 칼라브리아주, 시칠리아주)에 대해 22억 유로
- 과도지역(사르데냐주, 아브루초주, 피에몬테주, 롬바르디아주, 리구리아주, 베네토주, 볼차노도, 트렌토도,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토스카나주, 마르케주, 움브리아주, 라치오주)에 76억 유로
- 유럽 지역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사업에 11억 유로
- 청년고용 프로그램에 5억 6,750억 유로

지역 프로그램은 아래에 설명하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및 유럽사회기금(ESF)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1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RDF의 목적은 인프라 및 생산설비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 캐피탈, 채무보증펀드 등 다양한 자금수단을 제공한다. 투자분야에는 공업입지 개발, 연구·기술, IT, 환경 보전, 에너지, 교육, 기회균등 및 EU지역간 협력 등이 포함된다.

ERDF는 주로 우선순위가 높은 아래 4개 분야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의 80% 이상을 동 4개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

- 혁신 및 연구
- 이탈리아판 디지털 어젠다⁴⁾
- 중소기업 지원
- 저탄소경제

상기 분야에 할당된 ERDF의 지원 금액은 지역별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

- 선진지역 (1인당 GDP가 EU27개국 평균의 90%를 상회) : 우선도가 높은 분야 중 최저 2개 분야에 자금의 80% 이상을 할당
- 과도지역 (1인당 GDP가 EU27개국 평균의 75%~90%) : 그 할당이 60%까지 축소
- 개발도상지역 (1인당 GDP가 EU27개국 평균의 70% 미만) : 그 할당이 50%까지 축소

또한, ERDF는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저탄소경제 프로젝트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선진지역 : 20%
- 과도지역 : 15%
- 개발도상지역 : 12%

4) 유럽의 디지털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취한 이니셔티브와 대책에 관한 문서



ERDF는 또한 지역 특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RDF 활동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꾸리면서 도심부의 경제, 환경, 사회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 5%의 EFDF 지원금이 각 도시가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배정된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오지, 산악지대 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특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심지로부터 매우 외곽에 위치한 지역은 원격지에 위치한 사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함을 이유로 ERDF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유럽사회기금(E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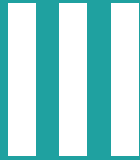
ESF는 고용을 지원하는 EU의 주요기관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도록 돕고 모든 EU 시민들에게 보다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ESF는 유럽 인적자본(노동자, 고령층, 구직자)에 투자하는 기관이다. ESF에서 제공하는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은 수백 만 유럽시민, 특히 취업이 곤란한 계층의 고용 전 반을 개선하고 있다.

EU는 더 많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목표는 EU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인 「유럽 2020」의 중심이나,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SF는 유럽의 목표달성, 경제위기(특히 실업률이나 빈곤율 상승)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SF를 통한 고용추진은 모든 부문과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아래 명시된 부문은 ESF를 통해 자금 조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 취업 알선
- 청년고용기회 창출
- 사업추진
- 여타 분야로의 이직을 위한 재교육

PART



회사설립 또는 기업인수 : 법률적 측면

1. 외국인 투자자

2. 회사법

- (1) 개요
- (2)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 (3) 회사설립의 주요 단계
- (4) 회사청산
- (5) 연락사무소 및 지점

3. M&A 거래

- (1) 개요
- (2) 주식·지분 거래
- (3) 자산거래
- (4) 상장기업의 주식공개매수

4. 기업형사책임



1 외국인 투자자

이탈리아 외 EU 회원국 국민이 이탈리아에서 시행하는 투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이탈리아 국민의 투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EU 회원국 이외의 국민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즉, 해당 외 국민의 모국에서 이탈리아 국민이 시행 가능한 활동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외국인은 모국의 법률이 모국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이탈리아에서 누릴 수 있다.

회사설립 또는 기업인수를 통해 특정산업 및 규제업종(통신업, 은행업·금융중개업)에 대한 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승인이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1 개요

이탈리아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조직 모델, 비즈니스 목적, 출자 예정인 자본수준, 책임 범위, 세무 및 회계상 영향에 따라 이탈리아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이 가능한 여러 법적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법적 형태는 아래 2가지이다.

- 파트너십 (società di persone)
- 회사 (società di capitali)

이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파트너십의 자산과 책임은 구성원의 자산과 책임에서 부분적으로만 분리되는 반면, 회사의 자산과 책임은 구성원의 자산과 책임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이다.

파트너십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이들 파트너십에는 법인격은 없고 구성원(soci accomandanti는 제외)에는 무한책임이 있다.

- 단순 파트너십 (società semplice) - 사업 활동 불가
- 집단 파트너십 (società in nome collettivo) - 회사의 모든 책무에 대한 전원 공동책임
- 제한적 단순 파트너십 (società in accomandita semplice) - 회사의 모든 책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무한책임 구성원(soci accomandatari) 과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책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유한책임 구성원(soci accomandanti)의 2가지 구성원으로 구성

이탈리아 회사법을 근거로 설립이 가능한 회사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 주식회사 (società per azioni, S.p.A)
- 유한회사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S.r.l)



- 주식합자회사 (società in accomandita per azioni, S.a.p.a.) - 제한적 단순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특징을 보유하여, 적어도 1명의 출자자는 무한책임을 지되, 나머지 출자자는 책임이 출자액까지만 제한되는 회사

다음은 이탈리아 회사의 유형 중 가장 흔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소개한다.

2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들 회사의 기본원칙은 회사만이 그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출자자의 책임 범위는 자본금 명목으로 납입했거나 또는 납입 예정인 금액에 한정된다.

주식회사(S.p.A)

주식회사의 주요한 2가지 특징은 출자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고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이다.

▶ 법인자본, 주주 및 주식

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는 최저자본금 50,000유로가 필요하고 그 중 최소 25% (12,500만 유로)는 납입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업 및 은행업과 같은 일정 규제업종의 경우에는 이보다 고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주주의 수는 1명이다. 이 경우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주주의 숫자에 상한은 없으며 자연인 또는 법인, 이탈리아인 또는 외국인 등 누구나 주식회사(S.p.A)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자본은 동등한 가치(각 주식의 액면가는 주식자본전체의 비율에 비례)를 가지는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설정 가능)과 분할이 불가능한 주식으로 분할되어 경영상(예: 의결권) 및 경제상(예: 순이익

의 분배를 받을 권리) 양쪽의 권리가 평등하게 부여된다. 보통주 외에도 정관에 손실에 관해서도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특정한 종류의 주식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서 허용되는 경우, 자본은 자산(외상채권을 포함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물출자는 신청 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출자자는 법원이 채택하여 전문가가 작성한 자산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한 경우에 한해 현물출자 절차의 단순화(감정평가서 생략)가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자된 자본의 전체 가치가 주식자본의 총 증가액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주식회사(S.p.A)의 전통적인 기업 지배 모델은 다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① 주주총회

회사 연간재무제표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예외적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 주주총회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법인자본의 개정을 포함), 회사 해산(청산인 선임, 교대, 권한을 포함), 합병, 조직 재편 등의 승인을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업무 행정 조직

주주총회는 단독 이사 또는 이사회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는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거래에 대처한다. 이사의 경영권에는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거나 연간재무제표의 작성을 포함하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

③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법정 감사회로 일반적으로 등록 감사법인도 속하는데, 모두 주주총회에서 임명한다. 주식회사는 3명 또는 5명의 정규 감사와 2명의 감사보(sindaco supplente)로 구성되는 감사회(collegio sindacale)를 선임해야 한다. 감사회의 주된 의무는 법과 정관의 준수를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조직, 관리, 회계상 구조가 적절한지,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회계처리에 관한 통제는 감사회 또는 감사법인의 책임이다.

주식회사는 전술한 전통적인 기업 지배 형태 외에 2가지 추가적인 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일원 체제(sistema monistico)에서는 경영과 관리가 각각 이사회와 경영관리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이사회에서 그 구성원을 임명한다.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독립적 책임으로, 경영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조직적 구조, 내부 통제체계 및 관리·회계 체계의 타당성을 감독한다. 또, 경영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할당된 기타 기능, 특히 회계 관리에 관한 감사인 또는 법정감사회와 연락을 취한다.

이원 체제(sistema dualistico)에서는 경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두 기관이 존재한다. 회사의 경영은 경영위원회에 독점적으로 위임되어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 또는 채택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회의 기능과 전통적인 모델에서 주주총회가 책임졌던 기능을 맡는다.

양쪽 모두 감사회는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회계 관리는 등록된 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시행한다.

유한회사(S.r.l)

조직체로서의 유연성이 높고 유한책임이 있는 바, 이탈리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지분보유자(1명도 가능)를 통한 단순한 경영 체제의 회사에 적합하다.

▶ 법인자본, 지분보유자 및 지분

유한회사에 요구되는 최저자본은 10,000유로(이보다 낮은 간이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로, 그 중 적어도 25%(2,500유로)는 납입이 필요하다.

회사가 사업연도마다 최소 당기순이익의 20%를 법정준비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최저자본금 10,000유로를 점진적으로 적립(progressive corporate capital)할 수도 있다.

지분보유자의 최소인원은 1명이다. 이 경우 자본금은 회사설립 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보유자의 인수, 거주지 또는 국적에 제한은 없다.

자본금은 지분 보유자수로 분할되며 지분은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경영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는 정관에서 개별 지분보유자에 대해 회사의 경영 또는 이익 분배에 관한 특별한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한, 회사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지분보유자에게 각기 귀속된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출자는 현물로 각출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각출과는 달리, 유한회사에 대한 자본각출은 지분보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 거버넌스

전술한 주식회사(S.p.A)의 전통적인 모델 원칙은 유한회사(S.r.l)에도 적용되나, 몇 가지 사항이 간소화되어 유연성이 높다.

정관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한, 유한회사의 경영은 1명 이상의 지분보유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분보유자는 이사회에서 정보를 얻어 신뢰도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장부나 경영 문서를 감사, 검증하고 이사회의 활동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법에 규정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회사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지분보유자가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단독 감사(sindaco unico) 또는 감사회(collegio sindacale)의 형태가 된다.



유한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정관 또는 법률에 의해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또는 정관의 준수를 감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업무도 감사위원회에 위임된다.

간이 유한회사(S.r.l semplificata)

창업 장려 목적으로 2013년에 도입된 유한회사의 별도의 형태가 간이유한회사이다. 최저 자본금은 1유로, 최고 자본금은 9,999.99유로이며,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현금으로 전액 납입해야 한다.

간이유한회사의 지분보유자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어 회사나 그 외의 사업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형태의 유한회사의 정관은 법으로 결정된 표준모델을 따라 작성해야 하며, 회사 설립에 대한 공증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회사설립의 주요 단계

이탈리아 회사설립에 대한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 기본정관 작성 : 회사에 관한 본질적인 정보가 기록됨(공정증서)
- 통상정관 작성 : 회사의 업무 및 거버넌스에 관한 규칙이 포함(공정증서)
- 관할 부가가치세(VAT) 사무소에 등록 : 신규회사는 설립 후 조속히 VAT 번호 및 등록 코드 신청이 필요
- 이사의 세무번호 취득 : 이사회 회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이탈리아 세무번호 신청이 필요
- 상업등기소에 등록 : 등기 후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

이탈리아 회사 설립 시에는 통상 1주일에서 3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4 회사청산

회사는 다음 중 1가지의 이유로 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있다.

- 정관에서 정하는 기한이 도래
- 회사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
- 주주·지분보유자 총회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 회사의 자본이 법정최저자본금액을 하회
- 회사가 주주·지분보유자에 대한 지분 배당이 불가능
- 정관 또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의 이유

이들 해산사유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즉, 공지할 필요는 없으며 결의 또는 공문서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는다.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사정을 상업등기소에 등록해, 주주·지분보유자총회를 소집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청산의 원인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회사를 해산하는 사유가 있거나(예 : 자본의 상실), 이사회 또는 주주·지분보유자 총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감사회 또는 개별 주주·지분보유자의 요청을 받아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주된 역할은 회사의 자산 처리, 채권자에 지급, 최종청산재무제표 및 주주·지분보유자에 환급해야 할 이익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회사에 채무 및 책임을 변제하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청산인은 주주·지분보유자에 지분에 상응하는 필요자금의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자본 또는 이익의 환급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다만, 그 지분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전액변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회계장부에 명시된 경우, 또는 주주·지분보유자가 적절한 보증의 약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상태는 주주·지분보유자의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청산의 원인을 제거한 후 취소가 가능하다.



청산절차는 청산에 의한 주주·지분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통해 종료된다. 그 직후에 회사는 상업등기소에서 말소되고(등기해제) 장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10년간 보관된다.

5 연락사무소 및 지점

외국기업은, 이탈리아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거점을 모두 설립할 수도 있다

-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연락사무소(ufficio di rappresentanza)
-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지점(filiale)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내 법적 사업체는 아니나 회사나 제품·서비스의 광고 및 기타 비영리활동을 위한 현지시설이다. 세무상 연락사무소가 물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영리목적의 활동을 행하는 경우 영구적 시설로 간주된다.

연락사무소에서는 장부의 기록, 재무제표의 공표,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외국기업의 본사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인건비, 기구비품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상의 회계장부는 요구된다.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지점

지점은 외국 사업체의 일부로 관리상은 물론 재무상으로도 본사에 의존하고 있다. 해당 외국기업과 동일한 명칭과 법적형태를 사용하되, 독자의 사무집행기관이 없고 해당 외국기업의 직접 관리하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본사가 임명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법정대표자(preposto/preposti)가 지점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책임을

갖는다.

지점은 독자적인 자본금이 없어 연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사본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보고서는 이탈리아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

법정대표자에 의해 지점이 체결하는 계약서는 외국기업에 구속되어 계약상의 무위반을 동반하는 책임은 외국기업에 직접 귀속된다. 지점의 설립(및 법정대표자의 선임)은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3 M&A 거래

1 개요

통상적으로 기존 기업에 대한 M&A 거래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행가능하다.

- 주식(S.p.A) 또는 지분(S.r.l.)의 취득을 동반하는 주식·지분 거래
- 대상 회사의 자산 일부 또는 전부의 거래를 동반하는 자산 거래

주식/지분거래 및 자산거래는 전술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투자 장벽의 대상이 아니다.

매수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 매출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 중 하나 또는 양측 모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 EU집행위원회(Commissione dell'Unione Europea)

대부분의 경우, 주식·지분거래와 자산거래의 선택은 세무상의 검토 시에 발생하나(아래 참조), 거래를 조성하는 경우 고려할 법률상의 영향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법률상의 영향이 몇 가지가 있다.

2 주식·지분 거래

주식/지분 거래에서는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지분보유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매수자는 해당 법적사업체의 소유자가 되어 자산, 기존 및 잠재적인 책임과 채무를 취득한다. 또한 해당 회사의 모든 계약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주식·지분 거래의 주요 장점은 자산거래와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대상이 되는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상회사의 지배지분이 변경되어도 서면 상 고용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업 양도에 의한 주식·지분 거래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지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

주식·지분거래의 기타 장점은 매도자의 관점에서는 책임은 전부 그 회사에 남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 그 책임이 매수자에 넘어간다는 점이다. 자본금의 100%가 관여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상회사의 거버넌스를 규제하는 계약을 주주·지분보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산거래

자산거래에서는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모든 자산 또는 특정 사업부문을 취득한다. 거래 대상(이전하는 자산, 계약, 책임, 종업원 등)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거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를 하였던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회계기록 상 사업부문의 모든 부채와 관련해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 매수자는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업 관련 모든 계약을 인수한다.
- 매도자는 자산양도 후 5년간 동종업계 경쟁 금지 의무를 진다.
- 거래에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가 포함된 경우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특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적어도 계약서 서명 25일 이전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4 상장기업의 주식공개매수

상장기업의 주식공개매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상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공동으로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는 대상회사의 자본전체에 대한 매수공개, 즉 주식공개매수(TOB)를 해야 한다



(강제적 TOB).

TOB 가격은 대상주식에 대한 입찰자가 과거 12개월에 지불한 최고가격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강제적 TOB의 주요 절차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TOB의 통지 : 입찰자격의 통지를 이탈리아 증권거래 위원회(CONSOB)에 송부
- 입찰서류 제출 : 입찰서류 공개를 위해 CONSOB에 제출(통지 후 20일 이내)
- CONSOB의 입찰서류 승인(제출로부터 15일 이내)
- TOB의 즉시 공개
- 모집기간은 공표일 5일 후에 개시되며 15일~25일간 유지

최초 TOB 이후, 소액주주 배제를 위해 최초 TOB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규모에 적합한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취득한 지분이 90% 미만인 경우 : 입찰자는 나머지 주식에 대해 추가 TOB를 행할 수 있다.(가격규제 없음)
- 취득한 지분이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 입찰자는 부동 주식자본이 충분함을 보증하고 매각을 요하는 주식의 소액지분 취득을 위해 90일 이내에 최소한의 지분을 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다.(Squeeze out 가격은 CONSOB의 규칙에 따라 설정)
- 취득한 지분이 95% 이상인 경우 : 입찰자는 매각을 요하는 주주의 소액지분을 취득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소액지분을 취득하고 대상주식을 상장 폐지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Squeeze out 가격은 CONSOB의 규칙에 따라 설정)

4 기업 형사책임

이탈리아법에는 기업의 특정 종류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 관련 규정이 있다. 다음의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 회사의 이익 또는 우위성을 위한 범죄가 행해진 경우
- 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는 자(이사, 종업원 등)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범죄는 법령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행정에 반하는 범죄(독직 또는 착복)
- 기업범죄
- 상장 관련 범죄
- 돈세탁
- 노동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범죄
- 환경상의 범죄

기업의 형사책임은 150만 유로 이하의 벌금(동일한 행위로 인한 복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이 3배, 최고 460만 유로까지 증가)과 함께 회사의 존속을 해질 가능성이 있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인허가, 라이선스 또는 특권의 정지 또는 해제
- 공적자본, 조성금 또는 보조금의 배제
- 영구적인 경영 정지

회사가 범죄 또는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채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다. 단, 해당 관리 규정은 ①범죄 예방의 기능을 하고, ②위반 소지 발생 우려 분야를 상세히 규정하고, ③적절한 징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 또는 회계 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성, 전문성, 윤리기준 및 전문지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인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독립된 권한이 부여됨을 전제로 하는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조직,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최신의 기준을 유지하고 그 유효성을 감시하는 한편,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PART **IV**

회계 및 보고

1. 법적 근거 및 요건
2. 필수적인 장부
 - (1) 총계정원장
 - (2) 재고자산대장
 - (3) 업무상의 통신기록
3. 회계기록 언어
4. 회계기록의 해외 보관
5. 재무제표
6.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
이탈리아 회계기준(GAAP)과의 차이
7. 연말 재무보고 및 세무신고서의 제출 및 납세 기한
 - (1) 연말 재무보고
 - (2) 세무신고 및 납세
8. 회계 장부 및 기록의 적절한 작성을 누락한 경우



1 법적 근거 및 요건

회계 및 보고는 주로 아래 근거에 의해 규제된다.

- 이탈리아 민법
- 이탈리아 세법
- 이탈리아 GAAP
- 국제재무보고기준 (해당하는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복식부기가 사용된다. 항목은 모든 란과 주석을 채우고 시계 열로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기록의 삭제도 용인되지 않지만, 필수적인 경우에는 판독 가능한 방법으로 취소선을 긋는 것은 가능하다. 총계정원장에는 일차적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한다.

회계장부는 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력일을 보증하기 위한 특정 규정이 정해져 있다. 모든 장부 및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입력일로부터 적어도 10년간은 회계장부를 관련된 모든 업무통신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1 총계정원장

이탈리아 기업의 모든 거래는 상세한 시계열로 총계정원장에 기록해야 한다. 각 분개에는 거래일 및 적요를 기재해야 한다. 모든 분개는 관련 거래가 발생한 60일 이내에 기록해야 한다. 총계정원장에는 각 페이지에 연번을 부여해 사업연도(예를 들어 2017.2월, 2017.3월 등)를 기재해야 한다. 인지세는 100페이지 단위로 과세된다.

현지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총계정원장의 각 분개가 부가가치세(VAT) 등록 부내도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무 및 법무상 거래일에 유효한 공정환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고시 금액을 월평균환율로 환산할 수 없다.

계정은 사업연도 말에 마감하고 차기 이월액을 기록한다. 총계정원장은 계정과목마다 보조원장을 두어 이를 뒷받침(예를 들어 ‘은행자금계정 XXY’, ‘현금 1계정’, ‘고객 XYZ’ 등의 보조원장)해야 한다. 총계정원장에 시계열로 기록된 모든 거래는 보조원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거래 연번
- 총계정원장의 연번
- 거래일
- 계정코드 및/또는 계정과목
- 거래의 성격(선택)
- 거래의 적요
- 거래와 관련한 제3자
- 연말 조정·결산·개시분개



각 페이지의 최하단에는 다음 페이지에 이월되는 차변·대변 총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장부 기재 담당자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현금출납장 및 수표장도 필요하다.

2 재고자산대장

재고자산대장에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설명과 평가를 기재한다.

3 업무상의 통신기록

기업은 각 거래와 관련한 송부 및 수령한 모든 서류(서한, 인보이스, 통신)의 사본을 규칙적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2019.1.1.부터 모든 기업 간(B2B) 거래 인보이스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SDI를 통해 송신해야 한다.

총계정원장 및 부가세 장부와 관련해 이탈리아어 사용 여부가 민법 또는 세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기록에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가세 및 회계규정상 규칙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이탈리아 민법은 법원절차에 사용되는 법률문서는 이탈리아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부 및 회계 기록은 증빙의 일부로 사용될 수도 있는바, 법정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다.

회계기록이 감정 절차 또는 소송 절차 중에 세무당국·법원에 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회계기록의 해외 보관

이탈리아 민법과 세무 규칙은 기업이 회계기록 또는 필수 기재 회계장부를 이탈리아 국외에서 보관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탈리아 재무부는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이탈리아 기업의 회계기록은 해외에서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회계기록은 이탈리아 자회사에서 접속이 가능한 해외 소재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해 이탈리아 시간으로 기록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장부는 이탈리아 회사에서 인쇄하고 데이터, 장부 및 부속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등록된 회사 데이터도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시간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관한 장부, 등록부 및 회계문서는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른 회계장부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무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국은 기업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추계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인보이스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해외 전자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간접세에 관한 양국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이탈리아 기업이 항상 데이터가 등록된 사무소의 아카이브에 자동 접속할 수 있을 것
- 전체 보존기간에 걸쳐 데이터의 완전성 및 가독성이 담보될 것
- 전자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문서 및 데이터는 별도의 시스템상에서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할 것

이사회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 및 현금흐름 회계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명료하게 작성해 기업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및 손익을 진실하고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를 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것 때문에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특정 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재무상태 및 손익의 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재무제표에 수반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된다. 특정한 업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소규모 기업(piccola impresa)에 대해서는 정보량이 적은 간이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며 현금수지 계산서나 이사회 보고서도 필요하지 않다. 다음 중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 및 소규모 기업으로 간주된다. 총자산 440만 유로 이하, 매출 880만 유로 이하 또는 연평균 고용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가 그 기준이다.

마이크로 기업(micro impresa) 역시 소규모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된 법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 현금수지 계산서, 주식, 이사회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 파생 금융상품의 분할상환비용 및 공정가치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2년 연속으로 총자산 175,000만 유로, 매출 300,000만 유로, 연평균 고용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마이크로 기업으로 간주된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의 모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다음과 같은 예외는 있다.



- 소규모 그룹 : 2연속 과세 기간 동안 다음 조건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로, ①자산의 총 합계 장부금액이 2,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총 합계 매출액이 4,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평균 고용 인원의 총 합이 25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면제 규정은 모기업이나 그 종속기업 중 하나가 공익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무관성 : 모기업이 보유한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가 그룹의 성과를 공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배제 근거조항 : 법령 제127/1991의 제28조에 의거해, 모회사가 통합에서 배제되는 기업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①모회사의 유효권한 행사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제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②예외적 경우로, 모회사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없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경우, ③주식이나 지분이 향후 매각을 위해 독점적으로 보유되는 경우를 뜻한다.
- 하위 지주회사 : ①감사대상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EU 기업이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가 이탈리아 또는 유럽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③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 자본의 최소 5%를 보유한 주주들이 회계 연도 마감 최소 6개월 이전에 연결 재무제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사업체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 상장기업
- EU 역내에 상장된 금융상품 발행 주체

비상장기업은 이탈리아 민법 제 2345-bis조에 규정된 요약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 IFRS를 적용해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3년 연속 △총자산 440만 유로, △매출 및 서비스 수익 880만 유로 △연 평균 고용인원 50명 중 2개 요건을 넘지 않는 경우에 요약연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탈리아 GAAP와 IFRS는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상대적인 중요성의 정도도 다양하고 양쪽 모두 예측 불가능한 규정변경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탈리아 GAAP	IFRS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의 형식은 회사법에서 규정 ·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은 기능과 성격으로 분류되어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증가 및 이연)을 구분. 부채는 주로 성격에 따라 분류되며, 각 대차대조표 항목은 현재(12개월 이내)와 비유동(12개월 이상)으로 분류 ·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되나,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는 불필요 · 손익계산서상의 원가는 성격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형식 비규정 ·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 및 비유동으로 분류하나, 자산과 부채 표시를 유동성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활용 가능 ·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필요 · 손익계산서상의 원가는 성격 또는 기능으로 구분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될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과반수를 보유한 기업 -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모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 - 특별한 계약상 의무로 인해 모기업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 ·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구분할 때 잠재적 의결권은 비교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변동 이익에 노출되고, 피투자자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해당 변동 이익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 · 지배권 권한, 변동 이익에 노출, 쌍방 간의 연계를 포함 ·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구분할 때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 대상
공동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구를 통해 구조화된 공동 협정은 지분법이나 비례연결법을 사용해 연결재무제표에서 회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구를 통해 구조화된 회계처리 공동 협정은, 협정의 내용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가 협정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경우, 기초 자산과 부채에 대해 라인별 회계 처리 - 파트너가 협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처리
자산	
취득 무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무형고정자산의 내구연한에 따른 상각 가능 · 창업비용 및 신주발생 비용은 일정 조건하에서 자산화 가능 · 광고선전비는 창업 또는 확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자산화 불가능 · 사업 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은 연한에 따라 상각하되, 최장 20년까지지만 가능. 연한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각기간은 10년 이하로 결정 ·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재평가는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무형자산에 대한 무기한 내구연한 인정. 이 경우, 상각이 불가하며 적어도 연 1회 감손평가를 실시 · 창업비용은 자산화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주발생 비용은 자본 공제로 인정 · 광고선전비는 자산화 불가능 · 사업 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은 상각의 대상이 아니나 연 1회 감손평가 대상 · 재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

자가창설 무형자산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를 자산화 하여 상각 가능	·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를 자산화하여 상각 가능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특별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 재평가 불허	· 유형고정자산은 원가 모델 또는 재평가 모델 중 하나를 적용해 평가. 재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그 구분 자산전체를 충분한 규칙성을 통해 재평가
리스 (대여자인 경우)	
· 모든 리스를 재무제표에서 운용 리스(operating lease)로 식별, 금융 리스(finance lease)는 법령에 의거해 공개 필요 · 국제회계기준 17 적용은 연결 재무제표에만 해당	· 단기 및 저가치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는 재무제표에서 사용권리 자산과 리스채무로 인식
투자 부동산	
· 투자 부동산은 원가에 따라 계상하며 공정가치평가는 불인정	· 투자부동산은 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계상 · 공정가치 적용 시, 변동은 순손익으로 인식
재고자산	
· 후입선출법 인정	· 후입선출법 불인정
금융자산 (측정 및 인식종지)	
· 장기투자는 취득원가로 인식. 장기투자의 취득원가를 영구적으로 감손처리하는 경우, 감손처리 후 금액으로 인식 · 단기투자는 취득원가로 인식. 취득원가는 시장가격 또는 시장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 할인에 따른 유리한 금리 대출과 채권은 상각원가로 인식 · 인식의 중지에는 관한 지침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적인 소유권의 상실에 기반	· 금융자산의 측정은 자산의 분류에 따라 다르나 다음의 방법이 가능 - 상각원가로 측정(만기보유목적의 자산, 대부금 및 채권) - 자분을 통한 공정가치로 측정(매매가능금융자산) - 순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로 측정(상기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인식종지는 주로 리스크 및 경제가치의 이전에 기반
헤지 수단으로서의 파생상품	
· 이탈리아 회계기준 설정주체(OIC)가 결정한 헤지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의 정의 및 평가, 법정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기준 32에 따르면 구체적 지침이 제공 ·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 · 공정가치 헤지에는 현금흐름과는 다른 표시 요건이 존재	·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 · 공정가치의 변동은 현금흐름 헤지의 유효부분을 제외하고 손익계산서로 인식 · 현금흐름 헤지의 유효부분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헤지 대상인 거래의 영향이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까지 자본에 이연계상



부채 및 자본	
금융부채 및 자본 금융상품(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는 금융상품의 법적형식에 근거해 시행 · 우선주식은 항상 자본에 포함 · 전환사채는 항상 금융부채로 인식 ·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공제항목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는 발행자의 의무 실행에 근거해 시행 · 강제상환조항 및 우선주식은 금융채무로 분류 ·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불입액은 자본과 금융부채로 배분 ·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공제항목으로 인식
리스트럭처링 총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트럭처링 총당금은 이사회의 결의 이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트럭처링 총당금은 상세한 계획이 발표된 경우 또는 계획이 실제 이행된 경우에 계상
손익계산서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C 기준12에는 수익 인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규정.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수익이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경우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및 경제가치가 이전되고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수익의 인식을 요구하는 여러 요건에 감안
종업원 급여 - 연금비용 (확정급여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비용에 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지침은 없음. · 금액이 높고 장기적인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퇴직급여(TFR) 명목으로 보유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연금수리계산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 제도 명목으로 보유하는 금액은 연금수리계산(예측단위적증방식)을 이용하여 추정

1 연말 재무보고

	목표	내용	기한
1	연간 재무제표 승인	주주는 기업 정관에 의거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채택되는 특별결의에 따라 연말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승인	사업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특별한 경우 180일 이내)
2	연간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주식 포함) 및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관할지역 상업등기소에 전자적 형식으로 제출	주주 승인으로부터 30일 이내
3	재고자산 대장 갱신	재고자산 대장은 연간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의 상세한 내역을 추가하여 갱신	연간 Redditi SC(법인 소득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세무신고 및 납세

	목표	내용	기한
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전자적 형식 또는 서류로 이탈리아 국내 수취인(대리업자, 전문가, 종업원등) 및 로열티,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을 받은 비거주자·기업에 송부 증명서는 전자적형식으로 이탈리아 국세청에 송부	수취인에게는 3.7. 국세청에는 3.31.
2	회계기록 관련 연간 납부 의무	주식·지분자본이 € 516,456.90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 309.87 지불, 이외의 경우에는 € 516.46 지불	3.16.



3	전년도의 월별 납부 기한을 지난 VAT 잔액 납부	판매 VAT와 공급 VAT 간 차액은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 납부 지연은 벌금 대상	3.16.
4	전년도의 연간 VAT 신고서 제출	기한 후 신고는 인정 불허	4.30.
5	12.31. 종료 사업연도 소득세 (법인세(IRRES)) 및 지방법인세(IRAP)의 잔액 납부	납부기한은 전사업연도 기준, 6.30. 및 11.30.	6.30.
6	연간 사업자 등록 비용납부	납부기일은 소득세 잔액 납부기일과 동일, 납부액은 상공회의소에서 결정하며 사전에 공표	6.30.
7	770 양식 (연간 원천징수 납세신고서) 제출	원천징수된 소득세 납부용 770 양식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10.31.
8	12월 말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부과되는 Redditi SC (법인소득세) 및 IRAP(지방법인세) 신고서 제출	법인 소득신고서 및 지방법인세 신고서는 모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10.31.
9	12월이 기한인 선납 VAT 납부	해당하는 경우, 전술한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선불 VAT금액은 전년 12월에 납부한 VAT의 88%로 결정	12.27.
10	이탈리아 아닌 지역에 설립된 기업에 발행한 또는 그 기업으로 수취한 매상 및 공급 인보이스 상세내역에 대한 VAT 월간 보고	데이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매월
11	정기적인 결재 데이터에 대한 분기별 VAT 보고	상세내역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또한, 정기적인 VAT 지불에 관한 데이터 포함 필요 2020년도 제출 기한은 아래 참조 - 1분기 2020.5.31. - 2분기 2020.9.16. - 3분기 2020.11.30. - 4분기 2021.2.28.	분기별

회계기록의 작성을 누락한 경우, 2016.12.31.까지는 1,032~7,746유로, 2017.1.1. 이후는 1,000~8,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느 사업연도에도 2016.12.31.까지의 과세 기간에 51,645.69유로 이상, 2017.1.1. 이후는 50,000유로 이상의 미납 법인세 또는 부가세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은 두 배가 된다.

기업이 이익 또는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및 기록의 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 대리인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 시, 회계장부 및 기록의 저장 장소 및 세무 조사 시에 그 접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 후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기장은 필수적인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을 필요에 의해(예 : 세무조사 시) 즉시 인쇄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 다만, 원본은 광학저장 시스템이 법령으로 인정될 때까지 이탈리아에 저장해야 한다.

PART **V**

법인소득세제

1. 국내세무

- (1) 세무상 거주지
- (2) 세율
- (3) 과세소득 계산
- (4) (국내용) 배당 및 양도손익의 세무상 취급
- (5) 손실금
- (6) 결손금
- (7) 연결납세
- (8) 컨소시엄 면세
- (9) 인센티브
- (10) 디지털 서비스세 (DST)

2. 국제세무

- (1) 원천소득세
- (2) 영구적 시설
- (3) 지점 면세제도
- (4) 외국세액 공제
- (5) 해외 파트너십
- (6)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 차익
- (7) 조세조약

3. 조세회피 방지책

- (1)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 규정
- (2) 특정 조세회피방지 규정



1

국내세무

법인세 기본 정보	
법인세율	법인세(IRES) 24% + 지방법인세(IRAP) 3.9%
이자 공제제한	유 (earning stripping 규정)
휴면기업에 대한 규칙	유
특허박스 세제	유
결손금에 대한 우대조치(이월/환급)	이월
양도소득세율	26%/0%
자본참가세제	유 (95% 면세)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국내법 원천세율	26%/11%/1.2%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국내법 원천세율	26%/12.5%/5%/0%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국내법 원천세율	30%/22.5%
이탈리아와의 조세협정체결국	96
피지배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이중과세 구제조치 (세액공제/면세)	면세(95%)
재외 영구 시설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구제조치(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 특정요건 하에 면세 선택 가능
연결납세	유
이중과세 구제조치	유 (외국세액공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유
CFC 규정	유

1 세무상 거주지

회사 또는 사업체는 등록된 사무소, 경영거점 또는 주 사업소가 사업연도의 반년 이상에 걸쳐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경우에 이탈리아 세무거주자로 간주한다. 비거주자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소득에만 과세되는 반면, 거주자기업은 전세계 소득에 따라 과세된다.

2 세율

법인세(IRES)의 세율은 24%이며,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한다. 지방법인세(IRAP)의 표준세율은 3.9%이나 지방정부는 최대 0.92%의 세율을 표준세율에 가감산할 수 있다. IRAP의 과세표준은 통상적으로 IRES의 과세표준과는 다르다. 따라서 합산세율은 약 27.9%이나 실효세율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과세소득 계산

법인세(IRES)

과세소득은 이탈리아 GAAP 또는 국제회계기준/국제재무보고기준(IAS/IFRS)에 따라 작성되는 손익계정을 토대로 계산하여, 세법 및 세제에 따라 조정된다. 통상적으로 발생주의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배당 및 임원 보수는 수령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정이 계상된 비용은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항목은 불가하다.

- 포괄적인 위험 충당금,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충당금(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따른 충당금 등)
- 작년도 비용/(우발채무(sopravvenienze passive))

IAS/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행 및 상장 기업 등)의 경우, 수익·비용의 정의, 발생·분류를 위한 IAS/IFRS의 기준은 법인세무상에도 적용되어 소득세법전(ITC)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보다 우선한다.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에 관한 일정한 규칙 등 IAS/IFRS를 적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의 대부분이 이탈리아 GAAP를 적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지방법인세(IRAP)

과세소득은 손익계정을 근거로 일정한 조정을 더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 및 이자 비용(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포함)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IRAP상에는 전액 손금 산입된다. 단기계약 인건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손금으로 산입(인건비의 70%)된다. IAS를 적용하는 기업은 IAS/IFRS 손익계산서의 해당 과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IRAP 자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을 부담한 경우, IRAP 납부액의 10%가 IRES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손금산입되지 않는 인건비에 부과된 IRAP은 IRES의 과세소득의 계산상 공제가 허용된다.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파트너십

이탈리아의 파트너십 제도는 조세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법인소득세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파트너십(società in nome collettivo, SNC)과 유한 파트너십(società in accomandita semplice, SNS)의 수입은 자본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의 수입처럼 다른 범주의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항상 사업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해당 수입은 파트너의 법인격 보유와는 상관 없이 기여도에 따라 사업 소득으로서 과세된다.

비거주 파트너십에 배분되는 이탈리아 파트너십 수입은 해당 비거주 파트너십이 이탈리아에 영구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항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파트너십은 지방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4 (국내용) 배당 및 양도손익의 세무상 취급

배당

국내배당의 95%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다만 IAS/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통해 취득한 배당은 전액 과세된다. 국내배당 및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지방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①저세율지역⁵⁾ 거주자가 아닌 경우, ②지불배당⁶⁾의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배당의 95%에 법인세가 면제된다.

CFC 저세율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기업으로부터 거주납세자가 수취한 배당 100%는, 이탈리아 또는 CFC 저세율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피지배 기업을 통해 배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취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탈리아 법인세 부과대상이다.

다음의 경우, 배당은 저세율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거주자인 주주에게 100% 과세된다.

- 직·간접적 지배지분(CFC 규정⁷⁾에서 정의한)에서 피지배 기업의 실효 세율이 그 기업이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의 50% 미만인 경우
- 기타 주식지분으로 투자처 기업이 국내법(또는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례제도)에 의해 세율 50% 미만의 명목세율의 대상인 경우

다음의 2가지 안전조항 중 어느 것이라도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인 주주는 100% 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동 안전조항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세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해외의 관할지역에서 현지 인원, 설비, 기타 자산 등을 이용해 사업

5) 「5.3.2 특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내 「피지배외국기업(CFC) 규정」의 항을 참고

6) Parent Subsidiary Directive의 대상이 되는 EU 자회사에서 이탈리아 모회사에 지불한 배당인 경우, 자회사에 손금 산입할 수 없는 배당 95%는 이탈리아 모회사에 면제된다. 따라서 자회사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부분에만 이탈리아에서 과세한다.

7) 「V-3-2」 특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내 「피지배외국기업(CFC) 규정」의 항을 참고



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CFC 안전조항⁸⁾) 배당의 50%가 면제(지배지분의 경우 외국세액공제)

- 납세자의 외국기업 투자가 저세율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것이 아님을 증명(과세요건)하면 통상적으로 95% 면세가 적용

거주자기업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자본참가 면세제도에 근거하여 주식 또는 지분, 동등한 금융상품 및 파트너십 지분 양도에 따라 거주자기업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의 95%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또한, 양도 손해의 95%는 손금산입이 된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지방법인세 제외)는 일시 납부해야한다.

- 매도자가 해당 주식 등을 양도 전 12개월 간 지속해 보유한 경우(취득 시기가 상이한 동일 기업 발행 주식의 경우에는 선입선출이 적용)
- 주식 취득 후 최초 승인된 재무제표상에 고정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상계된 경우
- 해당 주식 보유 첫 해부터 공동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 보유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였거나, 사전심판을 통해 공동관할 구역 내에서 과세소득의 대부분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주식의 양도 전 3년간 실제 사업을 실시한 기업이 해당주식을 보유한 경우

통상 주식의 장부가액의 삭제, 감손, 시가로 조정하는 것은 세무상 가능하지 않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가 공표되고 대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시가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사업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

사업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은 일시금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양도 차익 실현 연도부터 최장 5년간 과세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자산은 매각 전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한다. 양도 차익은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양쪽 모두 부과 대상이 되나

8) 「V→3→(2) 특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내 「피지배외국기업(CFC) 규정」의 항을 참고.

사업 또는 지점 양도를 통해 실현된 양도 차익의 경우, 법인세에 따라 과세되며 지방법인세는 면제된다.

5 손실금

세법상 공제 가능한 손실금에 해당하는 규정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들 항목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모두에서 손실금으로 산입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산 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자가 감가상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는 자산 사용 개시 때까지 자본화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작업종별 및 각자산의 종류별로 재무부가 제공하는 표를 사용하여 산정되는 자산의 추정 내구연한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된다.

사용 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감가상각률은 절반이 된다. 자산의 취득원가가 516.46유로 이하인 경우, 매입연도에 그 전액을 일괄상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형자산의 상각

특허권, 노하우 : 매 사업연도마다 취득원가의 50%까지 손실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최단 상각기간은 2년이다.

영업권, 상표권 : 매 사업연도마다 취득원가의 5.55%까지 손실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최단 상각기간은 18년이다. 영업권 및 상표권의 상각비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손실금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영업권 및 상표권에 관한 회계상 상각이 아닌, 손상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IAS/IFRS 적용 기업도 세무상 영업권 및



상표권의 상각비를 손실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라이선스, 기타 권리 : 대상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자산의 내구연한에 따라 정액법을 통해 손실금으로 산입한다.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

통상적인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연도 시작 시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자산 총액의 5%까지 손실금으로 산입된다. 나머지 비용은 그 후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손실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

접대비는 ①광고선전비와 구별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사업과 관련해 합당하게 문서화된 경우 손실금으로 산입된다. 50유로 이하의 선물 구입비용은 전액을 즉시 손실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제약회사에는 특례가 있어서 회의비용 일부에 대한 손실금 산입 규정, 의약품 또는 의약품 관련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의사, 수의사, 약사 등에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손실금 산입 규정 등이 있다.

지방 재산세(Imposta municipale propria)

2019년 회계연도 지방 재산세의 50%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공제율은 2020년 회계연도에는 60%, 2021년에는 100%로 증가한다. 지방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이자 비용

순지급 이자(이자 소득을 초과하는 이자 비용의 비율)는 EBITDA의 30%까지 손

실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자 비용을 손실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2018.12.31.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다음해부터 적용되도록 수정되었다.

EBITDA는 매출부터 매출원가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금융 리스를 제외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뺀 것이다. 단, 세법에 따라 계산된 이들 과목의 세무 장부가액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개정전에는 각과목의 회계상 장부가액에 따라 EBITDA를 계산해야 했다).

IAS를 적용하는 기업은 IAS/IFRS 손익계산서의 해당 과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자 비용 중 EBITDA의 30%를 넘는 초과 이자분은 무기한 이월되고 과거 초과 이자소득에 대해 또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순지급 이자가 EBITDA의 30% 미만 범위 내에서 EBITDA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에 EBITDA의 30%가 순지급이자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상회분은 다음 5개 사업연도(개정전 : 무기한)에 걸쳐 이월되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이용 가능한 EBITDA를 인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EBITDA 상회부분은 선입선출법으로 상계하여야 한다.

국내 연결납세 그룹 내에서는 각자의 이자 비용(연결납세 그룹 가입 후 발생한 부분에 한정) 중 EBITDA의 30%를 넘는 초과 이자분을 동일한 연결납세 그룹 내의 별도의 법인이 자신의 이자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EBITDA의 30%까지의 부분과 상계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이자 상계를 목적으로 한 국외연결회사의 「가상연결 납세 그룹 가입(virtual inclusion in the tax group)」은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재고자산

법인세 세무상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 등 합당한 원가계산법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으나, 후입선출법에 따른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상품 평균단가가 사업연도의 최종월의 평균시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만 손실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 기타 평가절하는 원칙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상품이 판매 또는 파손된 경우에만 손실금 산입이 가능하며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 제조 중인 상품 또는 완성품은 생산 간접비용을 포함한 제조원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장기계약 평가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대손충당금

어떤 형태의 보증도 적용되지 않는 외상채권의 액면가(또는 취득원가)의 0.5% 범위 내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총액이 연간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외상채권의 액면가(또는 취득원가)의 총액의 5%를 넘을 경우, 충당금의 손실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충당금은 법인세에서만 손실금에 산입된다.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외상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손은 파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또는 모든 외상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가 증명될 때만 인정된다. 대손상각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충족할 경우 손실금으로 산입된다.

-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으로 소명 가능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합의된 회생계획이 있는 경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외상채권의 평가절하 또는 인식중지(derecognition)의 경우, 또는 외상채권의 액면금액이 2,500유로(또는 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5,000유로) 이하인 경우에 6개월 이상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파산절차와 유사한 해외의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손실금 산입이 인정된다. 거래처가 파산절차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액면가 2,500유로(또는 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5,000유로)를 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 대손상각의 손실금 산입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한 연도와 정확하고 상세한 증거로 소명된 연도 이후라도 대손상각은 회계상 인식된 사업연도의 손실금으로 산입된다. 그러나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인식증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대손상각은 손실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6 결손금

법인세를 통해서만 결손금의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며 다음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 개시 이후 최초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80%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과세소득의 100%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수반하는 주식 과반수가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제3자에 양도된 경우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주요 활동이 기업의 중요 사업 활동이 아닌 경우 (양도가 실시된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직전 2개 사업연도 또는 이듬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

기업이 합병 및 분할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에 관한 제한이 있으나 안전조항(기업활력 테스트)도 존재한다.

연결납세 기간 중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연결납세 그룹의 모회사 또는 기타 그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하기 위해 그 연결모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해당 모회사는 일반원칙(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 소득의 최대 80%까지 또는 사업개시 후 최초 3개 사업연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 공제 가능)에 따라 연결납세 그룹의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



7 연결납세

국내 연결납세

이탈리아 기업 및 해당 이탈리아 기업의 1개 이상의 자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모회사는 직·간접적으로
 - ①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권의 과반수를 보유할 것
 - ② 자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
 - ③ 자회사 이익에 대한 권리 50% 이상을 보유할 것
- 모회사 및 자회사는 동일 기준의 사업연도를 채택할 것
- 모회사 해당하는 각각의 자회사는 연결납세를 선택할 것
- 국내 연결납세 결정 여부는 최초 연결사업연도에 제출하는 세무신고서에 명시될 것
- 각 자회사는 모회사 거주지의 세무거주자로 선택할 것

국내 연결납세는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며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은 그 중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 모회사는 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에 따라 각 연결법인이 자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연결상 과세표준을 계산
- 모회사는 정기적 또는 최종적인 납세를 이행하고 순손실 이월이 가능
- 연결 중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상계 가능
- 과세 그룹 구성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과세소득으로만 상계가 가능
-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과세
- 선택은 3년간 구속력을 가지며 연결법인이 연결이탈을 선택하지 않는 한 3년 경과시 자동갱신

- 연결의 구성이 조기 종료된 경우, 또는 3년 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수 규정(Clawback, 세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연결의 구성이 조기 종료된 경우, 연결 기간 중에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 단독으로 이월이 가능하나 연결법인 간 서로 다른 기준을 합의하는 것도 가능

2014년까지는 외국기업은 ①연결법인으로서, ②조약체결국에 거주하는 경우, ③이탈리아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그 자산에 이탈리아 연결법인의 주식·지분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이탈리아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6월 12 유럽연합법원(ECJ)의 판례 C-40/13에 의거하여 2015년에 조건 ③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 거주자기업은 조약체결국 거주자인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고 영구적 시설을 통해 이탈리아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영구적 시설이 이탈리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무상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이탈리아 거주자기업은 EU/EEA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이며, 이탈리아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상 연결이 가능하다. 그 외에 EU/EEA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인 피지배기업의 이탈리아 또는 EU/EEA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영구적 시설도 연결할 수 있다. 해당 연결 방식은 비거주자인 지배기업이 이탈리아 또는 EU/EEA의 피지배기업을 하위 그룹의 연결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제 연결납세

이탈리아 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자회사와 국제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

- ① 증권시장에 상장
- ② 정부 또는 다른 거주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외국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적격 비거주자법인이란 거주자인 모기업이 자본, 의결권, 수익권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모든 비거주자법인이 과세 그룹에 참가할 것 (all-in, all-off 원칙)
- 모회사 및 자회사는 동일 기준의 사업연도를 채택할 것
-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 대상일 것
- 비거주자 자회사는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해 서면동의 및 연결과세소득 산정 시 모회사와 협력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

국제 연결납세는 이탈리아 국세청에 조세심판 형식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해당 연결납세 방식은 적어도 5년간 유효하며, 연결가입 법인이 연결 이탈을 선택하지 않는 한 3년경과 시 자동 갱신된다.

국제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법인세 규정(일부 수정 제외)에 따라 산정되는 비거주자 자회사의 소득은 자회사의 이익에 비례하여 모회사에 배분된다. 회사가 과세 그룹에 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 그룹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8 권소시업 면세

적격 이탈리아 기업의 과세소득 또는 결손금은 선택에 의해, 이익배당청구권의 비율에 따라 이탈리아 법인주주에 배분된다. 적격기업이란, 주주 모두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해당 법인 주주가 기업의 이익 및 의결권의 10%~50%의 권리를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해당 선택은 거주자 기업 및 모든 주주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제도의 선택은 3년간 구속력을 가지고 참가자가 이탈을 선택하지 않는 한, 3년 경과 시 자동 갱신된다. 외국기업인 주주는 이탈리아 회사가 분배한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연결납세를 선택한 기업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주가 이월하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권소시업 면세를 기준으로 분배된 이익을 상계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

9 인센티브

특허 박스

2014.12.31.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이탈리아 거주자인 기업 또는 이탈리아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조세정보교환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이 보유한 이탈리아 내 영구적 설비가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박스 세제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허박스 세제를 통해 적격소득의 일정 비율이 과세표준에서 면제된다. 적격소득은 적격지적재산(지적재산으로 보호된 소프트웨어, 특허, 디자인, 모델, 프로세스, 기밀제조법 등에 노하우를 포함하는 공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지식)의 라이선스 공여 또는 직접사용을 통해 얻는 소득을 뜻한다. 법인세 또는 지방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적격소득 비율은 2015년에는 30%, 2016년에는 40%, 2017년에는 50%였다(역년을 사업연도로 간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한 번 선택하면 적용 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5년간은 지속해야 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조세판정 또는 자체 평가 메커니즘에 따라 적격 소득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 적격비율은 무형자산의 생산에 요구되는 비용총액에 대한 해당 자산의 유지 및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비율로 계산된다. 동 계산방법은 OECD의 'Nexus Approach'를 따르고 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020년 예산법에 의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정되었다. 다음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 과학 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산업연구, 시험개발 : 세액공제는 보조금과 기여금을 차감한 비용의 12%까지 가능하며 최대 300만 유로까지 공제가 가능
- 과학 기술 분야 이외, 신규 또는 향상된 제조공정 또는 제품 개발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술혁신에 투자 : 세액공제는 보조금과 기여금을 차감한 비용의 6~10%까지 가능하며 최대 150만 유로까지 공제가 가능



- 섬유, 패션, 제화, 안경, 금속, 가구, 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제품 또는 샘플을 제작을 위한 디자인 : 세액공제는 보조금과 기여금을 차감한 비용의 6%까지 가능하며 최대 150만 유로까지 공제가 가능

상기 세 가지 경우 모두 회계연도가 12개월보다 단기 또는 장기인 경우 세액공제는 기간에 따라 조정된다. 세액공제는 매년 3회 균등금액 분할 방식만 적용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원하는 납세자는 감사관으로부터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는 서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사업 활동의 목적, 본질 및 결과가 명시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주이자 공제(ACE)

2018.12.31.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0.12.31. 이후 증가한 자본에 일정한 이율을 붙이는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간주이자 공제는 세무상 손실을 뺀 순이익의 계산 후에 적용되어 간주이자 금액이 순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여부분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전액 무기한 이월되어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본재에 대한 세액공제

슈퍼상각(Super Depreciation)과 하이퍼상각(Hyper Depreciation) 제도는 납세자의 투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인더스트리 4.0' 투자와 관련한 특별 세액공제로 대체되었다. 즉, 2016.12.11. 제정된 법령 232호에 명시된 유형 중 하나이거나, 동 법령에 명시된 '신규 보통자본재'로 명시된 세 번째 유형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 세액공제는 파산절차 중이 아닌 이탈리아 거주자 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이탈리아 내에 보유한 영구적 시설이, ①노동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산업 규정을 준수하고 ②노동자의 국가 보험 기여금 지불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자산이 상호연결⁹⁾ 되거나 사용 개시되는 다음해부터 시작하여 투자 유형에 따라 연 3회, 또는 연 5회 균등분할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투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자본장비에 대한 적격투자는 최대 1,000만 유로까지, 세액공제는 ①최초 투자금 250만 유로의 40%, ②나머지 투자금액의 20%까지 허용
- 유형자산에 대한 적격투자는 최대 70만 유로까지, 세액공제는 비용의 15%까지 허용
- ‘신규 보통자본재’의 경우 비용의 6%까지 세액공제가 허용

공제대상 투자는 2020.1.1.~2020.12.31. 사이에 완료되어야 하나, 판매자가 2020.12.31.까지 주문을 수락하고 20%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2021.6.30.까지 시행되는 투자도 인정한다. 신규 자본재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탈리아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자산이 해외 소재 생산시설로 매각되거나 이전될 경우 환수조치가 적용된다.

Industry 4.0 Training

Industry 4.0 직원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9.12.31. 진행 중인 회계연도 이후로 연장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① 소기업(piccola impresa) : 적용 대상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하며 연 30만 유로로 제한
- ② 중기업(media impresa) : 적용 대상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하며 연간 25만 유로로 제한
- ③ 대기업(grande impresa) : 적용 대상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하며 연간 25만 유로로 제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대상 교육을 이수한 노동자가 소외 또는 극소의 계층에 속할 경우에 세액공제는 60%(연간 상한선은 유지)로 인상된다. 세액공제는 조건이 충족

9) 상호연결 자산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통제, 운영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뜻하며 사업장의 전자화된 생산 운영 체계 또는 공급 네트워크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족되는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이듬해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세액공제는 위기상황인 사업장, 영업 금지조치 중인 사업장,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업장, 노동자의 국가보험 기여금 지급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개정 조항은 이전 조항과는 달리 기업별 또는 지역 차원의 단체교섭협약 체결의 의무가 없다. 또한,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교육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협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며, 지방 노동감독청에 이를 제출하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세제혜택

사업결합(aggregazione aziendale) 장려를 위해, 영업권, 유·무형자산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장부가액의 경우, 합병, 감면, 기여 등을 통해 최초 증액된 500만 유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2019.6.30.~2022.12.31.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 적용된다.

동 세제혜택은 아래 조건에 따른다.

- 사업결합으로 조직된 회사는 반드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주식회사(S.p.A) 여야 한다.
- 사업결합에 관여하는 기업은 같은 기업 그룹에 속하거나, 상대 기업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같은 그룹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 각 기업이 최소 2년 이상 영업을 하였어야 한다.
- 사업결합으로 조직된 회사는 거래 후 최초 4개 회계연도에 추가 특별거래를 하거나 증액된 자산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기타 인센티브

그 외 우대조치에는 혁신적인 신생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

노동자의 자격취득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를 제공하는 기업, 주식상장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등이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특정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 분야 또는 지역, 예를 들어 농업, 남부 이탈리아 개발도상지역,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입법자가 장려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부여되는 몇 가지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10 디지털 서비스세 (DST)

2020.1.1. 도입된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입법 의도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용자의 IP 주소, 또는 위치 지리 정보를 활용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대상은 다음의 3가지이다.

- 특정 인터페이스 사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매체
-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면 인터페이스를 공급하고, 사용자간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를 판매

다음 항목은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사용자에게 대한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결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만을 제공
-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한 규제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서비스 제공
- 상기 언급된 특정 금융기관의 데이터 전송
- 디지털 중개 서비스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



- 중개자가 아닌 공급자의 웹사이트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 전기, 가스, 탄소 배출권 및 연료 교환, 관련 데이터 전송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조직 및 관리

기업 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수익 역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당해연도의 전년도에 개인 또는 그룹 전체에 걸친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며, 이중 550만 유로가 이탈리아 내 공급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사업에 적용된다.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기 임계값 계산에 필요한 과세 대상 서비스를 통한 소득 및 기타 세부사항을 월단위로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한 해 동안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부과된다.

세금은 매년 2월까지 납부, 매년 3월까지지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룹의 경우, 법률 준수를 위해 과세 대상 기업 중 한 곳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단순화할 수도 있다.

비거주 과세 대상자(이탈리아 내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이탈리아와 조세 회피 및 조세 채무 환수를 위한 상호 행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U 또는 EEA 회원국 내에 시설을 보유는 디지털 서비스세 지급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할 세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이탈리아에 공급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은, 이탈리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

- 특정 인터페이스 사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매체 서비스의 경우 :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사용자가 접촉시 노출되는 광고의 비율에 따라 결정
-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면 인터페이스를 공급하고, 사용자간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 : △ 서비스가 사용자간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다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경

우,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달 받는 비율에 따라 결정, △ 서비스가 상기 명시된 형태 이외의 다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경우,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접촉이 가능한 이탈리아 계정 보유 사용자의 비율에 따라 결정

-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서비스의 경우 :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거래된 비율에 따라 결정

이탈리아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EU와 OECD 양쪽 모두에서 논의 중인 신규 세금 규정을 조기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탈리아 디지털 서비스세는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소득에 따른 조세 조항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될 수도 있다.



2 국제세무

1 원천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비거주자 주식에 지불되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26% 비율로 원천징수된다. 거주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한 증거서류 제출을 통해 동일한 배당에 대한 최종 세금 납부가 증명되는 배당 수령자는 26%의 원천징수세 중 최대 11%에 대한 부분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저축형 주식에 대해서도 26%의 원천징수세가 있으나 11%의 부분환급금은 없다.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된 EU 및 EEA 연금기금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1%이며, 11%의 부분환급금은 없다.

모회사-자회사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하기 참조), EU·EEA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기타 독립체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1.2% 감면된 국내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기 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모회사-자회사 지침

모회사-자회사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EU 또는 EEA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이며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체에 지급된 배당은, 국내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인 1.2%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이는 국내 모회사가 수취한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배당금 지급일까지 수익권자는 직접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는 외국 세무당국이 서명한 거주증명서 및 수익자의 최저보유기간 준수 증명서가 포함된다.

EU-스위스 간 체결된 2004.10.26. 협정

동 협정 제15조에 의거해 이탈리아는 2005.1.1. 이전에 발효된 모회사-자회사 지침에 규정된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스위스에 거주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배당은 비과세로 하고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의 적어도 25%를 최소한 2년간 직접 보유해야 한다.
- 둘 중 하나는 이탈리아 세무거주자, 나머지 하나는 스위스 세무거주자여야 한다.
- 제3국의 조세조약 하에서는 어느 회사도 해당 제3국의 조세거주자여서는 안 된다.
- 양측 회사 모두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충실한 CIT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 두 회사는 모두 법인이어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에는 26%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이 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다. 또, 국내법에 의한 일정한 경감세율이나 면제제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국채 또는 유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12.5%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또, 이자 및 로열티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V→2→(1) 원천소득세 중 '이자 및 로열티 지침에 따른 면세' 항목을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탈리아 기업이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관련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에는 5%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수령자의 수익권 소유자로서의 지위 이외에 이자 및 로열티 지침에 의해 규정된 모든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비거주자 관련회사가 EU 또는 EEA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
- EU 기업에 지급하는 이자가, 회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인 경우
- EU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이탈리아 기업 또는 다른 그룹기업(모기업 등)에 의해 보증된 경우



이자 등 유사수입(할인발행 등)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 비거주자인 수령자가 ①외국 중앙은행 또는 해당 국가의 공적기금에 투자하는 단체인 경우 또는 ②과세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는 투자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도 포함)
- 이자가 ①이탈리아 및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 ②이탈리아 은행 또는 EEA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증권시장 또는 다국간 거래기관에서 그 주식이 거래된 이탈리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회사채와 유사한 증권 및 기업 어음, ③증권화 기구가 발행한 채권.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장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회사채와 유사한 증권 및 기업 어음 등 자산에 대해 발생한 경우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거주자인 수익권 소유자가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은행 또는 허가받은 금융 중개기관에 해당 회사채를 맡기고 특별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의 면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외 대출금의 이자에도 적용된다.

- 중장기 대출일 것
- 차용자가 거주자기업일 것
- 대출업체는 EU 회원국에 설립된 은행, 보험회사, 또는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된,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투자자(예를 들어, 투자 펀드)일 것

이탈리아의 비공개 부동산 투자펀드(소득세 면제 자격)가 비거주 투자자에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는 이탈리아 국세청에 의해 이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비거주자인 수익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조세협조 지역 내의 공동투자용 연기금 또는 사업인 경우
- 이탈리아에서 유효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단체 또는 사업인 경우
- 국가의 공식 준비금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또는 사업인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통상적으로 거주납세자(비거주자가 소유한 이탈리아 내 영구적 시설을 포함)가 비거주납세자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30%의 최종원천징수세가 과세된다. 로열티의 정의는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편에 명시된 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수령자가 대가로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로열티 총액의 75%로 할인될 수 있다(원천징수의 실효세율은 22.5%). 비거주자·기업이 보유한 이탈리아 내 영구적 시설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원천징수세는 조세조약 또는 이자 및 로열티에 관한 지침(아래 참조)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 및 로열티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 및 로열티는 이탈리아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 이자 및 로열티의 수익권자가 다른 EU 회원국 기업, 또는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EU 회원국 기업의 영구적 시설일 것
- 지급자 및 수익권자는 이자 및 로열티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 600/73호의 별표 A(법적 서류) 및 별표 B(납세 의무)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또는 기업의 영구적 시설)일 것
- 지급자 및 수익권자는
 - ① 지급자는 수익권자의 의결권을 적어도 25%를 직접 보유
 - ② 수익권자는 지급자의 의결권을 적어도 25%를 직접 보유
 - ③ 대통령령 600/73호의 별표A 및 별표B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인 기업이 지급자 및 수익권자 쌍방의 의결권을 적어도 25%를 직접 보유
 등 3개 요건 중 최소 한가지와 관련이 있을 것

상기 면제 대상 지분은 적어도 1년간 지속 보유해야 한다. 수익권자는 면제 적용을 직접 받기 위해서 지분일까지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U-스위스 간 2004.10.26. 체결한 협정 제15조에 따라 스위스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외 이자 및 로열티의 지불은 2015.7.1. 발효된 이자 및 로열티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이며 의결권이 아닌 주식의 25%를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이탈리아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최장 18개월까지 EU 회원국과 동일한 EU 조세지침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2 영구적 시설

영구적 시설(PE)의 정의

법인세 또는 지방법인세상 영구적 시설은 외국기업이 이탈리아 국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뜻한다.

2018년 예산법에 의거해 이탈리아 국내 영구적 시설에 대한 정의는 OECD의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및 2017년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명시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그 의미가 확대되어 발효되었다. 이들 국내 영구적 시설과 관련한 정의 변경은 다국간 협정(MLI)에 관한 이탈리아의 입장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대리인 영구적 시설의 정의를 확대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세액공제상,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정 사업거점으로서 영구적 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①사업의 관리장소, ②지점, ③사무소, ④공장, ⑤작업장, ⑥채광장소, 석유, 가스전, 채석장 또는 그 외의 천연자원 채굴 장소라고 열거되어 있다. 단, 사업거점이 ①그 활동이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된 경우 (사업 활동이 고정된 장소에서 영구적 시설의 설립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②특정 예비적인 또는 보조적인 활동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거점은 이탈리아 내 영구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②번 요건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2018년 예산법은 '이탈리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립된 이탈리아 영토 내의 중요 또는 지속적인 경제적 존재'로서 일정 사업거점이 되는 영구적 시설을 추가적으로 정의해 이른 바, 디지털 영구적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데이터의 전자적 수집과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이탈리아에 설치하여 일정 사업거점으로서의 영구적 시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한 사업거점인 영구적 시설의 새로운 정의에는 세분화 방지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영구적 시설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탈리아 세무당국 담당자는 세무목적으로 정식 설립 또는 특정되지 않은 사업체를 통할지라도 이탈리아의 모든 그룹 기업이 실시하는 활동을 각각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통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능을 그룹화해 사업을 꾸리는 예비적·보조적 특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시점에서 비거주자 사업 명의로 이탈리아에서 관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비거주자 기업의 중대한 변경 없이(상품 구입 이외의)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기업의 이탈리아 내 대리 영구적 시설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거주자 기업이 브로커, 일반 중개업자 또는 그 외의 독립된 대리인을 통해 이탈리아 사업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대리인이 통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영구적 시설을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비거주자 기업이 거주자 기업을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되는 경우, 혹은 쌍방의 기업이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만으로는 일방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구적 시설이 될 수 없다. 2018년 예산법에는 대리 영구적 시설 제외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1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여 독점적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더 이상 독립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영구적 시설에 대한 국내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2017년 OECD 모델 조세협약이 제시하는 정의와 일치한다.



과세소득의 정의

외국기업이 이탈리아 내에 보유한 영구적 시설은, 이탈리아에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과세소득은 거주자기업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법은 본점의 EU 역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이 본점에 이관한 순이윤에 대해 지점 송금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영구적 시설과 관련한 이윤의 귀속은 현재 OECD 모델 조세협약의 접근방식(해당 이윤은 영구적 시설이 별개의 독립된 기업일 경우 창출이 예상되는 이윤) 및 2008년과 2010년 OECD 보고서, 2018년 OECD의 영구적 시설에 대한 이익의 귀속에 관한 추가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다. 영구적 시설과 외국본사 간의 이른바 내부거래도 공정하고 타당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신규 협력 규정 준수 프로그램

2019년 이탈리아 국세청은 영구적 시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신규 협력규정 준수 프로그램 이행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탈리아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기업의 활동이 이탈리아 내에 설립된 영구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 조세심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영구적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상당액의 과징금 감면과 형사 고소 면제, 영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이익의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비거주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 최근 3년 중 1개년의 전세계 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대기업 그룹 소속 기업
- 최근 3년 중 1개년의 이탈리아 내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액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동일한 그룹에 속한 비거주자기업의 전체 매출 기준)
- 동일한 그룹에 속한 1개 이상의 거주자기업(또는 영구적 시설)의 지원을 통해 상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미공개 영구적 시설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 이탈리아 국세청이 조세 또는 형사 범죄 관련 수사 개시를 비거주자기업에 통보한 경우, 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기업이 이탈리아 내 영구적 시설을 통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적, 법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해당 사실을 존중한다.

3 지점 면세제도

거주납세자는 지점면세제도에 따라 모든 해외지점의 면세를 선택(all or nothing)할 수 있다. 피지배 외국기업(CFC)에 해당하는 지점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점 면세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해당 지점의 소득은 피지배 외국기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본사에 분배된다.

대조적으로 해당 외국법인 지점이 안전조항(V→3→(2) 특정 조세회피 방지 규정 내 피지배 외국기업(CFC) 규정 참조)을 준수하는 경우 지점면세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도 선택 전에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에는 특정 환수 규정(Clawback, 세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외국세액 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의 계산 상 총소득(이월 결손금 공제 후)에 대한 국외 소득 상당 비율 한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한도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는 해외세금 납부가 세무신고서에 제출기한 이전에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 소득신고 해당연도의 세무신고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외소득의 일부가 해외 배당 등에 의해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공제되는 해외소득은 그에 비해 감액된다.

조세조약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가 체결하고 있는 협정에는 matching credit 조항 또는 tax sparing 조항이 여전히 포함된 것



도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투자자는 원천국가에 납부된 실제 납부액 또는 현지의 조세 인센티브에 따라 감액 여부에 상관없이 명목상 해외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해외의 영구적 시설 또는 국제연결납세 약정에 포함되는 해외기업을 통해 창출된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초과분은 최장 8년에 걸쳐 이월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국가에서 발생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상계할 수 있다. 이월로 상계된 법인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초과분은 최장 8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소득세 공제는 현재 이탈리아의 해외 소득세 납부 기준과 관계없이, 이탈리아와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해외 소득세 납부에 적용된다. 불명확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탈리아 국세청과 협의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5 해외 파트너십

이탈리아 세법상, 비거주자사업체(파트너십인지 법인인지 무관)는 투명체(transparent entity)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탈리아 세무상 해외 파트너십은 항상 법인과 동격으로 취급되며 이탈리아에서 창출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비거주자파트너십에 귀속되는 이탈리아 국내 발생 소득은 합산하여 사업 소득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각 소득의 구분(자본소득, 부동산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비거주 파트너십이 이탈리아 내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6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 차이

이탈리아 내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상장기업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이탈리아에서 과세되나 다음의 조항이 적용된다.

-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 차익은 통상적으로 매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 매각된株式이 12개월 동안 상장되지 않고, 그 규모가 의결권의 20% 또는 자본금의 25%를 상회하는 (상각株式) 경우, 외국기업의 양도 차익은 비상장 이탈리아 기업의 비적격株式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과 동일하게 26%의 최종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이탈리아 비상장 기업이 12개월 동안 매각한株式이 의결권의 20% 또는 자본금의 25%를 하회(비적격株式)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 차익에는 26%의 최종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 이탈리아 상장 기업이 12개월 동안 매각한株式이 의결권의 2% 또는 자본금의 5%를 하회(비적격株式)하는 경우, 양도 차익은 이탈리아 국내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12개월간 매각된株式이 의결권의 2% 또는 자본금의 5%를 상회(적격株式)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은 26% 최종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들 규정을 정리하면, 이탈리아 내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기업주주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株式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株式보유비율		과세대상 소득 비율	세율
비상장	의결권의 20% 이상 또는 자본금의 25% 이상 (적격)	100%	26% (최종원천징수세)
	의결권의 20% 이하 또는 자본금의 25% 이하 (비적격)	100%	26% (최종원천징수세) 투자자가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국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0%
상장	의결권의 2%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 (적격)	100%	26%
	의결권의 2% 이하 또는 자본금의 5% 이하 (비적격)	이탈리아 국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이탈리아 국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7 조세조약

이탈리아에서는 100여건의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있다. 투자세액공제 제169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규정은 국내법의 규정에 우선되나 국내법이 투자자에 유리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7.6.7. 이탈리아는 BEPS 보고서 내 OCED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OECD MLI에 서명했다.

MLI는 이탈리아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에 의해 비준되어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다만, 비준까지의 절차나 시간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직 없는 바, 현재 시점에서는 조세조약 조항이 유효하다. MLI 관련, 이탈리아가 표명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대상조세조약** : 이탈리아는 현재 발효되어 있는 96건의 조세조약 중 84건(케냐와 조세조약 등 아직 발효되지 않은 특정 조세조약을 포함)에 대해 MLI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84건의 조세조약이 대상조세조약이다.
- **Hybrid Mismatch (행동2)** : 이탈리아는 hybrid mismatch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조세조약 남용방지 (행동6)** : 디폴트 규칙의 적용 또는 기존 주요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에 따른 적용 예외 조항 중 하나에 의해, 주요 목적 테스트를 선택하고 있다.
- **영구적 설비 (행동7)**
 - 판매 대리인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전략을 통한 영구적 시설 지위 인정에 대한 인위적 회피(MLI 제12조) : 이탈리아는 MLI 제12조 전체를 대상조세조약에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 행동 7에 의거해 조세조약의 대리인 영구적 시설의 정의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 결정되었다.
 - 영구적 시설 인정 제외활동을 이용한 영구적 시설 인정의 인위적 회피(MLI 제13조) : 이탈리아는 MLI 제13조 제1항에 의거, 옵션 A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했다. 따라, 84건의 모든 대상 조세조약에 기재되는 적용 예외 리스트는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만을 갖게 된다. 이탈리아는 MLI 제13조 제4항에 포함된 세분화 방지 규정을 대상조세조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 **계약 분할 (MLI 제14조)** : 이탈리아는 MLI 제14조 전체를 대상 조세조약에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기업 정의 (MLI 제15조)** : 세분화 방지 규정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BEPS 최종보고서 행동7에 포함된 밀접 관련 기업(매우 넓은 의미)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 **상호협의를 효과적 실시 (행동 14)** : 이탈리아는 분쟁해결의 개선을 위해 ‘강제적 구속적 중재’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3

조세회피 방지책

1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

조세회피의 개념을 포함하는 법의 남용과 관련한 법적 정의는 납세자현장(Statuto del Contribuente)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정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세 및 간접세에 적용된다. 법의 남용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거래(또는 일련의 상호 관련 거래)에 경제 실체가 없는 경우. 즉, 서류상 적법하나 명시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
- 어떠한 세법에도 위반되지 않으나 부당한 세금우대조치를 이용하는 경우
- 조세우대조치가 해당 거래의 본질적인 효과인 경우

법의 남용과 관련한 개념은 거래가 특정 조세회피책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탈리아 국세청법의 남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사례에는 거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법의 남용 사유로 정의되지 않는다. 사업 또는 전문적 활동의 구조 또는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쇄신 또는 경영 의사 결정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 법적 남용 사유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탈리아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다. 다만, 행정 처분만 내려질 뿐, 형사 처벌은 없다.

2 특정 조세회피방지 규정

법률, 세무당국의 실무 및 판례법에 따라 적용되는 해당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휴면회사 규정
- 외국기업 및 사업체 및 외국신탁의 세무상 거주지에 관한 규정
- 피지배 외국기업(CFC) 규정
- 이전가격 규정
- 수익권자 규정
- 주주 대출 재분류 관련 규정
- hybrid mismatching

휴면회사 규정

과세소득이 자산의 성격 및 장부가액에 합치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 (즉, 기업활동력 테스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탈리아 기업, 파트너십 및 외국기업의 영구적 시설은 휴면회사로 취급된다. 이런 경우에 최저수준의 과세소득이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목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휴면회사에는 10.5%의 법인세 부가세(명목과세율 34.5%)가 적용된다.

안전조항은 다음의 기업에 적용된다.

-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상장기업을 지배하거나 상장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
- 최초 사업연도인 기업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 사전 조세심판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

휴면회사는 기업활동력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최저수준의 과세소득 추계에 반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세심판에 관해 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받거나 연차세무신고서에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별도 기재할 수 있다.

휴면회사는 손실금을 이월할 수 있고 과세소득 중 최저수준을 상회하는 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6년째 사업연도부터 휴면회사로 처리된다.

- 세무상 손실을 5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상계한 경우
- 세무상 손실을 4개 사업연도에 걸쳐 상계하고 5년째 사업연도에 휴면회사로 간주하는 최저 수준 과세소득을 하회하는 과세소득을 상계한 경우

외국기업 및 사업체 및 외국신탁의 세무상 거주지에 관한 규정

▶ 외국기업 및 사업체

이탈리아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 및 국가사업체는 다음의 어느 조항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탈리아의 면세거주자로 간주된다.

- 외국기업·사업체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개인 또는 사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지배된 경우
- 외국기업·사업체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이탈리아 거주자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외국기업은 ①그 자산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의 폐쇄형 부동산 투자 펀드의 일부를 구성하고 ②직·간접적으로 거주자기업 또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탈리아 거주자로 추정한다.

▶ 해외신탁

반증이 없는 한, 다음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신탁은 이탈리아 거주자로 간주된다.

- 해외신탁이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설정자 중 최소 1명 및 수익자 최소 1명이 이탈리아 거주자인 경우

이탈리아 거주자(즉, 설정자)가 부동산 또는 재산권을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도 이탈

리아의 세무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탈리아에 세무상 거주지를 이전 : 자산 및 부채의 과세기준

비거주자기업가 또는 기업이 거주지를 변경해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이탈리아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탈리아 과세표준은 현재 시장가격이 된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이외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현재 시장가격은 국제 조세심판 절차를 통해 세무당국과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합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거래원가, 장부가액 또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며, 자산에 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낮은 가격, 부채에 관해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 이탈리아 국외로의 세무상 거주지 이전

이탈리아 기업이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처분으로 간주된다. 자산은 이탈리아의 영구적 시설에 배분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시장가격으로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양도 차익은 이탈리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등기상 사무소를 EU/EEA에 소재한, 이탈리아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 이전하는 거주자 기업은 간주 양도 차익의 과세를 유예할 수 없다. 남은 유일한 선택은 간주 차익에 대한 세금을 5년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 납부가 종료된다.

- 그 거주지를 적격국으로부터 적격국 이외 별도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산되어 청산된 경우
- 적격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체 이전을 수반하는 합병 또는 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피지배 외국기업(CFC) 규정

▶ 피지배 외국기업(CFC)의 정의

2019년 예산법에 따라 피지배 외국기업 규정이 폭넓게 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CFC는 ①신탁회사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도 이탈리아의 거주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기업 또는 ②신탁회사 또는 다른 제3자 기업을 통해서도 이탈리아 거주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이익 분배주식을 보유하는 외국기업을 뜻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 기업은 CFC로 간주된다.

- 이탈리아 거주자기업일 경우 적용 실효세율의 50% 미만이 적용
- 소득의 1/3 이상이 ①이자, 배당, 로열티, 주식 양도 차익 및 금융 리스 등을 통한 수동적 소득, ②보험, 은행 및 기타 금융활동에서 발생된 수입, ③관계회사에서 구입 또는 판매되나 경제적 추가 이익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품 거래를 통한 수입, ④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거의 없는 관련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관련기업에 제공하는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경우

※ 외국기업이 부가가치가 없거나 거의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여부는 이전 가격 규정에 기초하여 결정

▶ CFC 규정의 영향

CFC 규정 하에서 CFC 소득에 대하여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주주에게 과세된다. 이탈리아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탈리아의 세제를 따라 계산되어 과세는 별도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이월 결손금을 이용하여 CFC 소득을 상계할 수 없다.

▶ 안전 규정

CFC 적용예외 규정은 현지의 인원, 설비, 그 외의 자산 및 설비를 통해 실현되는 사업이 외국의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전의 규정으로는 대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정도를 증명하는 것으

로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는 조세심판 신청 또는 세무 조정 중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적용 예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이전가격 규정

VI장 참조

수익권자 규정

특정 국내 규정에서는 원천징수세 면제 또는 경감세율(예 : 이자 및 로열티에 관한 지침의 실시)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령자가 소득의 수익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탈리아 국세청은 이 조건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무상, 이자, 로열티 또는 배당면제를 부정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체에 대한 조정은 빈번히 시행된다.

이탈리아 세법에는 수익권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이탈리아 국세청은 소득의 수익권자를 특정하기 위해 거래 실태 및 계약상 세부사항을 주목하고,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며 재무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을 정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조세조약 적용 청구에 대해서 소득을 타인에게 환원하는 책임을 지는 중개인은 수익권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중개자는 소득을 생성하는 자산을 이용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을 환원할 이외의 목적으로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 밖의 경우, 국세청은 수익자가 재무 및 경영자원에 관한 충분한 구조 및 수준의 법적 및 경영적 실태를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실체가 없는 사업 및 사실상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사업체는 도관회사로 간주되어 이익의 수익권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익권자에 관한 평가는 사업 활동에 유의미한 물리적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특히 복잡하다.



주주 대출 재분류 관련 규정

이탈리아 국세청은 외국인 주주 대출이 자본 기여로 재정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자본 기여인 경우, 이탈리아 차입자가 지급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차입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대출 형태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거나, 계약상 다음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이 부채 형식과 그 실태 간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제3자의 대출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
- 채무불이행 조건을 규정한 재무 제한조항에 정의된 재무지표에 부채 및 이자의 각각의 정의에 따라, 주주대출과 주주이자는 불포함
- 이자 지급과 자본금 상환은 배당, 자본 및 자본준비금 감축과 같은 제약의 대상

Hybrid mismatching

2020년도부터 역년을 사업연도로 하는 납세자에 대해 hybrid mismatching을 대상으로 한 신규 규정이 도입되었다. 신규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그룹기업(및 관련된 영구적 시설) 내에서 ①금융상품 관련 지불, ②무형자산 관련 지불 등 기타 지불, ③hybrid 조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mismatch를 대상으로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hybrid mismatch 상황이 발생한다.

- 기업이 지급 시행, 비용 부담, 또는 세무상 손실을 인식
- 해당 기업이 타국의 납세자인 다른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지불 시, ‘다른 기업’이 반드시 지불의 수취인일 필요는 없다.)
- 적어도 1개의 기업이 EU 회원국의 법인세 대상인 경우
- 관련국의 세법이 ①지급 시행, 비용 부담, 세무상 손실의 법적 수단이나 관계, ②지급을 하는 기업 또는, ③지급을 받는 기업에 대해 다른 정의와 세금처리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법적 mismatch의 결과, 세무상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동일 지불이 양쪽 국가 모두에서 손금산입 (이중손금산입)

- 지불은 지불자의 국가에 손금산입은 되나, 수취인 국가의 과세표준은 미포함 (손금산입 및 이익금 불산입)
- 한쪽 국가에서는 지불이 면제되나, 다른 국가에서는 과세 표준에 미포함(비과세 및 이익금 불산입)

요약하면, 신규 hybrid mismatching 규정에 따라 다음이 성립된다.

- 이탈리아 기업이 대금 수취인이고 지불기업이 공제받는 경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탈리아 기업이 대금 지불자인 경우, 타국에서 납부에 대한 이익금 산입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Hybrid mismatching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규정은 수입 mismatch, 역 hybrid 및 이중 거주자 mismatch 등 특정 상황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EU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대기업은 신규 규정 준수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ART VI
이전가격

1. 일반원칙
2. 문서화 문제
3. 처벌
4. 국제사업 전개 기업에 대한 사전 세무협의



1

일반원칙

이탈리아의 이전가격 규정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규정된 독립기업 원칙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간 국제 거래는 독립기업 간 거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그룹 내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구성요소 가치를 정산할 때, 비교 가능한 상황으로 거래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이라면 합의했을 조건 및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독립기업 간 거래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7년판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을 공적 지표로 적용하고 있다. 실무상에서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설정된 상황에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 원칙 적용에 따라 과세소득의 증가와 감소 모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세소득 감소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상호합의(MAP)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과 합의에 도달한 경우
- 국제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실시 후, 그 조사결과가 협력국 간 공유된 경우
-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력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소득이 최종 상향조정되어 납세자가 이탈리아 과세소득의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 대응 조정 - 180일 이내에 종결 가능한 절차)

이탈리아의 이전가격 규정은 연결당사자 간(이탈리아 기업과 직·간접적인 모회사, 자회사 또는 형제회사)의 국제 거래에만 적용된다. 국내 거래의 이전가격 규정 적용은 법률에 의해 적용대상 예외로 간주되며, 이는 다수의 이탈리아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가격 규정은 법인세(IRES) 및 지방법인세(IRAP)의 과세목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이탈리아 국세청 조세판결은 특정 상황에서 이전가격 조정은 부가세 대상에서 벗어남을 밝혔다.



2 문서화 문제

이전가격 문서 작성 시 ①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규정, EU 합동 이전가격 포럼(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이 공표한 EU 이전가격 행동지침(EU Transfer Pricing Code of Conduct)의 보충 원칙, ②이탈리아 세제가 참조된다.

이탈리아 세제에는 이전가격 문서 작성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 면제 (penalty protection)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처벌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 ①납세자는 사전에 문서를 작성해 연차 세무신고서에 이전가격 문서의 존재를 명시하고, ②요청을 받은 납세자는 적시에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고, ③동 문서는 세무당국의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예시를 따라야 하며, ④이전가격 문서가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보고서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조사에 대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납세자가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를 보유한 경우에 증명책임은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있으며,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빙 부담을 납세자가 지게 되어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접근 방식의 오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이전가격 규정은 마스터 파일 또는 국가별 문서와 관련한 예시를 제공하나, 마스터 파일 또는 로컬 파일에 관한 OECD의 세원침식과 이익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13 및 2017년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5장에 제시된 지시사항은 이탈리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그룹 간 서비스 제공 등 특정 거래의 경우, 이탈리아 법인소득세(IRES) 규정에서는 통상적으로 ①해당 서비스 제공이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것이며, ②통상적인 사업 활동의 관점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는 회사가 이익을 얻거나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은 적절한 (추가) 문서로 입증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세무조사 시 이탈리아 세무조사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서비스 제공

에 대한 그룹 간 비용을 손실금에 산입한 이탈리아 기업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접근을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비용에 대한 적절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OECD의 BEPS Action 13에 따라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모회사인 이탈리아 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 의무는 최종 모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모회사가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규칙이 실시되지 않는 국가나,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규칙에 따라 수집한 정보 교환이 실시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는 이탈리아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 보고서의 내용, 적용개시 연도, 보고일 및 제출 절차는 모두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다. 가별 보고서의 제출의무 이행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10,000~5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처벌

세무조정에 따라, 전술한 처벌 면제 제도가 적용된 납세자에는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의 갱신 결과로 과세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90%~180%에 상당하는 표준 법인세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조기 해결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과태료를 감액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국제사업 전개 기업은 사전 세무합의(Advance tax agreement/Accordi preventivi)를 통해 이전가격 및 기타 국제 세무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는 각 산정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의하기 위해 국내, 2개국 및 다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는 영구적 시설과 그 본사 간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귀속을 결정하거나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내 영구적 시설 보유 여부의 사전 확인에도 이용된다.

국제사업을 전개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전가격 규정을 통해 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기업
- 비거주자 기업이 소유한 거주자 기업 또는 비거주자 기업을 보유한 거주자 기업
- 비거주자에 이자, 배당 또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거주자 기업 또는 비거주자로 부터의 이자, 배당, 로열티를 지급받는 거주자 기업
- 영구적 시설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비거주자 기업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는 세무서 사전합의국(Ufficio accordi preventivi)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그 절차를 시행할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완전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합의국은 해외 세무당국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세무당국으로부터 요청 정보를 취득할 때까지 절차 완료기간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절차는 납세자 및 사전합의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동 합의는 공표된 사업연도에 대해 납세자와 이탈리아 세무당국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사실 및 법적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이후 4년간 구속력을 갖는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보고서가 작성된다.

- 조세조약에 근거해 사전 확인제도가 상호합의절차(MAP)에 따라 실시된 경우: 사전합의 신청이 제출된 사업연도에 소급해 구속력이 발생
-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기반이 되는 사실 및 법적 상황이 이전 회계연도와 동일한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신청이 제출된 사업연도에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조건을 소급 적용해 벌금 부과 없이 세무신고의 수정이 가능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유효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의거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서명 이후, 사전합의국은 그 조건 준수 여부, 이전가격 사전합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적 상황에 대한 변화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전합의국이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조건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납세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합의국은 사전에 합의된 시간에 대상기업 부지를 방문할 수 있다. 사전합의국 활동은 보고서에 기재되고 기업의 법정대표자에 사본이 제공된다.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사전합의국이 문서, 정보, 기업방문 또는 그 외 정보원으로부터, 기업이 합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 비협조 또는 투명성 위반 사실을 인식한 경우), 사전합의국은 기업에 30일 이내에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기업이 기한까지 반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업의 반론서가 이전가격 사전합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불충분한 경우, 사전합의국은 해당 이전가격 사전합의 무효화를 기업에 통지한다.

이탈리아 세제에는 기존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수정, 또는 갱신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실효 90일 전까지 납세자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및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사전합의국과 납세자간 추가 협의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PART **VII**

개인소득세제



1

총칙

1 이탈리아 세무거주자

개인의 이탈리아 소득세 납세 의무는 세무상 거주 상황 및 소득 원천에 기반한다.

조약에 따른 면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탈리아 세무거주자인 개인에게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연도의 대부분(즉, 역년으로 183일 이상)을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조세조약 규정의 대상이 되는 바, 세무상 이탈리아 거주자로 간주된다.

- 이탈리아 거주자 등록국(Anagrafe)에서 주민등록을 한 개인
- 이탈리아 민법 정의에 의거, 이탈리아에 주소(residenza)를 보유한 개인
- 이탈리아 민법 정의에 의거, 이탈리아에 거소(domicilio)를 보유한 개인

개인에 대한 ‘주소’는 통상적인 거주지이며 ‘거소’는 사업 또는 이익의 거점(주요 이익의 거점)으로 설정된 장소를 뜻한다.

배우자는 소득에 따라 개별 과세된다. 또한, 각각의 배우자는 미성년자의 소득 절반에 대한 과세 대상이며, ①공동소유인 부부의 자산 및 ②가족의 자산으로 창출된 소득의 절반에 각각 과세한다.

2 비거주자

세무상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이탈리아 국내 원천소득 중 일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이탈리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일한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여전히 비거주자로서의 요건을 충족(과세)하면서도 거

주자인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U 또는 EEA의 거주자이며 이탈리아 세무당국과 적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개인
- 이탈리아 원천소득이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개인

해당 규칙에 따라, 비거주자인 개인은 일정 조건 하에서 모든 세액공제 및 감세제도 적용이 인정된다. 특히, 적격 비거주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자에 대해 특정 신고서를 제출해 자신의 세무상 거주지, 인적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개인정보 등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적격 비거주자인 개인은 외국 거주지에 제출된 세무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3 개인소득세 종류

과세소득은 개인소득세(IRPEF)의 대상이 되며, 주 단위 지방세(tributi regionali) 및 시 단위 지방세(tributi comunali)도 과세된다. 이들 세금은 거주지 및 지방자치 당국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이탈리아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 보유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해외 부동산세(IVIE, Imposta sul valore degli immobili situati all'estero)와 해외 금융자산세(IVAFE, Imposta sul valore delle attività finanziarie detenute all'estero) 부과 대상이 된다.



2 과세소득

1 종류

거주자인 개인은 아래와 같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 부동산 소득
- 자본 소득
- 자영업 소득 (전문직 소득)
- 급여 소득
- 사업 소득
- 양도차익을 포함한 잡소득

총과세소득은 종류별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나, 사업, 상거래 또는 전문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사업, 거래 또는 전문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해 동종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손익은 동일 범주에 속하는 모든 원천 순합계액을 기초로 법정 규정에 따라 소득별로 각각 계산된다.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손익, 수입, 비용 및 수수료는 이를 수령하거나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 또는 발생한 월의 평균 환율을 사용해 환산한다.

2 급여소득

급여

급여소득은 과세연도 중에 고용과 관련해 수취한 모든 보수(현금, 현물 또는 증정품 포함)로 구성된다. 모든 종류의 연금 및 보수에 상당하는 수당은 급여 소득으로 간주된다.

업무 관련비용을 급여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한 환급금은, 일정 약관에 따라 여비 환급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과세된다.

퇴직시에 지불되는 급여는 100만 유로 한도 내에서 별도 과세되거나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통상 과세제도에 기반해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에 258.23유로를 넘는 경우에 노동자에게 과세된다. 현물급여는 노동자의 가족이 수령한 급여 및 제3자로부터의 급여도 포함된다.

현물급여는 시장가치와 동일한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일부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차량, 고용주가 지불한 숙박시설의 임대차 비용,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저금리 대출 등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연금소득

연금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연금 및 연금과 동등하게 간주되는 수당은 급여소득으로 취급된다. 다만, 적격 연금제도에서 특정 연금은 자본소득으로 취급되는 바, 26%의 대체세가 부과된다. 보완 연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상 취급이 상당히 상이하다.



- 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퇴직급여(TFR)) 및 공제가능한 노동자 납입급여를 포함는 발생연도에 대해 최대 15% 균일세율의 별도 과세대상이 된다.
- 연금의 재무요소는 자본소득으로 취급되어 20%의 대체세가 과세된다. 그 기금이 이탈리아 국채 또는 이탈리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국채에 투자한 경우, 대체세는 20%이나 과세 표준은 62.5%로 인하된다.
- 연금의 자본 요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원 보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급여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직무가 전형적인 전문직 활동인 경우, 그 보수는 자영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아래 참조)

이탈리아 비거주자인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에게 지불된 보수에는 30%의 최종원천징수세가 과세된다.

3 사업소득 및 전문직 소득

사업소득은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사업소득은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합명회사(S.n.c, Società in nome collettivo) 또는 합자회사(S.a.s, Società in accomandita semplice)의 소득은 소득의 원천이나 파트너십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상거래에 종사하는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24% 법인세율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과세된 소득이 파트너에 분배된 경우, 소득에는 통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직 소득은 상거래 또는 전문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연도 중에 수령한 보수(현금 또는 현물, 이익분배를 포함)와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상거래 또는 전문직 활동을 통해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으로 정의한다.

4 투자소득

이탈리아 세법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이 수령한 경우에 자본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개인 기업가의 소득항목이 사업 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소득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대신, 이들 소득항목은 사업소득의 구성요소로 취급되어 사업소득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요약하면, 회사채 및 유사 증권의 경우, 발행 시기(또는 지수화된 시기)에 미리 정해진 분배금 이외의 수입은 투자소득이 아닌 잡소득(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이에 맞게 과세된다.

투자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투자소득에 관한 과세 규칙은 'VII-4-(2). 분리과세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 대부금, 예금 및 당좌예금 이자
- 배당 및 그 외의 분배금
- 로열티
- 기타



3

비과세 항목 및 인적공제

1 비과세소득

회사의 특정복지에 관한 지급, 생명보험·상해보험에 관한 지급, 영수증 원본에 기재된 사업경비 환급은 과세대상 지급 명목 중 보수로 취급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및 의료보험

납세자가 지불한 사회복지장 의무납입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기금에 자발적으로 지불한 납입금은 해외에서 납입하더라도 5,165.57유로까지는 소득에서 공제되며 고용주가 납입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된다.

이탈리아 국민건강보험기금(Fondi Integrativi a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에 지불된 납입금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최대 3,615.20 유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현물급여 및 사업경비 지불

노동자가 부담한 사업경비 환급은, 그 경비를 영수증 원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음의 환급 항목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원식당 또는 동등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식사(1일 상한까지)
- 자택에서 직장까지 이동 (제3자에 위임된 경우 포함)
- 고용주가 모든 (또는 특정)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레크리에이션, 건강, 종교 및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가 법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공개된 기준표 또는 연간 추정 주행 거리 15,000km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30%에 대해 과세한다. 노동자가 고용주 또는 제3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정 할인율과 연말에 종업원이 지불한 실제 이율과의 차액의 50%가 과세대상이 된다.

2 공제

부양가족 공제

가족소득 및 납세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한, 부양가족에게는 다양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음의 공제액은 총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소득의 총액이 2,840.51 유로가 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9.1.1일 이후 기준금액이 24세 미만 자녀에 대해 4,000유로까지 증액되었다.

부양배우자 공제는 0~800유로까지 적용된다. 해당 소득공제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공제액이 감소한다. 소득이 80,000유로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민결합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에게도 동등한 공제가 적용된다.

부양아동 공제는 3세까지는 1,220유로 및 3세 이상은 950유로이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400유로가 추가된다.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자녀 이후에는 1인당 200유로씩 증가하며, 공제 적용 자녀가 4인 이상인 개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1,200유로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소득 증가에 따라 공제액은 감액된다.

- 자녀 1인의 경우, 소득이 95,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미적용
- 자녀 2인의 경우, 소득이 110,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미적용
- 자녀 3인의 경우, 소득이 125,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미적용
- 자녀 4인의 경우, 소득이 140,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미적용



상기 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총소득의 75% 이상을 이탈리아에서 창출하는 경우
- 이탈리아에 거주
- 거주국에서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부양 배우자, 부양 아동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750유로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 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이 8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공제

거주납세자는 총세액에서 다음 비용의 19%를 공제할 수 있다.

- 납세자, 배우자 또는 기타 부양가족이 부담한 의료비(전문의 청구비용 포함) : 129.11유로를 초과하는 비용
- 수의사 진료비 : 최대 387.34유로
- 임의의 생명보험료 및 상해보험료(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최대 530유로
- 장애인 지원 관련 보험료 : 최대 750유로
-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 특약 : 최대 1,291.14유로
- 주택 재해 보험 특약
- EU 거주지 은행에 지불한 이탈리아 주택마련 대출에 대한 금리(자가인 경우) : 연 최대 4,000유로 (다른 납세자와 해당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제액은 각각 소유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계산)
- EU 거주지 은행에 지불한 농업용자에 대한 금리 : 신고한 농업용지의 소득금액까지
- 장례 비용 : 최대 1,550유로
- 보육원료 : 최대 632유로
- 초, 중, 고교 수업료 : 최대 786유로

- 대학 수업료 : 학비 전액
 - 아동(5~18세) 스포츠 비용 : 1인당 최대 210유로
 - 부동산업자에 지불한 비용 : 최대 1,000유로
 - 특정 공공목적 보조금
 - 대중교통 정기권 : 최대 250유로 (가족 부담 비용 포함)
 - 특정학습장애를 가진 개인의 중학교 졸업까지 지원 비용
 - 타지에서 학업 중인 대학생 임대료 : 최대 2,633유로
- 거주납세자는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경비 50% 또는 65%를 공제할 수 있다.
- 주택 개보수 목적의 가구 구매 : 50%
 - 건물 개보수 : 50%
 - 에너지 효율 개선 : 65%
 - 건물 내진 보수 : 70~85%
 - 정원 및 테라스 정비 : 36%, 상한 5,000 유로

공제 대상이 되는 건물 개보수 비용은 2005.1.1.~2012.6.25.간 개보수의 경우에는 1주택 당 상한이 48,000 유로, 2012.6.26.~2018.12.31.간 건물 개보수의 경우에는 1주택 당 상한이 96,000유로이다. 건물의 개보수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해서는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공제해야 한다.



4 서울

1 원칙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과세소득	하한 미만 소득에 대한 세액 총계	초과분에 대한 세율
€ 0~15,000	-	23%
€ 15,001~28,000	€ 3,450	27%
€ 28,001~55,000	€ 6,960	38%
€ 55,001~75,000	€ 17,220	41%
€ 75,000 초과	€ 26,420	43%

개인소득세에 더해 주 단위 지방세(tributi regionali) 및 시 단위 지방세(tributi comunali)가 동일한 과세소득에 추가 과세된다. 세율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에 따라 주 단위 지방세는 1.23%~3.33%, 시 단위 지방세는 통상 0.0~0.9% 과세된다.

2 분리과세 항목

투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탈리아 국내배당 및 해외배당에 대한 세무 처리는 정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이탈리아 국내배당

수령자	비적격주식 보유	적격주식 보유
개인 (자본소득으로 과세된 배당금)	배당금 전액에 대해 26% 최종원천징수세	배당금 전액에 대해 26%의 최종원천징수세

2018.1.1.~2022.12.31.까지 승인되었으며 2017.12.31일까지 발생한 이익으로 구성된 적격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임시규정이 있으며, 배당은 이전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40%, 49.72% 또는 58.14%로 인화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해외배당

수령자	비적격주식 보유	적격주식 보유
개인 (자본소득으로 과세된 배당금)	해외에 지불한 세금공제 후 배당금 전액에 대해 26% 최종원천징수세	이탈리아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26%의 소득세 부과 (저세율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100%에 대해 누진과세 적용. 외국기업이 저세율지역에서 유효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배당금의 50%까지 인하)

양도세

이탈리아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은 잡소득으로 취급된다. 세금은 매각대가와 취득원가 차액에 대해 과세되며 취득원가에는 부수적인 법적 관리비용이 포함된다. 2020.1.1.부터 세율은 26%로 조정되었다.



이자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 원천에 따라 상이한 과세표준이 존재한다. 정부 또는 유사 사업체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경우, 12.5%의 최종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 또는 기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이들이 발행한 기타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26%의 최종 원천징수세 대상이 된다. 은행 및 우편당좌예금의 이자도 26%의 최종 원천징수세 대상이 된다. 납세자는 누진세율에 따른 이자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로열티

로열티 소득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특허, 공업 발명, 상표 및 노하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로열티는 저자 또는 발명가가 수취하는 경우에는 전문직 소득으로 간주되며, 저자 또는 발명가 이외의 개인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취급된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로열티의 총액에서 일률적으로 25%의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수익자가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경비 비율이 40%로 인상된다.

유형고정자산 대여를 통해 수취하는 리스 대금은, 상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얻은 경우에는 로열티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취한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소득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를 통해 소득은, 토지대장에 따른 명목 금액이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명목적 토지대장상 금액과 실제 소득(직접 경비의 공제 후 총소득 5% 상한) 중 높은 쪽을 선택한다. 즉, 실제 순이익은 총소득의 95%를 하회할 수 없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통상의 누진세율이 아닌 21%(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0%)의 균일세율(cedolare secca)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임대차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료 수입의 100%이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명목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명백한 과세 대상이 된다.

주거주지 관련 양도 손익

이탈리아 소재 부동산 매각 시에 실현된 양도 차익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이탈리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탈리아 세무법에서는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건물 양도 시 실현된 양도차익은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최초의 주거주지의 매각 차익은 소유자가 점유한 대부분의 기간에 대해 소유자의 주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양도 차익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5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해외 부동산의 매각 시 실현된 양도차익은 소유자가 이탈리아 세무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 조약이 적용되어 상기 규칙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금융투자 매각 시 실현된 양도차익은 잡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통상적으로 매각대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이며, 세율은 26%이다.



5

관리 및 신고요건

1 원천징수세

기업, 사업가 및 전문직 종사자가 지불하는 고용 관련 급여 및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 선납 대상으로 그 금액은 수령자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원천징수세는 소득 납부 기간 및 관련 소득액의 범위에 따라 통상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2 기한

개인 납세자의 경우, 과세연도는 역년을 따른다. 소득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세무신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지불한다. 다만, 이탈리아 국세청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체세 또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체납을 용인할 수도 있다. 730 양식 신고서는 다음해 7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개인소득에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이들 기한은 이탈리아 정부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3 해외자산 모니터링

이탈리아 세무거주자인 모든 개인은 개인소득 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리아 환거래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해외투자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거주자는 이탈리아 국외에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개인소득 신고 양식의 일부인 RW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은행 계좌, 귀금속, 수공예품, 고급차량 및 요트가 포함된다. 해당 요건은 실제 소득 발생 자산 외에도 장래 소득 또는 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도 적용된다.

4 세금 납부

소득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미납세액 및 당해년도 1회차 분의 예정 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회차분의 예정납세액은 순세액에서 원천징수세 및 기타 세액공제를 차감한 차액의 40%로 산정된다. 0.4%의 소액 부대세를 선납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 납세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2회차 분의 예정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회차 분의 예정납세액은 순세액에서 원천징수세 및 기타 세액공제를 차감한 차액의 잔여금의 60%에 해당한다.

5 벌금

세무신고서를 기한 경과 후 1일~90일 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 지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벌금이 적용된다.

2020년 납부 기한인 경우의 벌금은 아래와 같다.

- 2020.7.31.까지 납부 : 이율 0.4%의 이자
- 2020.7.31.~8.30.까지 납부 : 2020.8.1.~15 사이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당일 포함)까지 체납이 발생한 일수에 대해 미납세액의 0.1%와 동일한 경감된 벌금이 추가되고 이자세가 부과된다. 2020.8.15.~30. 사이에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은 미납세액의 1.5%의 이자세가 추가된다.
- 2020.8.31.~2020.10.29.까지 납부 : 미납세액의 1.67%가 경감된 벌금이 추가되고 이자세가 부과된다.
- 이보다 더 늦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기한 경과 후 90일을 초과해 제출된 세무신고서는 미신고로 간주되어 납세액의



120%~240%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무신고서가 부정확한(조정액보다 너무 적은 과세소득 또는 조정액보다 과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신고된 경우)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90~180%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

이탈리아 국외에 보유한 해외금융상품은, 해외 금융자산세(IVAFE, Imposta sul valore delle attività finanziarie detenute all'estero) 부과 대상이 된다. 은행계좌, 우편계좌 및 보통예금계좌는 연간 평균잔액이 5,000유로 이상인 경우, 1계좌 당 34.30유로의 고정세가 부과된다. 그 외 해외금융상품은 소비비율과 소유일수에 따라 과세연도말 또는 소유 종료시점 가격의 0.2%의 세율로 과세된다.

해외 부동산은 해외 부동산세(IVIE, Imposta sul valore degli immobili situati all'estero) 과세 대상이 된다. 세액은 소비비율과 소유일수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경우에 따라 외국의 토지대장상 평균액의 0.76%를 곱한 금액이다. 해당 해외부동산이 주거주지로 사용되는 경우, 세율은 0.4%로 인하된다.

2 고정자산세 (IMU)

IMU는 이탈리아 소재 부동산(건물, 개발지, 농지)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 토지대장상 명목수입금액의 1.05를 곱한 것으로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가로 160을 곱한다.

주거주지가 아닌 기타 건물에 대한 세율은 0.76%이다. 지자체에 따라 세율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고, 세액은 소득세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다.

3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상속세는 이탈리아의 모든 거주자 및 이탈리아 부동산을 소유한 비거주자에 적용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증여자 또는 유언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수취인(즉,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4% 세율이 적용된다. 각 수취인에게 양도되는 자산 및 현금의 100만 유로까지는 비과세되며, 수취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150만 유로까지 비과세된다.
- 증여자 또는 유언자의 형제·자매에게는 6% 세율이 적용된다. 각 수취인에게 양도된 자산 및 현금의 10만 유로까지는 비과세된다.
- 그 외 친족에게는 비과세 기준 없이 6% 세율이 적용된다.
- 증여자 또는 유언자의 친족이 아닌 수취인에게는 비과세 기준 없이 8%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세 및 부동산 저당세가 각각 1%와 2% 세율로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이 주거주지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저당세는 200유로 고정세액이 적용된다.

1 해외주재원

해외에서 영속적으로 실시되는 활동으로 발생하는 거주자인 종업원의 소득은, 노동사회정책부(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의 부령에 따라 연간 명목급여에 따라 과세된다. 이는 ①해외 활동이 해당 고용의 유일한 목적이며, ②그 활동이 임시적이지 않으며, ③노동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목급여는 통상적으로 이탈리아 노동자가 사회보장협정 비체결국에 파견되는 경우에 이탈리아 사회보장납부금 지급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탈리아 고용주는 해외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노동자의 월 명목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과세해야 하고, 해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은 명목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외에 파견된 이탈리아 종업원은 이탈리아와 파견국에서 이중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중과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 규칙은 해외에 파견된 이탈리아 세무거주자가 아닌 이탈리아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중과세공제

거주자인 개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에 대한 국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해당 외국세는 총소득(세무상 이월 결손금 공제 후) 대비 국외소득의 비율에 따라 동일 소득에 과세되는 개인소득세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국외소득이 2개 이상 복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징수금액에 따라 외국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한 과세연도 세무신고서에 청구해야 한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없는 시점에서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한다.

개인이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무신고서에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비거주자 과세제도

비거주자인 개인은 이탈리아 국내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에 대해 소득세가 계산된다.

비거주자는 최종원천징수세 또는 대체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이탈리아 국내 원천징수소득에 대해 연차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절차는 거주자인 개인과 동일하다.

급여소득(연금 포함)은 이탈리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연금, 유사 수당, 퇴직급여, 또는 국가나 이탈리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이탈리아 내 영구적 시설을 통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투자소득 및 전문직 소득은 최종원천징수세 또는 대체세의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세 또는 대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거주자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영구적 시설을 통해 획득한 이탈리아 내 사업소득은, 간주과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가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전문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납세자가 원천징수자인 경우에는 30%의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전문직 소득에는 거주자 기업이 지불하는 임원보수가 포함된다.

또함, 비거주자도 영구적 시설 또는 고정시설을 통해 최소 3개월 간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사업 또는 전문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물의 순가치에 대해 지방법인세(IRAP)가 과세된다.

배당은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6%의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수취인의 거주국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조세조약에 규정된 비율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개인이 지불한 이자는 거주자에게 지불된 이자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최종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다만, EU역외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고 우대세제 대상인 개인이 지불한 용자 이자에는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은행 및 우체국 예금계좌의 이자는 비과세이다. 국가 또는 은행 및 상장기업이 18개월 이상 만기로 발행한 채권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이자는 그 수익자가 이탈리아와의 적절한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국가 거주자인 경우에 비과세된다. 해당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비거주자는 거주 은행 또는 기타 승인된 증개업자에게 해당 채권을 맡겨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로열티는 30%의 원천징수세 대상이 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로열티 총액의 74%에 적용되는 바, 실효세율은 22.5%가 된다. 다만, 수취인이 저자 또는 발명가가 아니며 대상이 되는 권리가 대가 형식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로열티 전액이 과세 대상이다.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의 부동산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는 신고납세를 통한 개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이탈리아 기업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조세조약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4 신규 거주자에 대한 특별 균일 과세

이탈리아에 신규 거주하는 부유층 개인은 신규 거주자 본인이 10만 유로, 그 친족이 25,000유로의 고정세를 납세하도록 허용되는 바,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래 국외소득이 대상이 된다.

- 임대료 소득
- 자본 소득
- 급여 소득
- 자영업 소득
- 법인 소득(영구적 시설의 유형과는 무관)
- 기타 소득

해당 법률에 따라 모니터링 의무(RW 양식의 제출 의무, 'VII→5→(3) 해외자산의 모니터링' 항목을 참조) 및 관련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통상적인 세금은 다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최초 5개 사업연도를 통해 실현된 적격 보유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이
- 이탈리아 국내 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탈리아의 자산만 대상이 되어 해외에서 보유한 자산은 제외하고 과세된다.

해당 제도는 2017년부터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 번 선택하면 15년 간 지속 적용되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각 연도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특례는 즉각 종료된다. 이 제도는 신청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과거 10년간 사업연도 중 최소 9년간 이탈리아 국외 세무 거주자였을 것
- 이탈리아 세법에 따라 이탈리아 세무거주자가 되었을 것
- 이탈리아의 연차 개인소득 신고서에 따라 해당 제도를 선택하였을 것

신청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탈리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 청구는 이탈리아 이주 전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특정 노동자에 대한 특례 제도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에 이주하는 특정 노동자에 대해 급여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의 50%를 개인소득의 과세대상 예외로 하는 면세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면세는 노동자의 거주지가 이탈리아로 바뀐 시점부터 5년 간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5년간 이탈리아에 거주하지 않은 자
- 최소 2년간 이탈리아에 거주한 자
- 이탈리아 기업에 근무하고 이탈리아 기업, 이탈리아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 또는 이탈리아 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된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주로 이탈리아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자
- 경영진 또는 집행역을 역임하고 있거나 고도의 자격(전문직)을 보유한 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졸자(EU 시민 또는 이탈리아가 조세조약 또는 조세 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비 EU시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된다.

- 최소 과거 24개월 간 지속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자
- 해외유학, 부임, 또는 대학원 자격 취득 후 이탈리아에 이주를 결정한 자

PART VIII

고용 및 입국관리

1. 고용

- (1) 고용조건
- (2) 개인 및 집단 고용계약의 해비
- (3) 이탈리아로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의 규칙
- (4) 이탈리아 회사 보장 및 연금제도

2. 입국 관리

- (1) EU 시민
- (2) 비EU시민



1

고용

1 고용조건

전국단체교섭협약(CCNL, Contratto collettivo nazionale di lavoro)

고용주협회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전국단체교섭협약(CCNL, Contratto collettivo nazionale di lavoro)은 고용관계 및 그 결과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폭넓게 규정한다.

동 협약은 특정 업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판례에서는 CCNL이 노동자 개인의 최저임금 및 최소 고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CCNL에서 정의된 것보다 불리한 노동조건을 고용계약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임금 및 급여

고용주는 관련 CCNL에서 결정한 최저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각종 CCNL에 의거해 노동자 직급에 따른 전체 법정 최저급여가 결정되는 바, CCNL의 정기적 갱신이 실시되는 만큼 급여 역시 증액된다. 고용주는 최저급여에 더해 ‘추가 임금(superminimi)’이라는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적으로 연 13회(12월에 2개월분 지급)에 걸쳐 분할 지불된다. 다만, 많은 CCNL(상업 분야의 CCNL을 포함)에서는 연 14회에 걸친 분할 지급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월에도 2개월분을 지급한다. 사내 협약에 따라 더욱 많은 지급 횟수를 규정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또, 주거, 식당·식사 보조금, 법인차량, 보험, 대출 등의 현물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현물급여 및 급여는 모두 과세 및 사회보장 납입 대상이 된다.

기타 조건

▶ 기간제 계약 또는 무기 계약

이탈리아 고용법은 기간제 고용계약과 무기 고용계약 모두를 허용한다.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간제 계약의 최장기간은 연장을 포함해 24개월이다. 임원의 경우 최장기간은 5년이다.

기간제 계약의 건수는 같은 해 1월 1일부로 유효한 무기 계약 건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회사가 적용하는 CCNL에 의해 다른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회사가 적용하는 CCNL에 의해 다른 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한, 기간제 고용계약과 일시 고용(아래 참조)의 총비율은 같은 해 1월 1일에 유효한 무기 계약 건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 수습 기간(periodo di prova)

계약당사자는 수습 기간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장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수습 기간은 고용개시 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은 무효가 되어 해당 고용관계는 고용개시와 함께 무기 고용계약 대상으로 간주된다. 수습 기간중 고용주 및 노동자 모두 언제든지 예고 또는 보상 없이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법률 및 CCNL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바,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최저 잔업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 수당은 일정한 비율(약 15%)를 추가한 금액이나, 통상적으로 시간 외 수당의 비율은 적용하는 CCNL에 의해 결정된다. 심야잔업에는 특별 수당이 적용된다.

▶ 휴가

원칙적으로 휴가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휴가는 CCNL에 의해 노동자의 직종별로 결정되나, 연간 4주 미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연간 최소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고용주 및 노동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노동자는 최소 연간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산전산후 휴가

산전산후 휴가 및 임신한 노동자와의 고용관계 해지에 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탈리아 고용법에는 강제 산전산후 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여성 노동자는 출산 예정일 2개월 전 및 출산 3개월 후까지 일할 수 없다. 다만, 여성은 출산 1개월 전에 근무를 종료하고 출산 후 4개월 후에 복직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노동자는 모체 또는 태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술된 진단서와 함께 고용주와 사회보장공단(INPS)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노동자의 업무가 신체적 부하를 동반하는 경우, 강제 산전산후 휴가를 앞당겨서 취득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강제 휴가에 더해 임의로 산전산후 휴가를 취득할 수도 있다.

임신 개시부터 아동이 1세가 될 때까지 고용주가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탈리아 고용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해고는 무효가 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 한해서 해당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고용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

- 노동자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 경우(통지 기간 없이 즉시 해고 가능)
- 회사가 폐업한 경우
- 기간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

▶ 퇴직급여(TFR, *Trattamento di fine rapporto*)

고용관계 종료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퇴직급여는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과 동일한 정도이며, 특정 회계 규칙에 따라 매년 재평가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급여에 대비해 매년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며, 노동자는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연기금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계약의 종류

▶ 무기 계약

표준적인 고용계약은 무기 계약이다. 기간제 고용계약도 허용되나, 특정한 제한이 적용된다.

▶ 견습 계약

견습은 청년의 연수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한 고용계약이다. 계약은 단체 교섭 계약 또는 쌍방의 대리인 간에 결정된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개별 연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CCNL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신규 채용 36개월 전에 연수생의 최소 20%를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연수생을 채용할 수 있다.

▶ 임시고용 계약(*lavoro accessorio*)

임시고용은 시간 및 보수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노동 형태이다. 보수는 연간 5,000유로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보수 제한은 고용주 및 노동자 쌍방에 적용된다. 고용주는 임시고용 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임시고용에 대해 연간 5,000유로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노동자 역시 고용주 수와 관계없이 임시고용으



로 연간 5,000유로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단일 고용주를 위해 시행되는 노동은 연간 2,500유로를 넘을 수 없다.

▶ **호출노동(on-call)**

호출노동 계약은 24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노동자의 노동일수는 3년 간 40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관광, 오락 및 상업 분야는 제외된다.

▶ **프리랜서 계약**

노동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컨설턴트가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계약이 지속적이고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으로 전환된다. CCNL에서 특정한 노동자, 전문직으로 등록된 개인(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등), 업무 집행기관과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스포츠 협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부업자, 국가 스포츠 연맹과 제휴한 회사 등 특정 카테고리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 **파견계약 및 인력의 일시적 공급**

회사는 노동자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에서 정식 인가된 인력파견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가 영구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이는 파견 고용계약으로 규정된다.

파견 고용계약은 모든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파견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 수는 1월 1일부로 유효한 무기 고용계약의 20%(또는 적용 CCNL에 따라 결정된 제한)를 넘을 수 없다. 인력의 일시적 공급에는 관련 CCNL에 따라 결정된 제한이 적용된다.

2 개인 및 집단 고용계약의 해비

개인 고용계약 해제 - 개별적 (통상) 해고

▶ 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원인(통지 기간 없이 즉시 해고로 이어지는 노동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심각도가 낮은 종업원의 위반행위 또는 기업의 해산이나 재편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해고가 상기 근거를 따르지 않아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노동자가 받는 경제적 보상은 고용주의 규모, 구체적 상황 및 노동시장 개혁법(Jobs Act) 시행 전에 채용되었는지 아니면 시행 후에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Jobs Act의 시행 후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한 노동자의 복직 권리는 부당해고 및 차별적 해고의 경우로만 제한된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 복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상금이 지불된다.

정당한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하나, 그 기간은 종업원의 직위 및 근속연수에 따라 CCNL에 의해 정해진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임원

임원에 대한 CCNL(업종에 따라 차이)에는 임원 해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임원은 이의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한 CCNL에는 통지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통 기간은 임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리해고 절차 - 집단 해고

집단 해고는 1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120일 이내에 최소 5명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뜻한다. 집단 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당 절차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관련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회사는 사내 조합대표 및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절차 개시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 집단 해고 절차 개시와 관련한 서면통지(해당하는 경우에는 INPS의 수령서 사본을 첨부)를 고용부 지방사무소에도 제출해야 한다.
-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에 노동조합은 회사 경영진과 회합을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결정한 이유를 검증하여 대체 해결책을 협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제1단계는 통지 수령 45일 후에 종료된다.
-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고용부 지방사무국 관리자는 별도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부가 관여하는 해당 단계는 노사 협의 후 부정적 결과와 그 이유를 고용부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종료된다.
- 노동조합과 합의에 도달한 경우, 또는 합의하지 못하였더라도 절차가 완료된 경우, 회사 경영진은 노동조합에 사전통지한 조건에 따라 종업원에 서명으로 해고를 고지해야 한다.

종업원은 통상적으로 해고보상금 수령시 고용부 지방사무국 또는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공식 화해계약서에 서명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장래 분쟁 및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회사는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 이탈리아 법률 및 관련 CCNL에서 규정된 기타 보상(해고통지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추가 급여, 미정산 유급휴가 등)을 지불해야 한다.

3 이탈리아로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의 규칙

이탈리아는 노동자 파견에 대한 EU 지침 2014/67/EU를 실행하고 있고, 다음의 주요 규칙이 적용된다.

- 외국 고용주 및 직업 소개기관은 노동자를 이탈리아에 파견할 때, 최소 24시간 전에 이탈리아 고용부에 통지하고 이탈리아 이민법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파견기업은 이탈리아에서 파견 관련 서류(고용계약이나 급여명세 등 모두 이탈리아로 번역한 것)를 관리할 담당자 및 노동조합과 업무 연락할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 노동 감독기관은 실제 파견활동 및 파견기업과 피파견기업간 거래관계 확인을 통해 파견의 진정성을 검증한다. 그 평가에 따라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 노동자는 피파견기업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파견기업과 피파견기업은 모두 제재조치의 대상이 된다.
- 이탈리아에 파견된 노동자는 이탈리아에서 고용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직급의 노동자와(경제상 및 규칙상)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 파견기업과 피파견기업은 노동자의 처우에 관해 연대책임을 진다.

4 이탈리아 회사 보장 및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사고보상, 실업, 질병, 출산)

이탈리아는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질병, 출산, 실업, 연금, 장애 및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 동 제도의 재원은 노동자 및 고용주가 납부하며 납부금은 노동자 총보수의 일정 비율로 산출된다. 이들 납부금은 인건비의 추가분으로 비교적 큰 부담을 차지하는 바, 사업상 경비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 납부금의 고용주 부담비율은 노동자 급여총액의 29%~32%인데 반해, 노동자의 부담 비율은 10%이다. 유사한 비율이 임원에게도 적용되나, 납부는 각각



유사한 특별 기금을 통해 실시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고 또는 직업병 위험에 대비해 전국노동재해보험협회(INAIL)에 납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 급여 총액의 0.4%~3%이다.

연금제도

▶ 노령연금

INPS에 등록된 노동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최소 20년 이상 사회보장 납부금을 납입
- 남녀 모두 67세 이상. 수급 연령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고려하여 향후 인상 예정
- 노령연금을 수급할 권리는 고용 종료 조건

▶ 조기 퇴직연금

INPS에 등록된 노동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남성의 경우, 42년 10개월 동안 납부
- 여성의 경우, 41년 10개월 동안 납부

해당 요건은 45년을 상한으로 향후 인상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시범적으로 ‘100년 쿼터제(Quota 100)’라는 신규 연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2018.12.31.을 시점으로 최소 38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 62세 이상자에게 적용된다.

2 입국 관리

1 EU 시민

생권협정에 따라 이탈리아 등 협정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별 국경관리는 최소화되었다. 유효한 여권·신분증을 보유한 EU 시민은 추가적인 입국·검증 요건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이 가능하다.

이탈리아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EU시민은 시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개인은 등록이 필수적이다. 또한, EU 시민은 특별한 취업허가 없이도 이탈리아 국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2 비EU시민

출장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

비EU 시민이 이탈리아에 입국하려면 여권에 입국 비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한국 국민 등 일부 외국인의 관광 또는 출장 목적 입국은 90일 미만 체류인 경우에 비자가 필요 없다. 그 외의 경우, 출신국 또는 최종거주국에 소재하는 이탈리아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장 또는 관광 목적의 비자로는 이탈리아에서 영구적인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학 목적의 입학

유학·취학 비자는 외국인의 거주국가에 소재한 이탈리아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유학 비자는 학업 기간 중 유효하나, 1년을 넘겨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으로부터 노동일 기준 8일 이내에 체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체류허가 신청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허가증에는 입국 비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체류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허가증을 보유한 자는 파트타임 노동이 가능하다.

가족과 합류 목적으로 입국

이 종류의 비자는 신고자가 이미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고용목적(자영업 포함), 유학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발행된 1년 이상의 유효 체류허가증을 보유한 경우에 발급된다. 해당 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신청인의 가까운 가족에게만 발행되며, 이 비자가 발급된 자는 노동이 가능하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

외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수에는 매년 제한이 있다. 다만, 고도의 자격을 보유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의 파견에는 통상적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견의 주요한 요건은 파견기업과 이탈리아 피파견기업 간의 관계이나, 이런 경우에도 파견자는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파견을 받을 예정인 기업은 이민국(Sportello Unico per l'immigrazione) 관할지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민국은 고용조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노동허가증(Nulla Osta)를 연동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고용조건은 관련 CCNL에 따라 규정된 고용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거주국의 이탈리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체류허가증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 및 이탈

리아 고용주는 고용 조건을 정리한 '체류계약서(contratto di soggiorno)'에 서명해야 한다. 체류허가 신청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체류허가증에는 입국비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체류 목적이 기재된다.

PART **IX**

부가가치세 (VAT)

1. 과세대상
2. 세율
3. 등록
 - (1) 이탈리아 사업체
 - (2) 비이탈리아 사업체도
4. 부가세 그룹
 - (1) 부가세 그룹 규칙
 - (2) 연결 부가세 제도
5. 신고서
 - (1) 연차신고 / (2) 보증
 - (3) 부가세 인보이스 보고 / (4) 부가세 준수 간소화
 - (5) Intrastat 제도
6. 부가세 회수(환급/상계공제)
 - (1) 부가세 환급기한 / (2) 전자 인보이스
 - (3) 부가세 오류 / (4) 회수 불능 또는 일부 회수 가능한 부가세
 - (5) 이탈리아 국외에서 설립된 비등록 사업자의 부가세 회수
7.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거래
 - (1) 수출 / (2) 수입
8. 인보이스
 - (1) 인보이스 상세정보 / (2) 간이 인보이스
 - (3) 전자 인보이스 / (4) 원거리 판매
 - (5) 분할납부 제도 / (6) 자기청구 인보이스
9. 소매업자의 일일 영수증 전자보고(scontrini elettronici)
10. 사업 양도
11. 부가세 선택
12. 본·지점간 거래
13. 부실 채권
14. 조세회피방지
15. 처벌



1

과세대상

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사업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해 이탈리아 국내에서 시행하는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노무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과세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에는 모든 형태의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행해지는 상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무상거래는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나 노무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조건부 매매, 구속력을 갖는 소유권 이전 조항이 붙은 리스 계약, 사업 자산의 가족 사용(또는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 무상처분 및 자가 소비를 위한 노무·서비스의 제공(다만, 그 대가가 50유로를 넘을 경우) 등이다.

수입품은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부가세 과세연도는 역년을 따른다.

2

세율

부가세 표준세율은 22%이나, 특정 자산·노무·서비스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제로세율 또는 면세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표8. 자산·노무·서비스별 부가세율〉

부가세율 10%	부가세율 5%	부가세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식품 · 국내연료 및 전력 · 공공교통 기관 · 특정 의약품 · 물 · 호텔 숙박 시설 · 작가 및 작곡가의 서비스 · 공영주택 · 재생가능 에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의약품, 사회복지, 교육, 가정간호, 외래환자, 지역사회 봉사 등 · 도심부에서 운영하는 공인 수상 여객 운송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식료품 · 서적, 신문 및 전자서적 · 개인의 주거주지 · 특정 의약품 · 의료기구 및 장애인 의료 보조 등
부가세 제로세율		면세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EU 회원국간 시행되는 과세 사업자간 상품·서비스 제공 · 수출용 외항선·외항기 제공, 개선, 수리, 유지·보수, 전세 및 임대 · 국제 운송 서비스 · 수출입에 직접 관련된 노무·서비스 제공 · 이탈리아 국외에 수출된 상품에 대한 작업과 관련한 노무·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서비스 · 보험 서비스 · 징세 관련 노무·서비스 제공 · 복권, 도박, 기타 오락 ·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거래 · 우편사업 · 문화와 관련된 노무·서비스 제공 · 특정 부동산 거래 등 ※ 면세 거래에 대한 VAT는 환급 불가



3

등록

1 이탈리아 사업체

이탈리아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거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탈리아에서 부가세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계상해야 한다. 부가세 등록의 기준이 되는 매출의 최소요건은 없다.

2 비이탈리아 사업체

이탈리아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록 규칙은 비이탈리아 사업체가 이탈리아에서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방식의 대상이 되는 과세자산을 양도하거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탈리아에서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이탈리아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 또는 출하하는 경우(원격지 판매), 그 매출이 35,000유로를 초과하면 해당 사업자는 이탈리아에서 부가세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계상해야 한다.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되, 부가세 세무대리인을 지명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을 경우, 양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및 부가세 세무대리인 임명 양식·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탈리아 세무서 웹사이트(www.agenziaentrate.gov.it)에 기재되어 있다.

기한까지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0~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종 간이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삼각거래

특정 EU 회원국 사업자(이탈리아 고객에 대한 중개 공급자)가 제2의 EU 회원국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그 상품이 제2의 EU 회원국에서 이탈리아로 직접 납품되는 경우, 해당 이탈리아 고객이 부가세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탈리아 고객이 부가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위탁판매

외국기업이 이탈리아 고객의 부지 내에 보관하는 재고를 관리하는 경우, 이탈리아 고객은 해당 부지에서 상품을 이동한 시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부가세를 계상한다.

공급 및 설치

사업자가 이탈리아에서 상품을 공급,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는 바, 해당 고객은 이탈리아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낸다. 사업자는 이탈리아 이외의 EU 회원국에서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품은 EU 역외에서 출하되어야 한다.

국내 매입자 납부제도

일반적으로 ①이탈리아에 설립된 고객이 이탈리아 부가세 등록이 되어 있고 ② 공급자가 이탈리아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체인 경우, 부가세를 계상할 의무는 고객에게 전가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이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된 공급자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이탈리아에 설립된 부가세 등록 고객은 매입자 납부제도 방식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바, 이탈리아 부가세를 계상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고객은 공급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모든 필요한 항목, 이탈리아 부가세의 세율·세액 등을 기입해야 한다.



- 비EU 회원국 공급자의 이탈리아 국내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고객이 자기청구 인보이스를 발행해 이탈리아 부가세를 자신에게 청구해야 한다.

4 부가세 그룹

1 부가세 그룹 규칙

2018.1.1. 이후, 납세자는 부가세 그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2019.1.1.부터 유효하다. 부가세 그룹의 구성원은 이탈리아에 설립된 과세 사업자(반드시 회사일 필요는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탈리아 내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한 이탈리아 국외 소재 영구적 시설 또는 본점의 그룹 참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기업이 이탈리아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EU 또는 비EU 무관)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 해당 외국기업이 보유한 이탈리아 소재 자회사 간 부가세 그룹 구성은 가능하다. 다만, 해산 절차 중인 법인, 법원을 통한 파산·자산압류 절차의 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된다.

부가세 그룹 구성을 위해서는 과세사업자 간 재무상, 경제상 및 직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일한 활동이 주식 보유인 수동적 지주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회사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 지주회사는 부가세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 재무상 관련성은 지배관계에 근거하는 것으로, 부가세 그룹이 유효한 해의 전년도 7월 1일 이후 그 관계가 지속(최저 보유기간)되어야 한다. 지배사업자는 이탈리아 거주자이거나 이탈리아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 경제상 관련성은 활동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주력사업에 종사하거나, 일정 방법을 통해 구성원 간 사업을 보완하거나, 상호 의존하거나, 다른 구성원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경제활동 분류(ATECO) 코드상으로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설립서류상 파악되는 기업의 주요 사업목적은 고려 대상이다.
- 조직상 관련성은 의사결정자 간 법률상 연대에 근거한다.



부가세 그룹 구성원 후보 간 재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제상 및 조직상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추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경제상, 조직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부가세 그룹은 이탈리아에 설립된 관련성이 있는 모든 과세사업자로 구성(all in all out 원칙)된다. 부가세 그룹 구성을 선택하려면 그룹 대표자가 그룹 구성원의 상세정보, 구성원 간 관련성 확인, 그룹 활동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망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가세 그룹으로서의 효력 발생일이 결정된다.

10월~12월 사이에 부가세 그룹 구성을 선택한 경우(서류 제출 시) 차차년도부터 적용된다. 즉, 2020.10월에 그룹 조성을 선택한 경우, 해당 그룹은 2022.1월부터 유효하며, 2020.9.30. 이전에 선택한 경우에는 2021.1월부터 유효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구성원 가입이 가능하다. 부가세 그룹 제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는 AGI/1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그룹 참여 요건을 충족함에도 부가세 그룹 선택 시 제출한 서류에 해당 과세사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사업자가 그룹에 가입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기재 누락이 특정된 다음 해에 해당 부가세 그룹은 해산된다.

부가세 그룹 선택은 3년간 구속력이 있으며 취소할 때까지 매년 자동 갱신된다. 구성원인 과세사업자 중 1개 사업자라도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그룹 전체가 해산된다. 그룹이 해산되는 날은 취소 시점에 따른다. 그룹 구성에 필요한 관련성을 보유하지 못한 구성원 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해당 부가세 그룹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부가세 그룹을 대표하는 구성원은 모회사이다. 모회사가 이탈리아 국외에 설립된 경우, 부가세 그룹 구성원 중에서 매출 또는 수익이 현저히 높은 구성원이 대표 구성원이 된다. 매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 정기적인 부가세 결제 보고, 매출 부가세 지불 등 규정 준수 보증에 대해 대표 구성원이 최대의 책임을 지나, 부가세 책무에 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연대 또는 개별 책무를 진다. 전자 인보이스, 부가세 기록 등 기타 의무는 대표 구성원이 중심으로 하거나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실행한다.

그룹 내 거래는 부가세 적용 대상 예외이나, 그룹 구성원의 제3자에 대한 또는 제3자의 그룹 구성원에 대한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이 해당 부가세 그룹을 대상으로 하면 해당 부가세 그룹에 의한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으로 취급된다. 또 Skandia 판례¹⁰⁾로 유럽연합 법원이 정한 원칙이 이탈리아에서 시행되어 2018.1.1. 이후 효력을 발생(소급 적용 불가)하고 있는 바, 본점 또는 지점이 이탈리아 또는 별도의 세무관리구역의 부가세 그룹에 속한 경우, 본점이 지점에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부가세 대상이 되는데, 아래의 경우를 뜻한다.

-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이탈리아 부가세 그룹에 속한 본점·지점의 타국에 설립된 본점·지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의 제공은 해당 이탈리아 부가세 그룹에 의한 독립된 과세사업자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
- 타국에 설립된 본점·지점에 의해 이탈리아 부가세 그룹에 속하는 본점·지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은 독립된 과세사업자의 해당 이탈리아 부가세 그룹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 타국에 설립된 외국 부가세 그룹에 속한 본점·지점에 의해 이탈리아에 설립된 본점·지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은 해당 외국 부가세 그룹에 의한 이탈리아의 독립된 과세사업자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본점·지점에 의해 타국에 설립된 외국의 부가세 그룹에 속한 본점·지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의 제공은 해당 이탈리아의 독립된 과세 사업자에 의한 외국 부가세 그룹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

신규 규정은 2018.1.1. 이후 거래에 적용되나, 부가세 그룹 제도는 2019.1.1. 이후에 실제 적용이 개시되었다. 은행, 보험회사 또는 펀드 매니저에 대한 간소화된 준수 의무는 부가세 그룹에 속해 있어도 계속 적용된다.

10) 유럽연합법원의 판례 C-7/13. 법인이 부가세 그룹을 구성한 경우의 본지점 간 거래에 대한 부가세 처리에 관한 규정(2014.9.17. 판결)



2 연결 부가세 제도

부가세 그룹 제도의 대체제 격인 연결 부가세 제도¹¹⁾도 유효하다. 해당 제도에서는 각 그룹 구성원이 각자의 부가세 번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구성원 각자의 부가세 채권 및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 부가세 지위를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은 독립된 부가세 과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결 부가세 그룹 내부 거래는 이탈리아 과세 대상이 된다.

연결 부가세 그룹의 신규 구성원이 그룹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부가세 상환 지위는 다른 구성원의 순 부가세 납부 지위를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연결 부가세 제도 선택은 제도 개시 사업연도 중에 제출된 연차 부가세 보고서의 VG 섹션에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부가세 연결 제도를 선택한 경우는 2029년 4월 말에 제출기한인 2019년도 연차 부가세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연결 부가세 제도 구성원들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부가세 그룹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제도의 최저보유기간은 옵션 행사 전년 7월 1일부터 인정된다.

11) 이탈리아 부가세 법 제73조에 규정

5 신고서

1 연차신고

부가세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매년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도 이후부터는 다음 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미납액에 대해 최고 24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정한 경우, 초과 입력된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서를 통해 청구하거나, 추가 조건에 따라 연도의 마지막 분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도 있다. 부가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고 환급은 연별로 시행된다. 분기별 환급 청구는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보증

부가세 환급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에 한해 보증금액의 0.15%에 상당하는 일괄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납세자가 보증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보상금은 국세청이 부가세 환급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여 사정 통지가 송달되는 때인, 환급청구대상연도의 제척기간(시효) 종료 시점에 지불된다. 해당 규정은 2017년도 이후 연차 부가세 보고서로 청구된 부가세 환급금 및 2018년 1/4분기에 제출된 분기 부가세 환급 청구에 적용된다. 실제로는 최초의 보상금은 (2017년도 제척기간이 종료하는) 2023년에 지불될 예정이다.



3 부가세 인보이스 보고

부가세 보고 의무에는 아래 두 가지가 있다.

- 해당 분기 종료 이후 두 번째 달 말일(2분기의 경우 9월 16일)까지 분기별 부가세 정산을 보고해야 한다.
- SDI를 통해 전송된 전자 인보이스(아래 IX→8→(3) 전자 인보이스 참조) 및 관세 청구서로 문서화된 수입 이외에, 인보이스가 발행 또는 수령된 다음 분기 말까지 국외 거래에 대한 분기별 보고(estrometro)를 해야 한다.

분기별 부가세 결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00~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벌금이 50% 감면된다.

Esterometro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송장당 2유로(분기당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벌금은 50% 감면(분기당 최대 500유로)된다.

2019.1.1. 이후 접수·발행된 송장(spesometro)의 신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4 부가세 준수 간소화

2020.7.1. 이후 거래 및 이탈리아에 설립된 납세 의무자에 대해 국세청은 ①부가세 출납장부, ②분기별 부가세 신고 초안을 작성한다. 해당 사항은 납세자 세금 계정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는 납세자의 연간 부가세 신고 초안(modello IVA 2021)을 제공하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 계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 Intrastat 제도

이탈리아에서는 유럽 역내 판매 목록과 통계 보고(Intrastat)를 결합하여,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Intrastat 신고서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에서 다른 EU 회원국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판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EU 회원국에서 이탈리아로 상품·서비스의 수·출입시에는 역내 무역 정보와 통계 분석만을 위한 Instrat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Intrastat 신고서는 최근 4분기 동안의 EU 역내 거래 매출에 대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한다.

EU 역내 상품·서비스 제공에 관한 판매 보고서는 최근 4개 분기 동안 적어도 1분기의 거래가 50,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월별로 제출하며, Instarat 보고서의 통계 항목은 EU 역내 판매가 최근 4개 분기 중 1분기 거래가 1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기입한다.

EU 역내 상품·서비스 구입에 관한 월차 보고서는 세무목적이 아닌 통계목적으로, 최근 4개 분기 중 적어도 1분기의 상품이 20만 유로 이상, 서비스가 1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Intrastat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통계 위반을 이유로 500~5,000유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Intrastat 보고서 양식은 www.adm.gov.it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다.



6

부가세 회수(환급/상계공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사업활동 중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대해 과세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1 부가세 환급기한

2017년 개정 이후 구입 부가세 회수기한이 단축되었다. 이전 규정으로는 가장 늦는 경우 구입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부가세 과세대상 거래가 발생한) 해의 차차년도 부가세 신고에 따라 구입 부가세 회수가 가능했다. 현재에는 2017.1.1. 이후 발행된 구입 인보이스 및 세관청구서에 대한 구입 부가세는 구입 부가세 납세의무가 연차 부가세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발생한 경우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특히 부가세 회수권이 행사 가능한 최종 기한의 특정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 역내 구입 인보이스는 해당 개정에 따른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유럽연합법원 판례법, 특히 판례 C-152/04에 명시된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C-152/04에서는 '공제 권리는 그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상품 납품 또는 노무·서비스를 제공한 과세사업자가 문제가 된 회원국이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인보이스의 기능을 한다고 간주되는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해에 부가세 회수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과세 거래가 발생하고,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 고객이 유효한 부가세 인보이스를 수령한다.

다만, 부가세 회수 권리는 늦어도 상기 2개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된 해의 연

차 부가세 보고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관해서' 행사 가능하다.

2018.10월에 구입 부가세 회수 기간이 소폭 변경되어 부가세 납세자는 과세 거래가 발생한 달의 부가세 납부시 부가세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입 인보이스를 수령해 구입 원장에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회수가 가능하다. 해당 규칙은 구입 인보이스를 받은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과세가 발생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날짜의 구입 인보이스/세관 청구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2019년 날짜의 구입 인보이스/세관 청구서를 2020년에 수령하여 2020년에 부가세 대장에 계상하는 경우, 2020년 회계연도 월차 부가세 정산에 포함된다.
- 2019년 날짜의 구입 인보이스/세관 청구서를 2019년에 수령하여 2020.1월~4월 사이에 부가세 대장에 계상하는 경우, 2020년 첫 4개월의 월차 부가세 정산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2020.4월말이 기한인 2019년 회계연도 부가세 신고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2019년 날짜의 구입 인보이스/세관 청구서를 2019년에 수령하여 2020.4월 이후에 부가세 대장에 계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2019년 회계연도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5.12.31. 이내에 부가 부가세 반환을 청구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2 전자 인보이스

2019.1.1. 이후, 전자 인보이스 발행이 의무화되었다. SDI를 통해 송신된 XML 형식의 전자 인보이스로 이행은 부가세 회수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바, 실무상 문제가 되기도 한다.

- 2018.12월에 발행된 인보이스를 2019.1.15.까지 고객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종이매체로 발행해도 인정되는 바, 반드시 SDI를 통해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18.12월에 발행된 인보이스를 2019.1.15. 이후 고객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SDI를 통한 전자형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 2018.12월에 발생한 판매 또는 공급과 관련한 인보이스를 2019.1월에 발행한 경우에는 SDI를 통한 전자형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2019.1.1. 이후에 종이매체로 발행된 인보이스는 부가세 취급상 무효화되어, 해당 발행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관련 구입 부가세 회수를 위해서 고객은 공급자에게 SDI를 통한 적절한 전자 인보이스 발행을 의뢰해야 한다. 공급자가 SDI를 통한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SDI를 통한 자기청구 인보이스 (autofattura)를 발행해야 한다.

2018년에 종이매체로 발행된 인보이스에 관한 2019년부의 대변표 및 차변표는 SDI를 통한 전자 형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3 부가세 오류

과세대상 이외의 면세 또는 제로세율 거래에 대해 부과세가 잘못 청구된 경우 또는 오류로 인해 높은 세율로 청구된 경우에도 부가세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공급자가 잘못 청구한 부과세는 국고로 반환하고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럴 경우 고객에게는 250~10,000유로의 고정 벌금만 과세된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최근, 2018년 예산법으로 도입된 부가세 회수에 관한 해당 규칙은, 처벌은 면제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전 제도에서는 고객은 잘못 청구된 부가세를 회수할 권리가 없었으며 부가세를 과도하게 회수한 부정확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4 회수 불능 또는 일부 회수 가능한 부가세

회수 불능 또는 일부 회수만 가능한 부가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가세 면세 거래** : 부가세가 과세대상 거래와 면세거래 모두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세는 분할된다.

▶ **비사업활동(사적활동 포함)** : 부가세가 사업활동과 비사업활동 모두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세는 분할된다.

▶ **차량(상용차 제외)** :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부가세 회수율은 40%로 제한된다. 해당 제한은 예를 들어, 차량구입비(조립계약 등을 포함), EU 역내 구입, 수입, 리스, 개조, 수리 또는 유지 등 차량에 관한 모든 지출이 대상이 된다. 해당 차량이 아래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세사업자의 재고품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 택시로 사용
- 자동차 교습소의 지도용으로 사용
- 리스 또는 대여
- 영업 담당자가 사용

▶ **연료 및 석유 구입 등 운송에 관한 기타 서비스** : 구입 부가세는 추적 가능한 지불 방법, 즉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한 바, 은행·우체국 수표, 어음, 계좌 이체, 지불전표,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선불 카드, 은행 계좌 이체가 가능한 기타 수단 등 전자적 지불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연료부분 종사 기업이 통상 사용하는 당사자 간 비현금 지불 수단으로는 상계 결제 계약, 카드(충전 방식 또는 비충전 방식), 바우처 등도 허용된다.

▶ **접대** : 접대비에 대한 부가세는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

▶ **투어 오퍼레이터 마진 제도** : 해당 제도에 따라 제공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회수할 수 없다.



- ▶ **중고품 마진 제도에 따라 판매된 상품** : 부가세가 상품의 매출이익에 대해 과세되나, 해당 상품의 구입에 대한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는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5 이탈리아 국외에서 설립된 비등록 사업자의 부가세 회수

이들 사업자는 50유로 이상의 이탈리아 부가세를 회수할 수 있다. EU 절차에 근거해 기타 EU 회원국에서 설립된 부가세 환급 청구서 사업자는 거주하는 EU 회원국 당국에 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EU 회원국 사업자는 EU제13호 지침에 근거해 부가세를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환급은 해당 비EU 회원국이 동등한 매출세의 환급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만이 청구가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청구에는 엄격한 조건과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청구기간은 역년을 따르며 환급청구는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회수 가능한 부가세 금액이 400유로 이상인 경우, 청구기간은 역년(4분기)보다 짧은 경우가 있다. EU 제13호 지침에 따른 청구 양식은 www.agenziaentrte.gov.it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다.

7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거래

1 수출

상품

이탈리아 판매자가 기타 EU 회원국에서 부가세 등록을 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을 (판매자 또는 고객이) 이탈리아에서 해당 회원국으로 발송하는 경우, 판매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고 EU 역내 판매에 따른 제로세율을 적용한다. 판매자는 기타 EU 회원국 고객의 부가세 번호를 입수하여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이탈리아에서 상품을 발송한 증빙을 입수해야 한다. 상품을 기타 EU 회원국에서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탈리아 부가세를 청구해야 한다.

판매자가 EU 역외 고객(기업 또는 개인)에게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역내 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모든 경우에 제로세율을 뒷받침하는 발송(출하) 증빙을 확실하게 보관해야 한다.

유럽연합 관세규정(UCC, Union Customs Code)의 이행에 따라 2018.5.16. '수출업자'의 정의가 변경되었다¹²⁾. 수출업자란 ①물품이 개인의 사적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에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 ②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자로서 물품을 EU 관세영역에 수출할 것을 결정하였거나 그 결정권을 가진 자, ③물품을 EU 관세영역 외로 운송하는 계약 당사자인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12) 2018.5.16.부로 유럽위원회 위임규칙(EU) No.2018/1063은 유럽위원회위임규칙(EU) No.2015/2446의 제1조 (19)에 규정된 수출업자의 정의를 변경한다.



서비스

이탈리아에 설립된 공급자가 기타 EU 회원국 또는 EU 역외에 설립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탈리아 부가세 대상 외 거래가 된다. 공급자가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타 EU 회원국 고객은 부가세 번호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음의 서비스는 다른 공급지 규칙(different place of supply rules)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에 관한 서비스
- 여객 운송
- 음식점 및 케이터링 서비스
- 운송수단의 단기적 리스
-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또는 유사 활동에 참여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상시 수출사업자 (Habitual Exporter)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기업이 총매출의 10% 이상을 점하는 제로세율 공급(수출, EU 역내 공급, 국제 서비스 등)을 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시 수출사업자로 간주된다.

상시 수출사업자는 전년 또는 최근 12개월 내에 실시된 제로세율 공급총액을 상한으로, 부가세가 없는 서비스 및 상품(다만, 부동산 및 부가세 회수가 불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는 제외)을 구입할 권리가 있다. 문서화 의무와 절차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부가세 면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수출사업자는 의사 표시서(dichiarazione di intento)를 이탈리아 국세청에 송부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송신수령서를 취득한 후에는 의사 표시서와 송신수령서 모두를 공급자에 제공해야 한다. 의사 표시서 양식 및 설명은 www.agenziaentrate.gov.it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다.

2 수입

상품이 EU 역외에서 이탈리아로 수입된 경우, 수입 부가세 및 관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바, 상품은 관련 세금에 대한 지불이나 보증이 시행된 후에 관세당국으로부터 인도받는다.

1 인보이스 상세정보

인보이스에는 다음의 상세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발행일 : 거래 시점으로부터 12일 이내에 송장을 발행
- '해당 인보이스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일련번호 : △신규 인보이스가 이전에 발행된 인보이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보이스, 공급자 부가세 번호, 고객 부가세 번호(과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세무번호(개인인 경우)를 명확히 기재, △기타 EU 회원국에 설립된 과세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해당 회원국에서 발행된 부가세 ID 번호도 기재
- 공급자 회사명(또는 성명) 및 거소 또는 법정 주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회사명(또는 성명), 거소 또는 법정 주소, △비거주자 기업의 고정시설 소재지도 기재
- 공급자 부가세 번호
- 구입자 회사명(또는 성명), 거소 또는 법정 주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회사명(또는 성명), 거소 또는 법정 주소, △비거주자 기업의 고정시설 소재지
- 고객 부가세 번호(과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세무번호(개인의 경우), (기타 EU 회원국에 설립된 과세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서 발행된 부가세 ID 번호
-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및 성질
- 상품·서비스 제공의 거래기준일 등이 인보이스 발행일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불된 날짜 : 2019.7.1. 이후 발행된 인보이스에는 해당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기재가 필요
- 과세액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단가(부가세 제외)
- 할인 판매된 경우, 상품의 시장 가격 (해당 가치가 과세액 산출에 사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

- 세율, 세액, 유로 센트 미만을 절상한 과세표준액, 자기청구 인보이스에 관한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을 기재하는 대신 다음의 문구를 기재
 - “inversione contabile (매입자 납부제도) : 고객이 다른 EU 회원국에 부가세 등록된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operazione non soggetta” : EU 역외 공급지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autofatturazione (자기청구 인보이스) : 부가세 지불 의무를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가 지게 되는 경우에 구매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2 간이 인보이스

인보이스 금액이 100유로 이상인 경우(추후 부령에 따라 기준치가 400유로까지 상향 조정 가능) 또는 대변표가 발행된 경우에 간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간이 인보이스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EU 역내 공급
- 제공지가 이탈리아 국외에 있고 기타 EU 회원국에서 매입자 납부제도 대상이 되는 공급

3 전자 인보이스

2019.1.1.부로 이탈리아에 설립된 모든 B2B, B2C 간 상품과 서비스에 전자 인보이스가 의무화되었다. B2C의 경우 고객이 인보이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전자 인보이스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원래는 공공기관에 전자 인보이스를 전송하던 플랫폼인 SDI를 통해서 발행해야 하며, SDI를 통해 이탈리아 국세청은 전자 인보이스의 세부사항을 자동 수집한다.



- 현재 유일하게 'XML' 형식만 인정되고 있는데 향후 유럽 표준에 따라 다른 형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전자 인보이스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과세 대상 상품의 경우, 해당 부가세의 90~18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전자 인보이스 관련 의무 규정과 관련한 기술 사양 및 세부사항은 이탈리아 국세청 사이트(www.agenziaentrate.gov.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인보이스 발행은 공공 기관 및 행정 기관 대상 거래에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4 원거리 판매

2019.7월, 이탈리아 국세청은 원거리 판매에 대한 보고 의무를 공표했다. 모든 납세대상자는 이탈리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마켓, 플랫폼, 포털 등 유사 매개의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EU 역내 또는 역외로 상품의 원거리 거래를 촉진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정의에 따라 '촉진(facilitate)'이란,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연락을 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상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촉진'에는 전자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상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일반 조건의 설정
-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 상품의 주문 또는 배송

마켓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만 활용되면 촉진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상품 공급을 위한 결제 처리
- 상품의 나열 또는 광고
- 더 이상 공급에 개입하지 않고, 상품이 판매되는 다른 전자 인터페이스로

고객을 유도하거나 이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고는 분기별로 시행되며 매매가 이루어지는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바, 2020년 4분기 신고는 2021.1.31.이 기한이 된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부가세 지침의 신규 조항인 제14a조가 이탈리아에 도입될 예정인 바, 현행 신고의무도 이에 따라 대체될 예정이다.

다음의 정보는 마켓이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 각 공급자의 성명(또는 개인정보), 거소 또는 법정 주소, 이메일 주소, 마켓에서 사용되는 식별번호 및 세무번호
- 해당 분기에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상품의 총수량
- 이탈리아 내의 총매출 또는 상품당 평균 금액 (유로로 표기)

보고서는, 국세청 자격 증명을 취득한 이후 마켓이 직접 Entratel이나 Fisconline 등의 채널을 통해 전송하거나 지정된 중개인이 전송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이탈리아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비거주 과세대상자는 직접 부가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부가세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탈리아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을 촉진한 과세대상자가 기한 내에 상기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거나 부정확 또는 불완전 정보를 전송한 경우,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래 명시된 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 공급자가 부가세를 기납부
- 불완전 정보의 경우, 해당 사실을 몰랐거나 모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분할납부 제도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은 공급자나 공공기관 등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하는 경우(과세대상이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분할납부 제도로 관리된다. 공적 기관은 인보이스 지불을 과세대상액과 부가세로 분할하여 과세 대상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부가세를 재무부의 부가세 계좌에 납부한다.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특정 이탈리아 공공기관 및 그 자회사,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다만 제공처가 이탈리아에 부가세 등록을 한 경우)
- 공적 경제단체, 특별 기업, 재단 등 공공기관의 추가 카테고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공급자는 고객이 분할납부 제도 적용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재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리스트를 <https://indicepa.gov.it/documentale/index.php>에서 확인해야 한다.

6 자기청구 인보이스

자기청구 인보이스가 인정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인보이스 발행자가 저세율지역 거주자인 경우, 공급자(최소 5년간 사업 경영, 과거 5년간 국세청 부가세 사정 미대상)는 사전에 해당 결정을 국세청에 통지해야 한다.

9

소매업자의 일일 영수증 전자보고 (SCONTRINI ELETTRONICI)

2019.7.1.부터 연매출 4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매업자에 한해 일일 영수증 전자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며, 2020.1.1.부터는 모든 소매업자로 확대 적용되었다.

소매업자는 일일 영수증 전자기록 및 송신 시 세무당국이 승인한 “통신 기록 (registratore telematico)”이라는 특별 전자기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소매업자는 SDI를 통한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10

사업 양도

사업을 계속 사업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등록세 대상인 바, 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수자는 매도자가 실시한 사업과 동종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11 부가세 선택

이탈리아 부가세법은 일부 예외는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세가 인정된다. 다만, 산업 부동산의 경우, 거래에 대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를 선택할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산업 부동산의 리스 계약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과세 방법은 리스 계약상에서 선택해야 한다.

12 본·지점간 거래

상품의 판매에 관해 현지 지점과 해외 본사는 부가세상 독립된 사업체로 취급되는 바, 어떠한 거래도 부가세 대상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경우, FCE 은행 사례(C-120/04)와 관련한 유럽연합 법원 판결에 따라, 이탈리아 국세청은 본사와 지점 간의 거래는 지점이 의사 결정이 없는 한 부가세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예산법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인해, 본사 또는 지사가 이탈리아 또는 기타 관할지역 부가세 그룹에 속하는 경우, 본사의 지사에 대한 요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9.4 참조)

13 부실 채권

원칙적으로 고객의 도산 또는 지불불능에 따라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와 담보권 실행절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세 감경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도산 등 유사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매출 부가세는 해당 절차 종료 시점까지 회수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 담보권 실행 절차는 실행 불능으로 간주된다.

- 명령이 있었음에도 압류 가능 자산 또는 채권이 없어 제3자가 보유한 채무자의 자산 압류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 명령이 있었음에도 동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어 동산 압류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 경매로 동산 매각을 3차례 시도했음에도 담보권 실행 절차가 비용 과다 문제로 종료된 경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는 ‘회원국은 도산처리 절차가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실행 불가능을 전제로 전액 또는 일부 미납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부가세 지침과 모순되는 이탈리아 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국세청은 해당 판결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14 조세회피방지

법의 남용에 관한 일반 규정이 도입되어 부가세에도 적용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5.3.1 참조)

해당 일반 규정과 함께 회전목마형 사기거래로도 알려진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Missing trader Intra Community fraud)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는 판매자가 미지급한 부가세에 대해 구매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정방지 규정은 일부 특정상품(자동차, 오토바이, 휴대전화, 컴퓨터, 신·중고 타이어, 타이어 플랩, 가축 및 생고기)에만 적용되며, 상품가격이 시장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기타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치는 특정한 부분적 면세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이 된다.

15 처벌

부가세 신고서 관련 위반

〈연차부가세 신고서 미제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120~240% 범위 내에서 벌금이 징수된다. 납세의무자의 어떠한 거래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250~2,000유로의 벌금이 징수된다. 부가세 회피 목적으로 연차 부가세 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미신고 부가세가 5만 유로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징역 2년~5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확한 부가세 신고서 제출〉

무신고 부가세 금액 또는 과도한 부가세 공제 신고시, 90~180%의 벌금이 징수된다. 부가세 회피 목적으로 부정확한 연차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낮게 신고된 부가세 액수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징역 2년~5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송장 또는 기타 문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속임수를 사용하여 연차 부가세 신고서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기록 누락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기록 누락시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의 90~180%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가세 면세 거래 또는 과세대상 외 거래기록 누락시 미기재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정 범위를 벗어난 거래와 관련한 기록 누락에도 동일한 벌금이 적용된다. 벌금액은 1회 위반당 500유로 이상이다.



법인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세 면세 거래 또는 과세대상 외 거래기록 누락 시 250~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누락시 500~2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벌금은 과세기준의 5~10% 범위에서 부과되며 1,000유로를 하회하는 경우는 없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보이스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미발행 또는 부정확한 인보이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부가세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벌금을 책임지게 된다. 당사자 중 누군가가 실제 부가세를 지불한 경우, 국내 매입자 납부제도 위반에 대한 벌금은 감액된다. 이 경우, 벌금은 250~10,000 유로이다.

수출에 관한 위반

납세자가 수출 부가세 징수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벌금액은 징수되어야 하는 부가세 금액에 비례한다.

기타 위반

공식적인 준거가 없는 부가세 신고서 제출, 특정 부가세 정보의 일부 제출 누락, 부가세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등 위반을 저지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정 벌금이 설정되어 있다. 벌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미납/과소납부

벌금액은 미납금액의 30%이며, 미납세액에 대해 4%의 이자가 가산된다. 다음해 선납부 기한까지 연차 보고서에 신고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부가세 금액이 25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납세의무자는 6개월~2년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처벌은 납부세액에 대해 가공 또는 부당한 부가세 공제를 통해 50,000유로를 상계한 납세 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

통칙

부가세법에 따라 벌금 범위가 규정된 경우,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사정 시 결정한다. 국세청은 벌금액 결정 시 납세자의 행위 및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위반 내용의 중대성을 검토한다. 납세 의무자가 과거 3년간 동일한 위반을 한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된 경우, 벌금은 50% 인상될 수 있다.

사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저지른 각각의 위반에 대한 벌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이 1개 사업연도 또는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관대하게 벌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다. 벌금 이외에 영업 라이선스 정지 등 처벌도 있다.

자발적 수정

납세 의무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자발적 수정 제도(ravvedimento operoso)를 이용해 상기 처벌(예 : 통상적인 세무조정에 근거해 지불해야 하는 벌금 등)을 경감할 수 있다.

PART **X**

관세·간접세 및 수입 부가세

1. 유럽 연합법 및 관세 제도 : 유럽연합 관세규정(UCC)
2. 통관 절차
3. 경제적 영향을 수반하는 정지조치 및 관세 절차
(유럽연합 관세규정에 의거한 특별 절차)
4. 인정사업자(AEO, operatore economico autorizzato)
5. 구속적 관세분류정보(BTI) 및 구속적 원산지 정보(BOI)
6. 관세 결정 시스템
7. 수출자 등록 시스템 (REX system)
8. Dual Use
9. 물품세 (le accise)
10. 수입 부가세
11. 이탈리아 세관 당국과의 관계
12. Brexit
13. 수출업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
14. 플라스틱세
15. 설탕소비세



1

유럽 연합법 및 관세 제도 : 유럽연합 관세 규정(UCC)

관세법은 통일된 국제조세법의 가장 좋은 예이다. 국제관세법과 동일하게 이탈리아 관세법에도 3가지 기본개념이 있다.

- 물품의 분류 : 각각의 물품의 이동에 대한 관세 규칙을 선택·적용하는 것과 함께 수입세 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 물품의 원산지 : 관세 절차를 위해 특혜 원산지 또는 비특혜 원산지(원산국 표시) 중 하나로 구별한다.
- 거래 가격 : 유럽연합 관세규정(UCC)에 의해, 물품 관세평가액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거래 가격이며, 이는 유럽연합 관세 영역에 수출 목적으로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 지불된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필요시 검증)이다.

관세법의 현행 구조는 국내규칙 및 유럽연합 규칙이 혼재된 복잡한 구조인 바, 유럽 통합 프로세스가 발전하는 것과 함께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유럽연합 관세규정(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U) 952/2013)이 2013.10.9. 채택되어, 유럽공동체 관세규정(CCC, 이사회 규칙(EEC) 2913/92)은 폐지되었다. 유럽연합 관세규정은 2016. 5.1. 발효되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관세규정 '위임규칙' (위원회 위임규칙(EU)2446/2015 : 유럽연합 관세규정 주요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보충
- 유럽연합 관세규정 '시행규칙'(위원회 위임규칙(EU)2447/2015 : 유럽연합 관세규정 시행에 관해 통일된 절차규칙을 규정
- 유럽연합 관세규정 '이행에 관한 위임규칙' (위원회 위임규칙(EU)341/2016 : 유럽연합 관세규정 전자 시스템이 운용될 때까지 관세 정보 교환과 보관을 위한 대체 방법에 대한 규정
- 유럽연합 관세규정 '작업 프로그램' : IT 시스템화 계획을 정하는 위원회 시행

결정

유럽연합 관세규정은 통관절차 현대화의 일부로, EU 역내 전체에 대한 관세 규칙 및 절차에 관해 새롭게 조직된 규정이다. 유럽연합 관세규정과 그 위임규칙·시행규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및 통관 절차의 효율화
- 기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표준화 제공
- 관련 절차를 EU 역내 전체 세관원에 명확하게 제공
- 통관 규칙 및 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적 통관 거래 촉진
- 통관 절차의 페이퍼리스, 완전 전자화 이행
- 규칙 등에 준거한, 신뢰할 수 있는 인정사업자(AEO)에 의한 통관절차 신속화 (아래 참조)

유럽연합 관세규정 시행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법은 각기 다른 세관 당국 간 또는 세관 당국과 사업자 간에 페이퍼리스 정보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모든 데이터 교환이 전자 데이터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해당 개정은 특히 수출 절차 온라인 신청(AES)¹³⁾ 등 관세법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 전자 데이터 교환이 기업과 세관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관세규정은 세관 당국이 사업자와 정기적인 대화를 하고 관세법, 일반 행정제정 및 신청서 등에 관한 정보를 언제나 무료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 촉진을 규정¹⁴⁾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완전한 법적 투명성과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관세규정을 통해 관세 규정이 현대화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관세규정은 '회원국은 관세 당국의 정보교환을 위한 전자 시스템 개발, 추진, 사용에 관해 EU집행위원회와 협력을 해야 하며, 유럽연합 관세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해당 시스템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특정 회원국에서 개설된 수출을 다른 회원국에서 취합할 수 있게 한다.

14) UCC 제14조 제2항



2

통관 절차

유럽연합법은 통관절차가 필요한 물품은 모두 세관 신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는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의사를 표명하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각의 물품에 관해 신고자는 분류코드, 원산지, 가격, 수량, 발송인 및 수취인, 통관 절차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과세대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본정보는 거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로 보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관세규정에서는 폐지된 유럽공동체 관세규정에 명시되었던 정지조치 (suspensive arrangements)가 다음의 특별 절차로 대체되고 있다.

- 수송 : 역외 수송 및 역내 수송
- 보관 : 보세창고 및 프리존 (보세지역)
- 특정용도 : 일시 수용 및 최종 용도
- 가공 : 재수입 가공 및 재수출 가공

수송

역외수송 : 역외수송 절차에 따라 ①수입세가 부과되거나, ②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과금이 결정되기도 하고, ③무역정책 규정의 어떤 대상도 되지 않고 비 EU물품을 EU 관세영역 내의 특정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EU 관세영역 내 수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역내수송 : 역내수송 절차에 따라 통관 상황을 변경하지 않고 EU 물품을 EU 관세 영역 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및 관세 영역 외 국가나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보관

비EU 물품은 세관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①수입세가 부과되거나, ②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부과금이 결정되기도 하고, ③무역정책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EU 관세영역 내 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해당 물품



이 EU 관세영역 내 수출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특정 분야를 규정하는 EU법 규제에 따르거나 수입세의 환급 또는 면제를 인정하는 결정 등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보세창고 또는 프리존에서 EU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특정용도

일시 수용(Temporary admission) : 일시 수용 절차에 따라 재수출을 목적으로 한 비EU 물품은 EU 관세영역 내에서 특정용도 취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세는 전액 면세 또는 감세가 되고 그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대한 수출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①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되거나 ②무역정책 규정의 어떤 대상도 되지 않는다.

최종 용도(End-use) : 최종 용도 절차에 따라 상품은 면세 또는 특정 용도에 따라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받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가공

재수출 가공 : 재수출 가공 절차에 따라, ①수입세가 부과되거나 ②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될 수 있고 ③때로는 무역정책 규정의 어떠한 대상도 되지 않아서 비EU물품을 복수의 가공작업을 통해 EU 관세영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EU 관세영역 내 수출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재수입 가공 : 재수입 가공 절차에 따라 가공을 목적으로 EU 물품을 EU 관세영역 외로 일시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은 관련 허가를 받은 자 또는 EU 관세영역 내에 설립된 그 외 사업자의 신청을 근거로, 수입세 전액면제 또는 감세 적용을 받고 자유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EU 관세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인정사업자란 EU 관세영역 내에 설립되어 EU 회원국의 세관규정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를 보유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인정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가 유럽연합 관세규정 제38조 및 제39조 및 위임규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한다.

EU 역내에 설립된 모든 사업자는 인정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란,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창고관리업자, 프리존 또는 보세창고 내의 사업을 인가받은 사업자, 운송업자, 수송업자, 항공화물업자, 터미널 오퍼레이터, 해운회사, 통관업자 등으로 관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를 뜻한다.

인정사업자 인증서 취득으로 간이통관 절차, 보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정사업자 지위 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접적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
- 통관 절차의 간소화가 용이
- 현물 및 서류 검사에 대한 우대조치
- 검사대상물 우선 인도
- 심사 실시 장소 선택 가능 (사업자는 중앙 일괄통관¹⁵⁾을 선택할 수 있어, 회계 처리, 물류 및 통관기능을 일원화해 보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관리 비용 및 거래 비용 절감)
- 신고서의 요약 제출에 따른 데이터 요건 완화

15) UCC 제179조에 규정됨.



인증사업자 지위 획득으로 누릴 수 있는 간접적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세관당국과의 양호한 관계
- 원활한 운송
- 공급 당사자 간 보안과 통신 개선
- 고객 충성도 향상
- 종업원의 관세 정보 주지에 따른 문제 예방
- 안전성 관련 문제 감소
- 양호한 회계
- 도난 및 분실 감소

5

구속적 관세분류정보(BTI) 및 구속적 원산지 정보(BOI)

BTI 및 BOI는 유럽의 통관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사항으로, 유럽 사업자가 관세 분류 및 원산지 확실성을 상호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다. BTI는 사업자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상품의 정확한 관세 분류를 입수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BOI는 물품의 실제 원산지에 관한 유럽 관세 당국의 결정이다. 해당 결정은 물품 및 원산지를 확정하는 조건이 BOI의 기술과 일치하는 한, 해당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관해 모든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BTI 및 BOI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세관 당국 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6

관세 결정 시스템

2017년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조화를 추구하는 관세 결정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관세 결정 체계(CDS, Customs Decision System)을 도입했다.

EU 무역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특정 신청서에 대해서만 활용된다. 사업 청구나 결정정보(예 : 정정, 취소, 결정 정지 또는 무효)도 보관한다.

현재 복수 회원국을 포함하는 관세 결정에 관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결정이 특정 회원국 1개국에만 영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 사용 또는 국내 시스템 사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7

수출자 등록 시스템 (REX SYSTEM)

REX 시스템은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EU가 개발도 상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GSP)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EU가 서명한 제3국과의 특정 특혜 무역협정 등에도 적용되었으나, 한-EU FTA의 경우 2020년말 기준, REX 정보교환체계 구축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REX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원산지증명의 완전한 전자화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은 등록수출사업자¹⁶⁾만이 발행할 수 있는 전자신고서를 대체한다. 이런 변화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게 되었다.

- GSP 국가를 거점으로 하는 수출업자는 GSP 국가와 EU 간 수송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발행하기 위해 REX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유럽 수출사업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근거해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기 위해 REX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 한국 사업자가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
- 유럽 수출사업자는 특정 상황에서는 REX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16) REX 요건은 총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로 발생

Dual Use 품목이란 일반적으로는 민간용으로 이용되지만 군사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완성품 또는 반제품, 설비 및 기계 부품을 뜻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도 포함된다. Dual Use 품목에 특별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EU는 민간산업의 기술력을 통한 첨단술제품의 개발, 제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Dual Use 품목의 수출, 수송 및 중개를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 관련 민간산업으로는 에너지, 항공우주, 방위 및 안전보장, 레이저 및 네비게이션, 전자 통신, 생명과학, 화학 및 제약산업, 재료가공설비, 전자기제품, 반도체 및 컴퓨터 산업, 의료 및 자동차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Dual Use 품목 또는 기술의 수출은 각국 국내법과 Dual Use 품목의 수출, 이동, 중개 또는 수송 관리에 관해 제정된 EC 규정 428/09 등 국제적 지침에 따라 규정된 각종 표준, 기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9

물품세 (LE ACCISE)

물품세는 특정 제품의 소비에 과세되는 간접세이다. 이탈리아의 물품세징수 관리당국은 이탈리아 세관당국(Agenzia delle Dogane)이다.

- 에너지 제품
- 알콜 및 알콜 음료
- 담배 제품

소비재는 제조 또는 EU로 수입될 때 물품세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물품세는 물품이 소비를 위해 판매될 때 부과되며, 이런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소비용으로 판매된다고 간주된다.

- 재고부족이 법정 기준을 넘는 경우
- 관세 일시 보류 조치가 해제된 경우 (불법적일지라도)
- 관세 일시 보류 조치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불법적일지라도)

소비재의 통관에 관해서는 특정 서류 제출을 포함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물품세 관련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예산법은 아래와 같이 관련 개정을 시행하였다.

- 관세 일시 보류 중인 탄화수소 품목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 요건 도입
- 물품세 위반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만 관련 품목 취급을 위한 신규 면허를 발급
- 에너지 제품을 보관하는 상업용 창고 관리인이 세관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
- 흡연 부속품에 대한 신규 소비세 도입

10 수입 부가세

유럽연합은 모든 수입품에 부가세를 과세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물품이 신고자에 의해 이탈리아로 수입될 때 부가세를 과세하며 물품이 세관 지역 경계선을 통과할 때 물품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다음의 거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이탈리아 부가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산출된다.

- 다른 EU 회원국으로 운송이 필요한 관세 일시 보류 상태인 물품의 이동
- 재수출 가공(일시적 수입) : 관세법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물품이 판매 또는 자가소비분으로 이탈리아에 수입된 경우에 이탈리아에서 부가세 과세
- 가공 없이 재수출하는 품목의 일시 유입 :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이들 물품은 수입세의 전액 면제 우대 적용 예외
- 아토스 산(그리스), 카나리아 군도(스페인) 또는 프랑스 해외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자가소비분 통관 절차
- 일시적 수출을 위한 재수입(재수입 가공)
- 이전에 수출한 품목의 재수입



11 이탈리아 세관 당국과의 관계

이탈리아 세관 당국은 접근방식은 최근 들어 크게 변경했다. 현재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신규 유럽연합법을 반영하여 통관절차를 현대화했다.

역내 시장 완성, 국제 무역 및 투자 장벽 철폐, EU 역외 치안 및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세관 당국의 역할이 변화되었고, 세관 당국은 공급 체인 내에서 국제 거래 감시 및 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국 및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라 개별 기업은 세관 당국의 지원 및 글로벌 관세 부담(절차 및 의무)의 대폭 간소화를 활용하여 관세 관련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

12 BREXIT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EU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침을 주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020.12.31. 이후 영국이 EU 역외국이 되는 바, 영국과 EU 회원국간 모든 상업 거래에는 통관이 필요하게 되며 신규 세관 조항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공급망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업자에 대한 EU의 새로운 정의는 "EU 관세 영역 내에 설립되어 EU 관세 영역 외부로 물품의 반출 결정을 내리는 자" 또는 "EU 관세 영역 내에 설립되어 EU 관세 영역 외부로 어떤 물건을 반출하기로 한 계약 당사자"이다.

이와 함께 2019.7.8. 발표된 신규 유럽연합 관세조약 지침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관세청은 2019.11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 경제 주체가 EU에 설립되어야 하는 바, EU 관세 영역 내의 수출업자는 등록 사무소, 중앙 본사 또는 상설 영업소를 보유해야 한다. 상설 영업소와 관련해 EU 내 설립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설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부가세 번호를 보유한 외국 당사자나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세금 대리인 지정으로는 달성하지 못한다.
- 경제 주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품을 수출용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잔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관세 영역 밖으로 반출할 계약 당사자인 EU 내에 설립된 수출자를 지명한다.
- 수송자, 운송자 등 수출자가 될 수 있는 EU 관세 영역 내에 설립된 자
- 수출업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관세 목적의 수출업자와 부가가치세 목적의 수출업자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는 바, 그 결과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관세신고서 2란에 표기한다.

이탈리아 관세청은 기록 수출자로 관세신고서 2란에 표기된 자가 비EU 기업의 세무 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면제 책임은 비EU 기업의 세무대리인이 지게 된다.



14 플라스틱세

2020년 예산법은 포장, 배달 상품 또는 식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 유기 고분자로 만들어진 일회용품(테트라팩 포함)에 대한 플라스틱세를 신설했다. 이탈리아법은 일회용품을 'MACSI'라 칭하고 있다. 플라스틱세는 당초 2020.7월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도입 시기가 2021.1월로 연기되었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MACSI 제품이 소비용으로 출하될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이탈리아 생산 MACSI 제품이 이탈리아 고객에게 이전될 때
- 다른 EU 회원국 생산 MACSI 제품이 △이탈리아 내 사업 활동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질 때 또는 △개별 소비자에게 이전될 때
- EU역외국 생산 MACSI 제품의 최종수입일

MACSI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1kg 당 0.45 유로가 과세되며, 과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생산 MACSI 제품 : 제조사 부담
- 다른 EU 회원국 생산 MACSI 제품 : 사업 목적 구매자 또는 개별 소비자용 MACSI 제품의 판매자(이탈리아 국내 세금 대리인을 통해 과세)
- EU역외국에서 수입된 MACSI 제품 : 수입자

2020년 예산법은 가당음료 소비와 관련한 세금을 신설하여 2020.8월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7월로 도입 시기가 연기되었다. 시판 음료 100리터당 10유로, 희석 후 음용 제품은 1kg당 0.25유로의 정률세가 적용되며, 세금은 납세 의무 발생 이후 아래 시점에 납부하게 된다.

-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 소비자 또는 소매업체로 가당 음료를 양도(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시점
- EU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구매자가 가당 음료를 수령하는 시점
- EU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가당 음료의 경우, 이탈리아로 수입 시점

과세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국내 제조사가 다른 EU 회원국 내에 소비용도로 직접 공급 또는 수출하는 가당음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국내 공급인 경우에는 제조사
- EU 역내 거래인 경우에는 구매사
- 수입인 경우에는 수입사

PART **XI**

세무분쟁 해결

1. 세무당국과 협의 가능한 공식절차

- (1) 통상적인 조세심판
- (2) 대규모 투자에 관한 조세심판
- (3) 협력 준수 프로그램 하의 신속 조세심판
- (4) 국제 조세심판
- (5) 사전확인제도(APA)

2. 조세조사

- (1) 제척기간
- (2) 세무조사 이후 행동
- (3)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체 절차



1 | 세무당국과 협의 가능한 공식절차

1 통상적인 조세심판

이탈리아에는 5종류의 조세심판이 있다.

- Interpello ordinario : 미결 안건에 대한 불명확한 조세규정의 해석
- Interpello qualificato : 세법에 따른 정의와 명확하게 합치되지 않는 미결 거래의 법적 정의
- Interpello probatorio : 납세자에 대한 특정 세제혜택이나 과세제도 적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 (CFC 안전조항 요건 적용을 증명하기 위한 사전판정 요청 등)
- Interpello antiabuso : 법령 남용 신규 사례가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판단
- Interpello disapplicato :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합병 또는 회사 분할에 관여하는 기업의 이월결손금을 제한하고 배당 대체(dividen washing)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 특정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

이들 5개 조세심판 분류는 신청시기, 청구 적격성, 조사 절차, 불승인 사유 등에 관한 동일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심판 청구는 세무신고서의 제출 기한 또는 신청을 통해 조회되는 기타 납세의무의 이행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해당 제출 기한 후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Interpello ordinario 및 Interpello qualificato에 대해서만 90일 이내 회신, 이 외의 심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경우, 회신 기간은 1회에 한 해 60일 연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시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제안한 해결법을 국세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2 대규모 투자에 관한 조세심판

이탈리아 내에 2,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 의사가 있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세심판이 있다. 해당 조세심판의 목적은 투자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및 광범위한 세무상 영향에 대한 명료성을 높이는 것이다. 심판 청구와 함께 투자가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규모, 실시 시기와 방법 및 고용 예정 종업원 수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의 남용 또는 기타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룹 재편에 따른 세무상 영향 및 특정 자산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구성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세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기한 내 서면 답변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제안한 해결법을 국세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3 협력 준수 프로그램 하의 신속 조세심판

효과적인 세무 제도 조직(즉, 조직 내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 내부와 세무 리스크 맵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를 갖춘 다국적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협력 준수 프로그램(Regime di adempimento collaborativo)을 선택할 수 있다.

- 매출(또는 소득)이 100억 유로를 상회
- 매출에 관계없이 대규모 투자에 관한 조세심판을 거친 경우
- 보고되지 않은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알리고 해결한 경우

납세자는 전자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국세청의 확인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협력 준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점 중 한 가지는 국세청이 45일(통상 조세심판의 경우 90~12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바, 신속한 사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기타 다음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 국세청과 납세자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에 따른 세무 소송 회피 가능
- 신고기한 이전까지 이탈리아 국세청과 함께 잠재적 세무 리스크에 대한 평가 가능
- 행정상 부대세가 50% 감액되며 이에 대한 징수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 납세자가 세무상 범죄로 고발당한 경우, 이탈리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가 협력 준수 프로그램을 선택한 사실을 감찰관에 통지

4 국제 조세심판

국제 심판은 국제적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기업은 국제 조세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전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기업
- 비거주자 기업이 소유한 또는 비거주자 기업을 소유하는 거주자 기업
- 이자, 배당 또는 로열티를 비거주자에 지불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거주자 기업
- 영구적 시설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비거주자 기업

국제 조세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독립 기업 간 거래 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전가격의 산출법을 사전에 정의
- 아래 사항에 관해 조세조약을 포함한 심판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명확히 제시
 - 배당, 이자, 로열티 또는 기타 소득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지급)
 - 영구적 시설에 대한 이윤 배분
- 이탈리아 세무 및 조세조약에 근거해 다국적 기업이 이탈리아에서 실시할 예정인 사업 활동이 이탈리아의 영구적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 이탈리아와 다른 EU 회원국 간 거주지 이전 시 자산 및 부채의 과세표준에 관해 기한 내 답변

밀라노 또는 로마 소재 국세청에서 신청자가 국제 조제심판을 받을 자격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모든 서면 증거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세자는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 취득을 위해 국세청과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판 절차는 신청서 제출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실무상 특히 이전가격 관련 심판의 경우 재확인이 필요한 바, 통상적으로 납세자와 국세청이 수차례의 면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기업 또는 영구적 시설의 사업 시행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 세무당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는 바, 이런 경우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취할 때까지 180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해당 절차 완료를 위해 납세자 및 국세청은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 5년간 구속력을 가지며 국세청이 합의서로 규제된 사항에 대해 세무조정을 시행할 수 없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서가 발행된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납세자는 합의 내용의 준수 상황을 국세청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반한 경우에 합의는 취소된다. 합의는 사실 또는 법률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국세청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기업의 기록을 국세청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가 효력을 상실하기 전, 납세자는 합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 또는 변경을 위해 조사 및 국세청-납세자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전가격 제도 심판에 대해서는 신청자는 독립기업 간 거래 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 예정인 기준 및 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해당 심판이 기타 사항에 관련하는 경우, 신청자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해결책 중 어떤 것을 제안할지, 특정 해결책이 법령에 준거한다고 판단



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야 한다.

5 사전확인제도(APA)

2개 이상의 국가 간 사전확인제도는 특정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5년간 구속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가격 문제에 관한 국제 "조세심판"은 일방적 사전확인제도의 형태를 띤다.

1 제척기간

통상적인 규정에 따르면, 법인소득세와 부가세는 특정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이 과세 기한이다. 한편, 2016년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관한 사정에 대해서는,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이 기한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역년인 납세자의 경우 2015년도에 대해서는 2016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0.12.31일이 기한이 되는 한편, 2016년도에 대해서는 2017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12.31.이 기한이다. 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의 사정기한은 2015년도까지는 1년, 2016년도 이후는 2년간 연장된다.

2015년도까지의 사정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관이 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상기 통상적인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찰관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정 목적의 체척기간은 2배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대해서는 2024.12.31.까지가 사정기한이 된다. 2016년도 이후 사업연도의 사정부터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관이 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하여도 2016년도의 사정 기한은 2022.12.31.로 그대로 유지된다.

등록세 등 동등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간접세(부동산 저당·등기세 등)에 관해서 세무당국은 계약서 등 증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입증된 위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내에 추징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간접세가 적용된 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증서 등록 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세무조사 이후 행동

세무조사는 통상 세무조사관이 세무조사 보고서(예비사정 통지, PVC)를 발행하



는 것으로 종료된다. 세무조사 보고서(예비사정 통지) 그 자체로 즉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 기간 만료 이전에 세무당국에서 발급하는 공식(최종) 사정 통지에 따라 추징세액 및 부대세(가산세, 연체세 등)가 부과된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보고서(예비사정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종 사정 통지를 발행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세무당국은 최종 사정 통보를 작성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납세자에게는 해당 6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 사정 통지가 발행되기 이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납세자는 다음의 절차 중 한 가지에 근거해 세무당국과 화해 또는 합의를 구하거나 최종 사정 통지 수령 이후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래의 절차는 모든 사례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가장 일반적인 절차만을 예시로 든 것이다.

공판 전의 화해

최종 사정 통지 수령 전후에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교섭을 요청해 화해에 이를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섭에 의한 공판 전 화해 절차이나, 해당 절차에는 특별한 구속력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화해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해당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벌금은 화해에 근거해 합의된 경정액의 1/3로 감액된다.

최종 사정 통지가 발행된 후에 해당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통상적으로 최종 사정 통지 발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은 90일간 연장되어 총 150일이 된다. 다만, 최종 사정 통지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 절차를 요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사정 통지가 발행된 후 동일 절차를 재요청할 수는 없으며 상기 90일 연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

납세자는 총 50,000 유로까지 증액 경정을 수반하는 모든 사정 통지에 대해, 사전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정은 강제성이 있어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없다. 조정절차가 실패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조정 중 세무당국과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은 합의된 경정액의 35%까지 감액된다.

소송

납세자가 교섭을 통해 재판 전 합의 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세무당국이 최종 사정 통지를 발행한 경우, 납세자는 지방 조세법원(Commissione Tributaria Provinciale)에 제소할 수 있다.

이탈리아 조세법원은 지방 조세법원, 지역(광역) 조세법원, 최고 조세법원 등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법원의 판결은 잠정적으로 집행되는 바,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소송은 최종 사정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교섭에 의한 공판 전의 화해 절차가 서면으로 요청된 경우 또는 최종 사정 통지 발급 전에 요청되지 않은 경우, 지방 조세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90일 간의 유예가 인정된다.

소송은 세무당국에 의한 징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사정 통지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 180일 이후에는 세무당국은 가징수를 개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 조세법원에 대해 징수 금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조정절차를 포기하고 60일 이내에 지적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최종 사정 통지를 수용하는 경우, 벌금은 청구된 금액의 1/3로 감액된다.



재판상의 화해 (제소 후 합의)

소장 제출 이후라 할지라도 납세자 또는 세무당국은 여전히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재판상 화해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 조세법원의 공판 전에 화해에 도달한 경우에는 벌금은 합의된 경정액의 40%로 감액된다. 최근 법개정에 따라 지방 조세법원의 공판 후 합의에 도달한 경우, 벌금은 50% 감액된다.

자발적 수정 (ravvedimento operoso)

조세 조정 종료로부터 최종 사정 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지적에 따른 추징세액 지급을 통해 세무조사 보고서(예비 사정 통지)에 특정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은 최저금액의 1/5로 감액된다. 세무조사 종료 이전에 해당 절차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벌금은 1/6으로 감액된다.

3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체 절차

최근 이전 가격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가 다수 실행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 그룹 내에서는 이전 가격 결정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과세 배제 수단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유럽 중재협정에 기반하는 상호협약(MAP)로, 통상적으로 조정이 유럽 내 2개 이상 관할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효한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 및 유럽 역외 지역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한 유사 절차이다.

중재협정에 근거하는 절차를 통하면 확실하게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가 있다. 당사국과 상대국의 조세당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단계 중재가 개시되어,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 결정이 도출된다. 이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당사국 조세당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의무 정도가 규정된 이중과세방지조약과는 다르다.

중재협정이 근거한 MAP와 국내 세무소송 절차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또는

대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지방 조세법원이 판결한 경우, MAP가 납세자에 대해 유리한 결과일지라도 세무당국이 MAP 결과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세 사정 이후, 이탈리아 국내에서 교섭에 따라 공판 전 화해 절차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서 다른 상호협약의 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PART **XII**

이탈리아 투자 방법

1. 거래 형태

- (1) 주식양도
- (2) 자산양도
- (3) 합병
- (4) 회사 분할

2. 이탈리아 내 상장

- (1) MTA(Mercato Telematico Azionario)
- (2) AIM 이탈리아



1 거래 형태

1 주식양도

주식양도(대상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매도자가 실현한 주식 양도차익(주식의 양도가격과 양도주식의 세무 장부가격과의 차액)은 자본참여 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 일부가 면제된다.

한편, 매수자는 주식 취득가격에 관해 대상회사의 기초가 되는 순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세무상 장부가격을 인식할 수는 없다. 요컨대 대상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세무 장부가격은 주식취득 전후에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조건에 대해 매수자는 취득한 주식 기초가액을 포함하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무형고정자산에 대해 16% 대체세를 지불함으로써 그 세무상 장부가격을 시가로 변경할 수 있다. 2017.12.31.을 포함한 사업연도부터 이 규정은 비거주자 기업의 주식취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예산법은 이탈리아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비거주 사업체가 2020.1.1 시점에 보유한 이탈리아 비상장 기업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격에 관한 평가 변경 가능 기한을 연장하였다.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2020.7.30.까지 평가된 원가에 대한 11%의 대체세를 3회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지급해야 한다.

2019.1.1. 이후 실현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6%의 대체세가 부과되는 바, 이 평가 변경 제도는 이탈리아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이탈리아에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비거주자 기업이며,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 유리하다. 매도자에 조세조약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통상 일률적으로 200유로의 등기세가 부과된다.

주식회사(S.p.A) 또는 주식합자회사(S.a.p.a)의 형태로 이탈리아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시에는 거래가격에 관해 표준세율 0.2%의 금융거래세(Tobin Tax)

가 부과된다. 증권시장 및 다국간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시행된 양도에 대해서는 세율이 0.1%로 인하된다. 유한회사(S.r.l)로 설립된 회사의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란 구입가격, 동일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날 체결한 거래 순잔액, 계약가격 또는 연결법인 소득세 규칙에 따라 결정된 공정시장가격을 의미한다.

금융거래세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 간의 주식양도 또는 유럽이사회 지침 2008/7/EC 제4조에 정의된 사업재편에 대한 주식양도 등 일정한 면제 규정이 있다.

2 자산양도

자산양도를 통해 구매자는 실제 필요한 사업만을 취득하거나 불필요한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회사가 증대한 세무상 우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한 자산양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매수자(계속 기업으로 인정)는 취득 사업연도(취득일까지) 및 그 최근 2년간 발생한 모든 납세의무 및 벌금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자의 채무는 ①취득한 사업의 가치, ②거래가 시행된 해 및 과거 2년간 위반에 대한 매도자의 조세의무, ③조세당국에 의해 이미 사정되었거나 이전에 범하였지만 그 시점에 사정 중인 위반에 대한 매도자의 조세채무 중 낮은 쪽이 한도가 된다. 연대채무 대상이 되는 조세채무의 범위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이탈리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자의 채무는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신청한 지 4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조세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수자는 해당 취득사업 관련 과세 리스크에서 면제된다. 그 거래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채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세무위반 시점에서 6개월 내에 거래가 실행된 경우는 탈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자산양도에 있어서 취득사업의 세무 장부가격은 구입가격이다. 매도자는 사업



양도가격과 양도사업의 세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사업 양도차익으로 인식한다.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율 24%의 법인세에 관해서는 매도자가 그 사업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산양도에 관해 매도자는 계상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고 매수자는 지불한 구입가격을 세무상 장부가격으로 인식한다. 영업권은 세무상 최단 18년 동안 상각된다(연율 5.56%로 상각)

사업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양도자산에 대해 다른 세율로 등록세가 과세(영업권은 3%, 매도채권은 0.5%, 부동산은 9%)된다. 등록세는 당사자간 분할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 특정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된 사업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해서는 등록세무국의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감정서를 받아 세무당국에 의해 조정된 증빙서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도의 일반적인 방법은, 매도기업이 특정 사업을 매수회사에 매각하고 매수회사의 주식을 대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거래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매수기업으로 사업 이전에 대한 과세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 이전에 회계상 인식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바, 매수기업은 수령한 자산에 관한 세무상 장부가격을 시가로 대체할 수 없다.
- 매수기업으로 이전된 사업의 세무상의 장부가격 및 경과시간은 매수기업의 주식에 인계된다.
- 그 후 주식매각은 자본참여면세의 대상이 되는 바, 양도차익은 1.2% 실효세율(양도차익은 5%에 대해 법인세 24%)로 과세된다.

매수기업의 관점에서 아래 세율의 대체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 세무상 장부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 500만 유로까지의 재조정 금액에 대해 12%
- 500만 유로부터 1,000만 유로까지의 금액에 대해 14%
- 1,0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16%

제조정된 자산은 통상 상각(감가상각) 규정의 대상이 된다. 대체세는 3년간 분할 납부한다. 대체세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다음 항목에 대해 16%의 대체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영업권
- 브랜드 또는 상표
- 기타 무형자산 (내구연한이 불확실한 것)
- 지배주식지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세 제도에는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가속상각에 의해 영업권 및 브랜드의 취득가격은 손익계정에 부과되는 상각과 관계없이 세무상 18년이 아닌 5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다. 증액된 세무상 장부가격은 거래 후 2년째 되는 사업연도부터 손급 산입된다.

사업양도는 부가세의 대상은 아니나 일률적으로 200유로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계속사업을 출자한 후에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세무당국에 의해 자산 양도로 취급되고 있다. 이 경우 주식 또는 지분 매각에 대해 일률적인 200유로가 아닌, 3~9%의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8년 예산법에 의하면, 세무서는 거래 직후에 실행된 기타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각 거래에 대해 개별 등록세를 부과해야 하며, 단계별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2019년 예산법은 2018년 예산법에서 확인된 내용은 소급 적용되는 바, 2018.1.1. 이전 실행 및 등록된 거래에도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업 결합 장려를 위해 세금 감면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 항목(영업권, 유·무형 자산)의 장부가액은 최초 500만 유로 증가분에 대해 세금 없이 합병하거나, 분할 또는 기여를 통해 제조정될 수 있다. 동 인센티브는 2019.5.1.부터 2022.12.31. 사이에 완료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3 합병

2개사 이상의 합병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손익의 실현 또는 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로 재조정하지 않고 세무상 장부가격으로 합병법인에 인계된다.
- 합병으로 발생한 차액(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은 세무상 발생하지 않은 것인바, 과세대상 제외 또는 공제불가로 취급된다.
-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납세의무를 포함)는 합병 효력발생일에 합병법인이 승계한다.

피합병법인의 이연세금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에 상계하지 않는 한, 합병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분배 시에만 과세되는 사항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 합병차익에 따른 잉여금이 분배된 경우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자본금의 증가액이 주주에 환급되는 경우

합병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과대한 합병비용은 대체세 대상으로 손금산입된다. 합병에 관련된 당사자 기업이 보유한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 대상이 된다.

- 기업활력 테스트 : 인계 대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합병결의일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과거 2개 사업연도 평균액의 40%를 상회하는 수익 및 인건비를 계상
- 순자산 테스트 : 이월결손금은 합병 직전의 법인의 법정 순자산을 상회해서는 안 되며, 합병 직전 2개년 내에 받은 출자는 인정 불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상기 제한은 연결납세 그룹에 속하는 법인간 합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활력 테스트 및 순자산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면 잉여 간주 이자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다.



합병의 세금 효과는 합병이 실시된 사업연도의 연초로 소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이월이자에도 기업활력 테스트 및 순자본 테스트가 적용된다. 합병은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합병 1건당 일률적으로 200유로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합병은 경우에 따라 조세회피방지 혐의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회사 분할

원칙적으로 회사 분할은 과세대상이 된다. 분할법인은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하는 자산 및 부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분할로 발생한 차액(분할차익 또는 분할차손)은 세무상 발생하지 않은 바, 과세대상 또는 공제불가로 취급된다. 또한, 분할법인 및 분할승계법인은 이전자산으로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회사 분할 효력발생일 이후, 특정 과세항목(과거 상계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이월 결손금 등)은 이전순자산 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에서 분할승계법인으로 이전한다. 다만, 특정 우대조치 및 의무(가속상각에 관한 규정 등)는 특정 법인에 이전된 특정 자산 또는 부채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귀속한다.

분할승계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에 포함되는 과세이연 준비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분할에 따른 순자산 증가비율에 따라 분할 이후에 법정준비금을 정립해야 한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력 테스트 및 순자산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전되는 순자산의 비율에 따라 분할승계법인으로 인계된다.

기업활력 테스트 및 순자산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면 잉여 간주이자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다. 기업 분할은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합병 1건당 일률 200유로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회사분할 후 분할승계법인 주식의 매각(독립한 거래에 통상적으로 각각 일률적으로 200유로의 등록세



과세)을 계속사업의 매각으로 간주하여 비례세율에 따른 추가적인 등록세를 과세한다.

2018년 예산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거래 직후에 실행된 기타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각 거래에 대해 개별 등록세를 부과해야 하며, 단계별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2019년 예산법은 2018년 예산법에서 확인된 내용은 소급 적용되는 바, 2018.1.1. 이전 실행 및 등록된 거래에도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분할은 경우에 따라 조세회피방지 혐의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탈리아에 등록된 기업은 이탈리아 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장 중 하나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미상장 상태인 경우에는 1차 상장, △본국 또는 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이중 상장 또는 2차 상장을 통해 이탈리아 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

금융시장에 대한 EU 지침 및 금융 상품의 공적 거래에 대한 참가는 이탈리아의 회에서 승인된 바, 이탈리아에서 적용되고 있다.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는 2018.1.3. 발효되었다.

이탈리아 주식 상장을 위해 이용가능한 주요 시장은 MTA, AIM 이탈리아 등이 있다.

1 MTA(Mercato Telematico Azionario)

MTA는 중견 또는 대기업이 성장 전략에 따른 자산조달을 시행하기 위한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의 주요 시장이다. MTA는 전문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가의 요구에 따른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시장이다. MTA 시장 중에도 STAR 부문은 유동성, 정보 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특별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시가총액 중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다.

MTA는 주로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만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부터 국내외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항상 유동성이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의 양쪽을 근거로 MTA 시장에 상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형식 요건으로는 최저 4천만 유로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유동성 비율 25%



이상이 요구(STAR 부문 기업의 경우 35%)된다. 실질 요건으로는 건전하고 명확한 전략, 경쟁 우위성, 균형잡힌 재무구조, 경영 자율성 및 투자자에 대한 가치 향상 노력 등이 포함된다.

MTA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규정을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코드(Codice di Autodiscipline)를 채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STAR 부문 기업은 특정 지배구조 요건을 따라야 한다. MTA 및 MIV(Market for Investment Vehicles)에 상장된 기업은 FTSE 이탈리아 주가지수로 대표된다. 기업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분기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MTA 상장기업은 기업의 특징에 따라 지수 구성 종목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규모 및 유동성 상위 40개사는 FTSE MIB 지수에 포함되며, STAR 부문의 기업은 MTA 지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특정 지수를 갖는다.

MTA 시장에는 시가총액 10억 유로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STAR 부문이 있으며 다음의 엄격한 요건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 높은 투명성 및 높은 공개성
- 높은 유동성 (최저 부동주 비율 35%)
- 국제적 기준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요건

2 AIM 이탈리아

AIM 이탈리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다. 2012.3.1. 중소기업 대상 증권시장의 합리화를 위해 AIM 이탈리아가 MAC (Mercato Alternativo del Capitale)을 통합하여 탄생했다. 1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영국 AIM 시장의 노하우를 활용해 이탈리아의 기업가 시스템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는 증권시장이다. 소규모 기업 또는 전문 투자자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상장 절차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상장 승인 취득을 위한 사업설명서나 추후 분기별 경영보고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AIM 이탈리아에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의 승인 등록자를 지정 고문으로 지명해야 한다. 지정 고문은 승인 절차 기간 중 AIM 이탈리아 규칙에 따라 책임 및 상장 후 주식 상장 기업으로서 지속 의무를 언급하며 기업을 지도하고 조언할 책임이 있다.

AIM 이탈리아 시장은 상장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소규모 기업이 신속한 저비용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명성 및 유동성 보장
- 국제적 인지도 : AIM 이탈리아 시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접근이 가능한 바, 영국 AIM과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의 신뢰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
- 상장 승인 절차 기간 단축 : 중소기업 구조에 맞게 간소화된 상장 승인 절차 및 상장 후 절차를 제공
- 승인 절차 및 상장 후 기업 지원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지정 고문
- 1차 시장보다 용이한 승인 요건 : 시가총액 및 부동산(최저 부동산 비율 10%)에 대해 주요 시장보다 낮은 승인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 기업 지배구조 요건 및 구체적인 경제, 재무 요건도 불필요

〈표5. MTA 및 AIM 이탈리아의 주요 상장인가요건 및 지속 요건〉

	MTA	AIM 이탈리아
상장요건		
부동주 비율	25%	10%
감사필 재무제표	3년분	1년분(있는 경우)
회계기준	국제기준	이탈리아, 국제(영미) 기준
투자자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기타 서류	사업설명서/경영정보 체계/사업계획서/주식지분 경영 관리 테스트	승인서류
시가총액	4,000만 유로 이상	형식 요건 없음



이사회(사외 이사회)	권장 (기업지배구조 코드)	형식 요건 없음
내부 감사 위원회	권장 (기업지배구조 코드)	형식 요건 없음
보수 위원회	권장 (기업지배구조 코드)	형식 요건 없음
최고 경영진 인센티브	권장 (기업지배구조 코드)	형식 요건 없음
투자자 관리	권장	필수는 아님
웹사이트	필수	필수
주요 고문	스폰서/글로벌 주간사	지정 고문
주요 지속유지 의무		
기업 지배구조	준수 또는 설명	임의
전문가	임의 (유동성 공급)	필수 (유동성 공급)
개방성	주가에 영향을 받는 정보 및 M&A (발행자에 대해 TUF 및 이탈리아 증권거래 위원회(CONSOB) 규칙)	주가에 영향을 받는 특별 사업
인수	-	주식공개 매수
관련 당사자	절차 및 보고 요건	간소 절차 및 개시의무
4분기 데이터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보고는 4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	없음
반기 데이터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연차 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제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발행

부록



한국과 이탈리아간 경제협력

1. 교역동향

2. 투자동향



1 교역 동향

〈표6. 한-이탈리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2016년 (증가율%)	2017년 (증가율%)	2018년 (증가율%)	2019년 (증가율%)	2020년 (증가율%)
수출	3,163 (-10.4)	3,758 (18.8)	4,493 (19.6)	3,773 (-16.0)	3,221 (-14.6)
수입	5,242 (-6.9)	5,696 (5.0)	6,303 (10.7)	6,449 (2.3)	6,649 (3.1)
교역량	8,405 (-10.1)	9,454 (12.48)	10,796 (14.19)	10,222 (-5.31)	9,870 (-3.4)
무역수지	-2,261	-1,938	-1,810	-2,676	-3,428

(출처: IMF, 이탈리아통계청, 이탈리아중앙은행, 주밀라노총영사관 취합)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26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14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한국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교역에서 2007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적자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양국 교역 규모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9년에도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7. 2019년~2020.10월 한국의 주요 對이탈리아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달러)

	품목명	2019년		2020.1~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706	-23.3	306	-50.9
2	합성수지	472	-17.6	269	-33
3	열연강판	226	-20.1	177	-10.2

4	냉연강판	256	6.4	171	-14.6
5	기타정밀화학제품	38	-17.3	137	346.7
6	전기자동차	23	547.1	73	359.4
7	아연도강판	90	-31.6	72	0.2
8	자동차부품	104	-9.2	69	-20.1
9	의약품	56	-19.9	65	39.6
10	축전지	35	47.3	58	140.9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은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제품 및 부품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 주요품목의 품목 변화는 크지 않으나 증감률 편차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전세계적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이 對이탈리아 주요 수출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표8. 2019년~2020.10 한국의 주요 對이탈리아 수입 상위 10개 품목〉

	품목명	2019년		2020.1~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가방	1,066	20.6	1,040	21.3
2	신발	453	13.0	395	6.5
3	의약품	277	9.0	260	17.4
4	직물제의류	300	8.1	232	-5.9
5	승용차	254	-8.1	168	-14.0
6	편직제의류	190	10.0	166	7.0
7	나프타	27	-33.1	135	393.7
8	귀금속	138	23.4	132	20.3
9	기타정밀화학제품	82	26.0	106	57.8
10	자동차부품	92	-4.5	73	-6.4

이탈리아의 일반적인 주요 수출품은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이나,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입구조가 소비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가방, 신발, 의류, 귀금속 등 패션



관련 상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처음으로 가방 수입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Ferrari, Maserati 등 슈퍼카 수입량이 늘면서 2018년까지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승용차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기업의 對이탈리아투자

〈표9. 2018년~2020년 한국기업의 對이탈리아투자〉

(단위: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도착금액
2018	38	33,386	58,519
2019	20	208,125	268,571
2020	13	90,642	20,986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對이탈리아투자는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신고건수 기준 △2018년 전체 38건 중 21건, △2019년 20건 중 10건, △2020년 12건 중 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도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이탈리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은 전차, 자동차, 타이어, 철강, 건설, 제약, 패션 등의 분야에 걸쳐 30여개에 달하며 주로 롬바르디아 등 이탈리아 북부에 소재하고 있다.

이탈리아 기업의 對한국투자

〈표10. 2018년~2020년 이탈리아 기업의 對한국투자〉

(단위: 백만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8	10	1.80	7.75
2019	12	55.12	52.91
2020	7	92.53	48.91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이탈리아 기업의 對한국투자는 주로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통을 포함한 도·소매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내 지사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에 비해 이탈리아 기업의 對한국투자는 저조한 편이었으나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도 동반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록



이탈리아 최대 경제도시 : 밀라노



1

밀라노의 경제적 위상

밀라노시(Comune di Milano)는 인구 140만, 밀라노 광역시(Città Metropolitana di Milano) 기준으로는 인구는 325만명의 이탈리아 제2의 도시이며 유럽연합 내에서는 13위에 해당하는 대도시이다. EU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의 하나인 롬바르디아(Lombardia)주의 주도이며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국제도시이다. 2019. 12.31. 기준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9%에 달한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 수도라면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경제 수도로 명실공히 이탈리아의 경제·산업·금융의 중심지이다. 밀라노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북부의 토리노, 제노바와 함께 경제 삼각지대(triangolo industriale)를 구성하며 이탈리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다. 밀라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까지 각지에서 이주민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규모와 산업기반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현재 이탈리아 증권거래소, 주요 금융기관의 본점, 다국적 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밀라노와 인근 지역에는 정밀기계, 섬유, 의약, 자동차, 항공 산업 등 산업단지가 널리 분포하여, 유럽에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다음으로 큰 제조업 산업 단지를 구성하고 있어 이탈리아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유서 깊은 도시로 많은 문화재와 문화 시설이 있는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두오모, 라 스칼라 극장 등이 특히 유명하며, 「최후의 만찬」을 포함해 다빈치가 밀라노에 거주할 당시 남긴 많은 작품들이 시내 도서관 등지에 남아있다. 최근 밀라노시에는 무덱(Mudec, Meseo della Cultura), 폰다치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 등이 개관 또는 이전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명성도 높히고 있다.

밀라노는 밀라노 컬렉션으로 대표되는 세계 패션의 중심도시로, 디자인 위크 등으로 유명한 디자인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이탈리아 내에서는 음악, 스포츠, 문학, 예술, 미디어의 중심지로서, 주세페 베르디 등 여러 재능 있는 작곡가들이 활동한 곳이기도 하며, 특히 오페라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2015년 엑스포 개최 이후 밀라노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중이다. 밀라노는 이미 패션브랜드, 패션위크, 국제가구전시회로 쌓아온 국제적인 명성은 있었으나,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파리, 런던 등 기타 유럽 주요도시에 비해 도시 자체의 세련미는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인프라 구축, 시내 정비, 도시 재생 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도심 미관이 개선되었고, 엑스포를 계기로 증가한 관광객의 유지를 위해 미술관, 박물관 정비에 힘쓰고 있다.

영국 썬크탱크인 GaWC(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Research Network)는 국제화 수준에 따라 대도시를 알파, 베타, 감마 그룹으로 분류하고 알파도시¹⁷⁾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밀라노는 2020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도시 중 유일하게 알파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밀라노시는 코르티나 담페초(Cortina d'Ampezzo)와 함께 공동개최 형식으로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참여하였고 스웨덴 스톡홀름을 제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밀라노시는 1956년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스키 휴양도시인 코르티나 담페초시와의 공동 개최 형식을 통해 93%의 기존 시설을 재활용 하여 평창 동계올림픽(14조 2천억원)의 1/10 수준인 13억 6,200만 유로의 개최비용만으로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은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밀라노의 국제적 위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국제 도시답게 밀라노와 롬바르디아 주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뉴욕과 유사한 수준인 총 124개의 외교공관(명예 영사관 포함)이 주재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1/3(3,600개)이 소재하고 있다.

17) 알파도시는 알파++, 알파+, 알파, 알파-로 구분하는데 알파++ 등급은 런던과 뉴욕 2개 도시, 알파+ 등급은 도쿄, 베이징, 상하이, 파리 등 7개 도시, 알파 등급은 밀라노,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등 16개 도시, 알파- 등급은 서울, 바르셀로나, 스톡홀름, 취리히 등 23개 도시로 구분됨.



3 전시산업과 문화행사

1800년대 후반 유럽에서는 엑스포가 유행했고 이탈리아의 경제중심지인 밀라노 역시 1881년 밀라노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전국 박람회(espisizione nazionale)를 개최했다. 이후 밀라노는 이탈리아 전시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재 밀라노의 전시산업은 시내에 위치한 피에라 밀라노시티(FieraMilanoCity)와 시외곽 지역에 새롭게 건설된 피에라 밀라노(FieraMilano) 등 2개의 전시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개 부지를 합한 면적은 753,000㎡(코엑스의 경우 130,000㎡)로 유럽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연평균 50여 개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참여 기업은 2만~3만 업체, 방문객은 700만~1,000만 명에 이른다.

〈표11. 밀라노 주요전시 일정〉

개최시기	전시회명	분야	소개
1월	HOMI	인테리어 소품	원래 MACEF에서 전시명을 변경.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한 다양한 잡화를 전시
2월	MILANO UNICA	원단 및 장신구	패션산업 원부자재 전시로는 유럽에서는 파리 Premiere Vision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전시
	MICAM	제화	제화 완제품을 전시하나 대부분 공장의 자체 생산품 등으로 소규모 업체가 주로 참가
	Mipel	가방	가방 완제품을 전시하나 대부분 공장의 자체 생산품 등으로 소규모 업체가 주로 참가
	LINEAPELLE	가죽 및 악세사리 원부자재	가방, 제화와 관련한 원부자재만 전시하며 가죽 외에도 메탈 장식, 버클, 보강재 등을 전시

2월	TheOneMilano	봄·여름시즌 여성복 및 모피	기존 밀라노 Prêt-à-porter와 Mifur(모피 전시)가 2017년부터 통합 전시
	MIDO	광학 및 안경	안경 및 광학 국제 전시로 국가별로 부스를 나누어 참가하며 주로 완제품을 전시 및 거래
3월	Cartoomics	영화, 만화, 게임	영화, 만화, 게임 및 인기 TV 시리즈물 등을 소개하는 미국의 Comicon과 유사한 전시
4월	MIART	현대미술	순수 미술 작품을 거래하며 주로 이탈리아 및 유럽의 갤러리들이 참여하여 소속 작가를 소개 및 전시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가구 및 디자인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및 디자인 전시회
4~5월	Si - Sposa Italia Collezioni	혼수 및 웨딩	웨딩과 관련한 상품 전반을 전시, 판매하며 패션쇼도 개최되어 해당 시즌의 트렌드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7월	MILANO UNICA	원단 및 장신구	매년 2월과 7월 두차례 개최
9월	HOMI	인테리어 소품	매년 2월과 9월 밀라노 패션위크 개최시기에 맞춰 개최
	MICAM	제화	
	Mipel	가방	
	LINEAPELLE	가족 및 약세사리 원부자재	
	TheOneMilano	가을·겨울시즌 여성복 및 모피	
9~10월	Smau	정보통신 및 첨단기기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정보통신 기기를 중심으로 한 기기를 전시하고 소개
10월	Host	요식업	커피, 음식, 주방도구와 기자재 등 요식업과 관련한 전시. 2년(홀수년)에 한 번 개최
11월	Eicma	모터사이클	1914년에 첫 개최되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로 불림. 2010년부터는 자전거 전시도 포함
12월	L'Artigiano in Fiera	전세계 특산품, 공예품 및 음식	각국의 특산품, 공예품,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B2C 전시회

(출처 : FieraMilano, 주밀라노총영사관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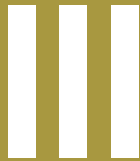


이 밖에도 밀라노시는 문화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존의 패션위크에 추가하여 디자인, 음식, 건축, 음악 등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행사를 한데 묶어 주간행사로 변모시켰다. 밀라노 패션산업의 확대에 발 맞추어 사진관련 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했기 때문에 사진 주간을 신설했고, 밀라노 국제가구전시회 개최시기인 4월에 맞추어 디자인 주간을 마련하고, 건축가가 디자인을 병행했던 이탈리아 디자인의 독특한 역사를 반영하여 건축 주간도 운영한다. 2015년 음식을 주제로 한 밀라노 엑스포 개최 이후 '미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점을 감안하여 음식 주간도 신설했다.

〈표12. 밀라노 문화주간 행사〉

개최시기	문화주간명	비고
2월, 9월	Milano Fashion Week	패션
4월	Milano Design Week	디자인
5월, 11월	Milano Food Week	음식
6월	Milano Arch Week	건축
	Milano Photo Week	사진
9월	Milano Movie Week	영화
11월	Milano Music Week	대중음악

부록



이탈리아 패션산업 동향 및 전망



1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발전

이탈리아에는 전국적으로 중소 생산·봉제 기업 및 섬유·방직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을 나누자면 피렌체는 장인정신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 밀라노는 상업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기성복(prêt-à-porter), 로마는 오토쿠튀르(alta moda), 베네토 지역은 아웃도어 제품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현 시점에는 밀라노가 런던, 파리, 뉴욕과 함께 세계 4대 패션도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탈리아 패션산업 초기에는 피렌체가 중심지로 인식되었다. 1952년 피렌체에서 처음 개최된 이탈리아 컬렉션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1975년 밀라노로 이전된 것이 첫 패션위크의 계기가 되었으며, 명품 소비의 대중화와 함께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밀라노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 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본부도 밀라노에 소재하고 있으며 Milano Unica(원단 및 장신구), Mipel(가방), Lineapelle(피혁) 등 패션관련 주요전시의 대부분이 밀라노에서 개최된다.

밀라노에는 12,000개의 패션기업, 850개의 쇼룸, 6천 개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밀라노를 본거지로 하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는 아르마니(Armani), 프라다(Prada), 베르사체(Versace),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발렌티노(Valentino) 등이 있다. 몬테나폴레오네(Via Montenapoleone)를 중심으로 밀라노 패션 부티크가 밀집해 있으며 이 지구를 패션의 4구역(Quadrilatero della Moda)이라 한다. 밀라노의 중심가인 부에노스 아이레스(Corso Buenos Aires)는 유럽에서 가장 긴 상업지구이기도 하다

2019.1~10. 기간 중 이탈리아 패션업계 매출 총액은 900억 유로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했는데 수출 증대(+6%)가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12.4%가 성장한 EU 역외 수출 중에서도 한국(14.9%), 일본(10.6%), 중국(5.6%) 등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밀라노의 패션 분야 수출 금액은 2018년 72억 유로, 2019년 상반기에만 약 40억 유로로 같은 분야 이탈리아 전체 수출(280억 유로)의 1/7을 차지하고 있다.

밀라노의 패션 분야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밀라노 상공회의소는 이런 성장세가 전통적인 이탈리아 패션 상품 수입국인 유럽을 벗어나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신규 시장에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

패션업계 인수 · 합병(M&A) 동향

이탈리아를 포함한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대부분 기존 사업 인수(M&A)를 통해 발생하는데, 이탈리아의 패션 분야에서도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탈리아 패션기업의 해외자본 인수는 1999년 Gucci를 시작으로 최근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패션업계의 경우 프랑스 자본 유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한국 기업도 이탈리아 패션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13. 해외자본에 매각된 주요 이탈리아 패션기업〉

매수기업(국적)	기업명	매각년도
LVMH(프랑스)	Emilio Pucci	2000
	Acqua di Parma	2001
	Fendi	2001
	Bulgari	2012
	Loro Piana	2013
Kering Group(프랑스)	Gucci	1999
	Bottega Veneta	2001
	Brioni	2012
	Pomellato	2013
	Sergio Rossi	2014
Mayhoola for Investments (카타르)	Valentino	2013
	Pal Zileri	2014
Capri Holdings(미국)	Versace	2018

해외자본에 인수된 대부분의 이탈리아 패션기업은 인지도는 상당하나 규모면에서 열세인 특징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몇 차례 반복된 이탈리아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악화되었던 기업들이다. 원천 보유 기

술력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적인 사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인수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하지만 많은 패션기업들이 가족 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소유권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에는 해외자본이 이탈리아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기업 가치와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함부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향도 두드러지는 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완전한 인수·합병 외에도 해외 사모펀드의 이탈리아 패션기업 지분 매입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 사모펀드 자본이 이탈리아 패션기업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한 건수는 2018년 17건(Versace, Twinset, Missoni 등)에서 2019년 19건(Trussardi, Sergio Tacchini 등)으로 증가하여 총 4억 5,300만 유로 규모로 집계되었다.

2020.11.23.~27 개최된 Milano Fashion Global Summit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서는 생산 자체가 어려운 이탈리아 중소 패션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인수합병이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이탈리아 패션 산업에 해외자본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션산업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성(sostenibilità)이 유럽 산업 전반의 키워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탈리아인들의 윤리적 소비 실천이 27%가 증가(Nomisma, 2020.8.)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윤리적 소비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최대 경제일간지 Il Sole 24 Ore(2020.10.29.)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투자 유망 분야로 패션을 지목하면서 패션 소비 경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에서 품질과 윤리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탈리아 산업연맹(Confindustria)이 2020.9. 실시한 이탈리아 패션업계 투자 동향 조사에서 △55%는 향후 3년간 투자를 확대, △17%는 투자를 통한 10%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응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전망은 밝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투자 이유인 바, △품질 향상, △스마트 태그·전자상거래 개발 등 IT 기술 확충, △물류 및 쇼핑 인터페이스 강화 등 코로나19 이후 변한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등 분야를 패션업계의 주요 투자처로 분석하였다.

2020.10.7. Il Sole 24 Ore는 Financial Times와 공동 주관한 “이탈리아 패션과 명품 : 현대적 장인 정신의 역할(Made in Italy nel Fashion & Luxury: il ruolo dell'«artigianalità contemporanea)” 제하의 라운드테이블에서 △SNS상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증대와 명품 소비 연령 하향화에 따른 패션업계의 IT 인재 확보, △코로나19 봉쇄 이후 온라인 상거래가 일반화된 바, 판로의 디지털화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부록 **IV**

롬바르디아주 투자 동향 및 기회

-
1. 외국인 투자 동향
 2. 최근 투자동향 : 부동산 분야
 3. 지역 투자 유치 프로그램
 - (1) Invest in Lombardy
 - (2) 주정부 제공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 투자 동향

롬바르디아주(주도 : 밀라노)는 對이탈리아 외국인 투자 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기준 유럽 내에서도 7위 규모로 평가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 주요 교역국의 외국인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14. 2017~2019 롬바르디아주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유로)

	2017	2018	2019
프로젝트 수	62	56	70
투자 금액	13,639	22,188	16,445

(출처 : 롬바르디아 주정부)

〈표15. 2017-2019 롬바르디아주 외국인 투자 상위 10개 분야〉

(단위 : 백만유로)

	분야	투자금액
1	제조업	996.91
2	물류 및 교통	621.22
3	비즈니스 서비스	416.17
4	ICT 및 인터넷 기반시설	343.49
5	건설	308.95
6	연구·개발	186.14
7	사업 본부	132.01
8	판매, 마케팅 및 지원	131.41
9	교육 및 트레이닝	49.54
10	유지·보수	37.35

(출처 : 롬바르디아 주정부)

2017~2019년 기준으로 롬바르디아주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1%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물류 및 교통, 비즈니스 서비스, ICT, 건설, 연구개발 등 순으로 집계된다. 이미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2017년 Deloitte는 2015 밀라노 엑스포 이후 밀라노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한 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외에 다른 투자처를 모색해야 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추가 성장 가능성이 큰 밀라노시가 적격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2

최근 투자동향 : 부동산 분야

최근에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동향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형적인 투자 분야인 제조업 외에도 금융서비스, ICT, 부동산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 이탈리아 부동산 시장 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123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8%에 해당하는 91억 유로가 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로 집계되고 있다. 2019년 밀라노시 부동산 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46억 유로이며 이 중 외국인 투자는 75.2%에 해당하는 33억 유로로 집계된다.

〈표16. 2019년 이탈리아 부동산 시장 투자 동향〉

(단위 : 십억유로)

	전국	밀라노	로마	기타 지역
2018	8.8	3.1	1.9	3.8
2019	12.3	4.6	1.9	5.8

(출처: BNP Paribas)

2019년 전년 대비 성장폭이 큰 부동산 분야는 호텔(+141%), 사무실(+47%), 산업·물류(+20.5%) 등이며 상점(-13%), 기타 부동산(-10%)로 집계 되었다. 밀라노의 경우, 대형 글로벌 체인을 중심으로 한 호텔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Cushman & Wakefield가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2022~2023년에는 밀라노 지역 호텔 분야 투자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17. 분야별 이탈리아 부동산 투자 동향〉

(단위 : 십억유로)

	사무실	호텔	상점	산업·물류	기타
2018	3.4	1.3	2.2	1.1	0.763
2019	5	3.3	2	1.3	0.687

밀라노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급증은 2000년대 들어 실시된 밀라노시의 도심 재생산 계획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던 전시회장의 외곽 이전, △Porta Nuova 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지구 건립, △City Life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 주상복합지구 개발, △지하철 4,5호선 공사 등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이며, 2019.5월 밀라노 시정부는 녹지와 공공주택을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인 ‘밀라노 2030’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3 지역 투자 유치 프로그램

1 Invest in Lombardy

밀라노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화 부서인 Promos는 롬바르디아 주정부, 이탈리아 산업연맹(Confindustria)의 롬바르디아주 지부인 Assolombarda와 협력하여 Invest in Lombardy라는 해외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해외 투자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 법인 설립, 부지 선정, 인재 채용, 각종 인·허가 등 창업 전반에 관련 정보 제공
- 자금 조달, 인센티브 제도 관련 정보 제공
- M&A, 조인트 벤처 등 이탈리아 국내회사와 협력 기회 제공
- 밀라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 사업과 같은 지역맞춤 투자 정보 제공

2 주정부 제공 투자 인센티브

롬바르디아 주정부는 기업 투자 및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l via 인센티브 : 기업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로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사업 개발 (company development), 생산 지역 재개발(Relaunch of productive areas)과 관련한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롬바르디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 생산 자산에 대한 지출의 5~15%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
- 5만~285만 유로까지 3~6년의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대출금의 70%까지 무료 재정 보증

Intraprendo 인센티브 : 롬바르디아에 본사를 두고 △창업한 지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또는, △창업 24개월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요 지원 사항은 아래와 같다.

- 25,000~65,000유로 규모의 무이자 대출 또는 보조금을 지원

롬바르디아 주정부는 주내 투자정보를 attrACT(<http://www.attractlombardy.it/>) 포털을 통해 △신규 투자를 통한 창업과 관련한 그린 필드, △기존 사업 인수와 관련한 브라운 필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 이탈리아 진출 비즈니스 가이드

- 초판발행 | 2016년 2월
- 1차 개정판 | 2017년 12월
- 2차 개정판 | 2019년 12월
- 3차 개정판 | 2020년 12월
- 발행처 | 주밀라노총영사관
- 인쇄·편집 | 주)마스타상사 (02-730-8241)